

2012년 동양고전 학술발표회

|| 十三經注疏 및 懸吐 연구

일시 : 2012년 11월 28일(수) 오후 2시~5시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 (사)전통문화연구회

후원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고전번역원 / 국사편찬위원회

◆ 모 시 는 글 ◆

낙엽이 쌓여가는 깊은 가을, ‘十三經注疏 및 懸吐 연구’라는 주제로 2012년 동양고전 학술발표회를 개최합니다.

본회는 우리 文化에 영향을 준 동양고전을 번역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漢學의 전통을 계승하여 원문에 懸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동아시아의 학술과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十三經注疏의 번역을 계기로 그 가치를 고찰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문고전의 강독과 번역에 있어 중요한 수단인 懸吐의 의미와 역사 및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문고전적의 현대화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일

전 통 문 화 연 구 회 이 사 장 趙富英
회 장 李啓冕
고전국역편집위원장 辛承云

◆ 행사일정 ◆

장학금 수여식

사회 : 咸賢贊 (성균관대 연구교수)

14:10 ~ 14:20 개회사

李啓晁 (전통문화연구회 회장)

14:20 ~ 14:30 축 사

李成茂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14:30 ~ 14:40 학술발표회 취지

辛承云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원장)

14:40 ~ 15:10 기조연설

○ 漢文 虛辭와 우리의 吐 5

趙鍾業 (충남대 명예교수)

○ 懸吐에 대해서 9

成百曉 (해동경사연구소 소장)

15:10 ~ 16:55 주제발표

○ 十三經注疏의 經學史的 意義와 翻譯의 必要性 13

田好根 (경희대 교수)

○ 한문문헌의 斷句와 諺解 29

沈慶昊 (고려대 교수)

○ 한문고전 정리 번역에 있어서 懸吐의 필요성 -四書諺解를 중심으로- 63

李相夏 (한국고전번역원 교수)

17:00 폐회

漢文 虛辭와 우리의 吐

趙鍾業 (충남대 명예교수)

目 次

1. 序論
2. 中國의 虛字
3. 우리의 吐[口訣]
4. 吐의 誤謬와 斯文亂賊
5. 結論

1. 序論

虛辭라는 말은 中國에서 實辭만 나열한 文章을 바르게 해석하기 어려운 것을 바르게 풀이하기 위하여 虛辭를 붙여서 正確하게 理解하려는 의도에서 생긴 것이다. 《千字文》의 맨 끝에 ‘謂語助者是 焉哉乎也라’고 붙인 것이 그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新羅, 혹은 그 이전부터 선비가 中國에 유학하면서 言語文字가 다른 中國 글을 배우면서 그것을 우리나라에 보급하려고 부단하게 노력하였다고 記錄에 남아 있다. 예를 들면 ‘薛聰은 方言으로 九經을 풀이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우리말로 九經을 그대로 읽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中國 文章에 우선 句讀를 떼고, 그 귀두마다 우리말에 맞는 吐를 달아서 읽었을 것이다. 이 우리말의 吐를 우리는 ‘입결’이라고 일러 왔다. 다시 말하면 중국인이 말하는 ‘語助辭’를 우리는 ‘입결’이라고 부른 것이다. 그러므로 ‘잇기언·잇기재·온호·입결야’라고 풀이하였다. 다시 말하면 입결이란 뜻은 本文의 뜻이 아니라 그 말을 돕는 뜻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면 中國에서 虛辭라고 하여 實辭를 도왔다고 하는 말과 우리말의 吐, 다시 말하면 실사에 吐(입결)를 붙여서 실사의 뜻을 분명하게 하는 역할이 서로 같았던 것이다. 中國의 上古文을 살펴보면 虛辭가 없다. 그러므로 후대에 그것을 이해함에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서로 혼동하는 수가 없지 않았다. 예를 들어, ‘乾元亨利貞’을 가지고서도 ‘乾은 元하고 亨하고 利하고 貞하니라’라고 하는가 하면, ‘乾은 元亨하고 利貞하니라’라고 하여 서로 달리하고 있다. 우리는 《程傳》과 《本義》를 가지고 是非를 말할 수는 없지만 서로 다른 것은 분명하다.

《尙書》, 《書經》을 살펴보면 〈堯典·舜典〉에는 허사가 없다. 때문에 그 풀이를 위하여 많은 註釋이 필요하였다.

2. 中國의 虛字

중국에서도 古文을 직접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드디어 虛字를 가지고 처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즉 《呂東萊博議》에 의하면 우선 ‘起語虛字’와 ‘接語虛字’로 나누고 이것을 다시 順과 逆의 두 항목으로 나누었다. 즉 ‘轉語虛字·襯語虛字·束語虛字·歇語虛字’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보니 앞에 ‘起語’와 ‘接語’의 단순한 나눔보다는 뜻이 선명해 보인다. 그리고서 起語虛字는 말어사 부사류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고, 起語虛字는 반어형의 類와 逆接의 類를 나누었다.

‘轉語虛字’는 앞의 말을 반대하는 말로서 예를 들면,

‘然, 苟, 或, 如, 若, 設, 但, 雖, 乃, 而, 況, 抑, 獨, 惟, 唯, 顧, 彼, 奈, 然而, 然後, 然則, 否則, 雖然, 不然, 設使, 設令, 固使, 假令, 藉使, 借令, 若夫, 乃若, 至若, 彼夫, 既而, 已而, 今也, 今焉, 今則, 今乃, 必也, 獨是, 惟是, 但以, 第以, 況乎, 無如, 有如, 更有, 尤有, 仍, 意者, 意必, 或者, 或曰, 借曰, 不知, 非然者, 不寧惟是, 不但此也.’

등 59種을 열거하였다.

다음 襯語虛字에서는,

之, 而, 于, 所, 攸, 其, 厥, 乎, 諸, 不, 未, 猶, 由, 尤, 亦, 莫, 殆, 姑, 既, 凡, 皆, 方, 相, 遽, 忽, 倏, 當, 宜, 祇, 僅, 庶, 盍, 曷, 可, 否

등 34種을 열거하였다. 위 轉語虛字는 주로 抑揚의 의미가 많은 반면에 襯語虛字에서는 단순한 연결을 나타내는 예가 대부분이라고 보여진다.

束語虛字는 말 그대로 結束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즉, ‘總之, 要之, 大約, 大抵’ 등 4종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 歇語虛字는 끝맺는 말인데, 이것은 다시 虛實과 順逆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면,

也, 矣, 焉, 耳, 已, 爾, 者, 云, 者也, 也者, 也已, 也矣, 已矣, 矣者, 者焉, 者耳, 已耳, 也夫, 矣夫, 焉而已, 焉耳矣, 焉者矣, 而已矣

등이 보인다. 후세에는 더 많은 것이 있을 것 같지만 비교적 단조롭게 보인다. 끝으로 逆用 虛字의 예로는,

乎, 哉, 歟, 者乎, 也乎, 矣乎, 耶, 已乎, 已耶, 者哉, 也哉, 矣哉, 夫哉, 者歟, 也歟, 者耶, 而已乎, 焉者乎, 焉爾乎, 乃爾乎, 也歟哉, 也乎哉

등을 볼 수 있는데, 疑問詞가 二重 이상으로 겹쳐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위 단정을 의미하는 ‘也’는 의문에서도 쓰이면서 명확한 구분은 없었다.

3. 우리의 吐[口訣]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漢文에 있어서의 吐는 중국에 있어서 虛辭와 같은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무엇은 무엇이다’가 곧 ‘○者는 ○也’와 같은 것이고, 반대로 ‘雖○하나 然이나’는 또한 ‘비록 ○하나 그러나’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或者는 한문에 吐가 필요 없다고 하는 말하는가 하면, 《自治通鑑》에는 열두 가지 吐만 가지고 모두 풀이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만일 ‘先斬後計可也’라는 문장에 吐를 달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풀이해 보면,

‘먼저 죽이고 뒤에 따지는 것이 가하다’

‘먼저 죽이고 뒤에 따져야 가하다’

‘먼저 죽이고 뒤에 따졌어도 가하다’

‘먼저 죽이고서 뒤에 따지는 것이 가하겠는가?’

등등 여러 가지로 풀이될 수 있다.

우리말은 중국의 虛辭보다도 더 정밀하다. 예를 들면 ‘學而時習之 不亦說乎’를 가지고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야’로 풀이하면 ‘배워서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하는데, 만일 ‘면’이 아닌 과거 시제의 토로 바꾸면, ‘배워서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로 풀이되어 과거형 문장이 되어 효과가 없어진다. 어느 쪽이 나은가 하는 것은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이러한 예는 한없이 많다고 보아진다.

4. 吐의 誤謬와 斯文亂賊

중국에서는 虛辭를 잘못 읽어서 科擧에 落榜하였다는 설을 寡聞한 탓으로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音を 잘못 읽어도 減點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敬’의 음은 ‘경’이지만 上聲이기 때문에 ‘기영’으로 읽는다.

와 같은 경우가 있다. 특히 詩에서는 平仄과 對偶가 맞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散文에서도 聲讀의 높낮음이 맞아야 한다. 音讀하였을 때 ‘敬’을 ‘경’으로 읽게 되면, 듣는 이는 ‘敬’이 아닌 ‘輕’[平聲]으로 알아듣는다. 특히 吐는 더욱 심하게 된다. 예를 들어

‘食不厭精하시며, 膾不厭細하시며, 食饅而餲 魚餒而敗 不食하시며, 色惡不食하시며, 臭惡不食하시며, 失飪不食하시며, 不時不食하시며, 割不正不食하시며, 不得其醬不食하시며, 肉雖多 不使勝食氣하시며, 唯酒無量 不及亂하시며, 沽酒市脯不食하시며, 不撤薑食하시며 (하사대) 不多食이러시다. 祭於公 不宿肉하시며, 祭肉 不出三日 出三日 不食之矣러시다. 食不語하시며, 寢不言하시며, 雖疏食菜羹이라도 必[瓜]祭하시며, 必齋如也러시다.

이상 많은 항목에 ‘不食’이라는 말씀이 모두 붙어 있다. 때문에 ‘不撤薑食’의 뒤에도 마땅히 ‘不食’이 붙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論語》와 《小學》의 諺解에 모두 ‘하시며’의 토를 붙여서 읽게 되어 있다. 그런데 白湖 尹鑄는 이것을 ‘하사대’라는 토를 달아 읽었다. 얼핏 보기에 여기에 ‘하시며’와 ‘하사대’의 토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윤희는 이것뿐만 아니라 기타 《中庸》의 經傳을 모두 改編하여 11장으로 만드는 등 많은 誤謬를 범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斯文의 亂賊이라 하여 換局의 士禍에 몰려 죽게 되었다.

5. 結論

經書의 吐 하나가 문장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어찌 그리 큰 문제가 되겠느냐고 하겠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따지는 것이 곧 學問의 자세인 것이다. 그런데 요즘 漢文章을 모르는 분들이 깊이 연구하려 하지 않고 漢文에 吐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韓文을 공부하려는 이들에게 害毒을 끼치는 사례를 듣고서 斯文亂賊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깊은 憂慮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

懸吐에 대하여

成百曉 (해동경사연구소 소장)

우리 선조들은 한문을 정확하게 전수하기 위해 우리 고유의 독창적인 방안으로 口訣, 즉 현토라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 현토는 句讀와는 달리 한문의 중간에 우리의 토씨를 붙임으로써 반 번역의 역할을 하였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기 이전에는 漢字의 訓과 音을 취하여 표기하였다. ‘爲’는 ‘하다’의 훈인 ‘하’를, ‘古’와 ‘也’는 음을 취하여 ‘爲古’를 ‘하고’로 ‘爲也’를 ‘하야’로 표기하였고, ‘是’는 ‘이것’의 훈인 ‘이’를, ‘羅’는 음을 취하여 ‘是羅’를 ‘이라’로 표기하였으며, ‘飛’는 ‘날다’의 훈인 ‘나’를, ‘尼’는 음을 취하여 ‘爲飛尼’를 ‘하나니’로 표기하되 ‘이나’의 ‘나’는 ‘那’의 음을 취하였다. 대체로 동사에는 훈을 취하고 ‘고’, ‘나’, ‘야’ 등의 결미사에는 음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를 ‘ㄴ’, ‘ㄷ’, ‘ㄹ’, ‘ㄱ’, ‘ㅇ’ 등의 한자를 축약 기호화하였다.

한글이 창제된 이후 四書三經과 《禮記》와 《小學》 등에 懸吐와 諺解 작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물론 《예기》는 세종조에 처음 만들어져 한글 토씨만 달았는데, 당시 集賢殿의 學士들이 구결을 달았지만 지금에 보면 순화되지 못한 부분이 자주 보이며 중국의 구결과 전혀 맞지 않게 현토한 부분도 없지 않다.

현토만 정확히 되어있으면 웬만큼 한문을 공부한 사람이면 한문의 70~80%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옛날 漢學者들은 한문을 배운 학생들을 시험할 적에 標點이 없는 漢籍을 내놓고 현토하여 읽게 함으로써 한학의 심도를 측량하였다. 달리 뜻을 아는가를 테스트하는 과정이 없었다.

물론 요즘은 번역이 유행되면서 현토를 정확히 하여도 글 뜻을 잘못 해석한 경우가 종종 보인다. 하지만 본인의 경험에 의하면 옛날 한학자들은 우리 國語에 밝지 못하였고, 언해 자체가 글자를 빼놓지 않고 다 해석하여 ‘가히 ~씨’ 라든지 ‘시러곰’ 등 불필요한 말이 들어가 글 뜻을 애매모호하게 한 경우가 없지 않다.

《소학》의 〈書題〉에 ‘殊不知其無古今之異者 固未始不可行也’를 “자못 그 예와 지금의 다름이 없는 자 진실로 비로소 가히 행치 아니치 못함을 알지 못함이니라.”로 釋音하여 가르쳐 준다. 배우는 학생은 단지 스승의 선창에 따라 그대로 읽을 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한다.

《소학언해》는 일반인들을 위하여 알기 쉽게 해석하였지만 여기에도 ‘예와 이제와 달음이 없는 것이 진실로 비로소 可히 行치 못할 것이 아닌 줄을 아지 못하나니라’로 되어있다. 이는 곧 ‘옛날과 지금의 차이가 없는 것(윤리도덕)은 진실로 일찍이 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처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토의 중요성이 절대적이었다. 사서삼경의 集註는 물론이요 《통감》이든 《사기》든 모든 책에 현토하여 읽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 그것도 길게 빼어 音調에 맞게 서서히 읽었다. 지금처럼 목독하는 것이 아니었다.

본인이 어렸을 때 원로 한학자로부터 언어들은 한문문리의 터득방법은 多讀, 多作하는 것이요 또한 글 뜻을 이해하면서 읽으라는 충고였다. 그러나 지금은 漢文作法을 하지 않아 글을 지을 줄 모른다. 더구나 한문의 文法과 用例를 알지 못하고 그것도 음조에 맞게 읽지 못하면서 개량식이라고 우습지도 않은 억지 토를 붙여 읽는다. 聲調(音調)에 맞게 읽지 못하다 보니, ‘有朋 自遠 方來 不亦 樂乎’라고 읽는다. 아예 토를 붙이지도 못하며, 오히려 한문은 중국식으로 읽어야 한다 하여 현토하는 것은 고리타분한 구식이고 중국식 표점에 맞추어 읽는 것이 새로운 방식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중국식 표점은 너무 자주 句를 끊어 문맥이 이어지지 않는 결점이 있다. 또한 구결을 붙일 줄 알면서 붙이지 않는 것과 아예 구결을 붙이지 못하는 것은 천양지간의 차이가 있다.

옛날 어른들은 《맹자》를 처음 배우면 ‘鴻雁之大者 麋鹿之大者’를 예로 들곤 하였다. 즉 어떤 학생이 처음에는 ‘鴻雁之大者요 麋鹿之大者라’고 읽다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鴻은 雁之大者요 麋는 鹿之大者라’로 고쳐 읽었다는 이야기였다. 물론 본인도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들었다. 그만큼 토씨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옛날 수많은 학자들이 모여 검토해서 만든 《四書諺解》와 栗谷諺解에도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다. 《맹자》의 ‘自反而不縮 雖褐寬博 吾不慄焉’이 그 한 예이다. 두 諺解에 모두 ‘自反而不縮이면 雖褐寬博이라도 吾不慄焉이어니와’로 현토하여 ‘스스로 돌이켜보아 자신의 행위가 정직하지 못하면 비록 허름한 옷을 입은 미천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를 두렵게 할 수 없거니와’로 해석하였다. 이는 아마도 集註의 ‘慄 恐懼之也’라는 해석을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中國本에는 ‘내가 그를 두려워하지 않겠느냐’의 뜻으로 해석하였다.

또 언해에는 ‘文王을 何可當也시리오’로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오류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栗谷諺解에는 ‘文王을 何可當也리오’로 되어있다. 이는 ‘맹자가 ‘내가 어떻게 문왕을 당할 수 있겠는가?’로 읽은 것인데, 이 경우 ‘시’가 잘못 들어간 것이 되며, 또 ‘문왕이 어찌 여기에 해당되시겠는가?’로 읽기도 하는데, 이 경우 ‘文王이’가 되어야 한다. 주어가 맹자가 되든 문왕

이 되든 어느 한 곳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요즘 중국에서 표점 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바, 일부 학자들은 국제화를 위해서는 현토할 필요가 없고 표점을 찍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 책은 이미 중국에서 중국 방식대로 표준화하고 있다. 중국식 표점 기호를 다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다를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의 문집이나 국고문헌은 중국식으로 표점을 찍어 국제화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전통방식인 현토를 표점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일본 사람들이 정리한 《漢文大系》 등에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가나의 표기를 하고 있다. 우리도 여기에 맞추어 우리 방식대로 현토하면 된다. 다만 지금은 옛날 방식대로 한문을 소리 내어 길게 읽을 수 있는 한학자가 거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현토를 현대식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한학자들의 오랜 연구와 깊은 검토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官本 諺解를 절대 신봉하여 그대로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분도 없지 않으며, 우리의 전통을 살려야 한다는 당위성을 무시할 수도 없다. 본인은 四書의 관토는 많이 순화되어 있으나 三經은 옛날 사투리의 토씨가 남아있어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주역》의 ‘乾은 元코 亨코 利코 貞하나라’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乾은 元하고 亨하고 利하고 貞하나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현토는 구두점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도 문제이다. ‘有朋이 自遠方來면’은 중간에 토씨를 붙이지 말고 그대로 한 句로 읽었으면 한다. 《맹자》의 ‘不信仁賢則國이 空虛’는 ‘不信仁賢이면 則國空虛’로 읽어야 할 것이다.

栗谷의 언해는 ‘然’, ‘故’ 등에 토씨를 붙이지 않아 한문의 句法에 상당히 접근되어있다. 하지만 옛날 현토는 길게 읊조리다 보니 중간에 토씨를 달아 쉬는 역할도 하였다.

옛날 唐音은 길게 창하였는데 ‘馬上에 逢寒食하니 途中에 屬暮春’으로 읽었다. 五言을 그대로 붙여 읽어야 할 터인데, 여기에 ‘에’의 토를 단 것은 쉼표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된다. 심지어는 우리 가요에 ‘花無는 十日紅이요’라고 한다. 여기에는 ‘는’이라는 토씨가 붙어서는 안 되는데 다만 음조를 맞추었을 뿐이다.

앞으로 정부의 주도하에 한문을 옛 방식대로 읽을 수 있는 학자들이 모여 되도록 현실에 맞게 현토하되 우리의 전통방식도 지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十三經注疏의 經學史的 意義와 翻譯의 必要性

田好根(경희대 교수)

目 次

- I. 서론: 經과 傳이 세상에 나타난 까닭
- II. 본론
 - 1. 가장 오래된 책, 가장 오래된 禁書
 - 2. 學古入官과 曲學阿世의 사이에서
 - 3. 경전의 복원과 경학의 시작, 현대의 경학
 - 4. 경전의 통일, 당대의 경학
 - 5. 훈고를 넘어 선 송대의 경학
 - 6. 《十三經注疏》의 성립
 - 7. 《십삼경주소》와 우리 학문전통
 - 8. 《십삼경주소》 번역의 필요성
- III. 결론: 경이 없는 시대의 고전 번역

I. 서론: 經과 傳이 세상에 나타난 까닭

공자의 제자들은 왜 두 세대 동안이나 스승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으며¹⁾ 濟南의 伏生은 무엇 때문에 尙書를 모조리 암기하고 있었을까? 또 전한과 후한의 박사들은 師法과 家法을 목숨보다 중시하면서 무엇을 지키려 했으며²⁾ 한나라·당나라·송나라·청나라의 학자들은 왜 돌에다 경전을 새기는 상상할 수 없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을까?³⁾ 모두 그 속에 담긴 성

1) 《논어》를 언제 누가 기록했는지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有若과 曾參을 각각 有子와 曾子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有若과 曾參의 문인들이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程頤의 견해가 유력하다. 그렇다면 공자의 말씀은 두 세대 뒤에 기록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또 혼다 시게유키(本田成之)의 『중국경학사』에서도 《논어》가 칠십자 이래로 책이 따로 없이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 구전되다가 漢나라에 이르러 비로소 그 때에 유행하던 隸書, 곧 今文으로 竹帛에 쓰인 것 같다고 추정했다. 또 정현은 공자의 제자 曾公과 자하 등이 찬한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2) 皮錫瑞의 《중국경학사》에 따르면 전한시대에는 사법을 중시했고 후한시대에는 가법을 중시했다고 한다.

3) 돌에다 경전의 내용을 새기는 石經은 後漢 靈帝 때 태학의 강당에 《詩經》과 《書經》을 비

인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었을 것이다. 그들에게 성인의 말씀은 곧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인의 말씀은 어디까지나 말로 전해졌다. 당연히 한 번 내뱉은 말은 허공에 흩어지고 다시는 재현되지 않는다. 애초에 그 말을 포착하기 위해 인간은 기억이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긴 세월 동안 망각의 터널을 뚫어 왔을 터이다. 그리고 그 기억을 되살려 세상에 성인의 말씀을 전한 이들이 이를 태면 공자의 제자들이었다. 경은 그렇게 세상에 나타났다. 그러니 그 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했던 것은 그들에게는 의무를 넘어서 선 숙명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 숙명에 따라 어떤 이들은 대대로 암송을 하고, 어떤 이들은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대나무 쪽이나 목판에 새기고, 어떤 이들은 심지어 돌에 새기기까지 했다.

그런데 암송하거나 돌에 새긴다고 해서 경이 반드시 세상에 전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이 보존되면 언젠가는 그 경에 담긴 뜻이 세상에 전해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當代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되지 않으면 경이라는 텍스트가 보존된 다하더라도 그 뜻이 전해질 수는 없다. 세상에 전해지려면 그 시대와 그 지역에 맞는 언어로 다시 쓰여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인의 말씀을 기록한 전이 세상에 나타난 까닭이다. 전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경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암송하는 일에서부터 석경에 새기는 일은 일정한 매체를 통해 경을 보존하기 위한 물리적인 방법이었다면, 경을 해설하는 전은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경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문화적인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각자가 선택한 방법은 달랐지만 경을 보존하기 위한 분투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노력은 모두 경학사적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경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전해지지 않기를 바란 자들이 더 많았을지 모른다. 경에 대한 최초의 폭력적 탄압은 경이 전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자들이 누구였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II. 本論

1. 가장 오래된 책, 가장 오래된 禁書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책은 무엇일까? 두 말할 것도 없이 ‘詩書’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금서는 무엇일까? 그 또한 ‘시서’다. 시서는 《시경》과 《서경》을 합쳐서 일컫는

릇한 七經의 碑를 세우게 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熹平石經이다. 이후 隋나라 唐나라 宋나라 때에도 석경이 조성되었고, 淸대에 이르러서도 乾隆 연간에 칙명으로 13경을 각 석하여 太學에 세웠다.

말인데, 《시경》은 기원전 1,000년 무렵부터 민간에 널리 암송되었던 詩를 모아놓은 책이고 《서경》 또한 그 무렵을 전후한 역사 기록을 모아놓은 책이다. 이 둘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자 유가를 대표하는 문헌이기도 하다.

가장 오래된 책과 가장 오래된 금서가 일치한다는 사실은 결국 모든 책은 누구에겐가 금지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났음을 알려준다. 게다가 그 책들이 유가를 대표하는 문헌이라는 점은 유가의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 그런데 이 책들이 천하를 다스리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금지했던 자는 역설적이게도 시서의 전문가 순자로부터 유가의 세례를 받았던 李斯였다. 화란의 씨앗은 유가의 내부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이사는 진시황제에게 시서와 백가의 말을 기록한 책은 모두 불태우도록 간했다. 불태우지 않을 책으로는 의약과 복서 그리고 농사일 따위를 기록한 실용서를 꼽았을 뿐이다.

이사의 말을 빌리면 이 두 책은 ‘옛 것을 가지고 지금을 비난〔以古非今, 道古以害今〕’하기 때문에 제국의 통치에 방해가 된다. 맞는 말이다. 천하가 이미 진나라로 통일된 마당에 이런 저런 말이 많은 유가는 환영받지 못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사는 본디 유가에 맺힌 원한이 있었다.

일찍이 스승 순자에게 유가의 仁義가 무용하다고 논쟁을 걸었다가 “근본은 팽겨쳐 두고 말 단만 뒤지는 바로 너 같은 자들 때문에 천하가 어지러워지는 것〔今女不求之於本 而索之於末 此世之所以亂也〕”이라고 인격적 모독을 받지 않았던가. 그는 秦나라로 떠나면서 순자에게 이렇게 하직 인사를 올렸다.

“부끄럽기는 비천보다 더한 게 없고 슬프기로는 가난보다 더 심한 게 없습니다. 오랫동안 곤궁하게 살면서 세상을 비난하고, 이익이 싫다고 하는 일 없이 몸을 맡기는 것은 선비의 본분이 아닙니다〔詬莫大於卑賤 而悲莫甚於窮困 久處卑賤之位 困苦之地 非世而惡利 自託於無爲 此非士之情也〕.”

스승 순자에게 선비답지 못하다고 침을 뱉고 떠난 셈이다. 순자가 그에게 뭐라고 말해주었는지는 전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진나라를 말세로 규정했던 스승 순자에게 보란 듯이 천하를 진의 제국으로 만들었다. 게다가 자신이 무용하다고 생각했던 인의의 무력함을 직접 보여주려고 작정이라도 한 듯 진시황제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말했다〔昧死言〕, 인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떠받드는 책을 불태우고 그 추종자들을 생매장하라고.

죽음을 무릅쓰는 집요함은 아무래도 스승에게 버림 받은 콤플렉스가 작용한 듯하다. 이른바 분서갱유(焚書坑儒)는 이렇게 이사의 개인적 한풀이도 한몫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분서’는 책을 불태운다는 뜻이고 ‘갱유’는 유학자들을 생매장한다는 뜻이다. 책만 불태우면

될 것을 왜 사람까지 생매장했을까? 문(文)과 헌(獻)을 모두 없애기 위해서다. 흔히 문헌(文獻)으로 붙여 쓰는 ‘문’과 ‘헌’은 본래 ‘전적’과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을 합쳐서 일컫는 말이다. 예나 지금이나 문자를 담는 가장 훌륭한 매체는 사람이 아닌가. 짐작컨대 함양에 문헌 유학자 461명은 모두 시서를 비롯한 유가의 문헌을 암송하고 있었을 것이다.⁴⁾

2. 學古入官과 曲學阿世의 사이에서

秦의 분서갱유 이 후에도 聖賢의 말씀을 실천하려 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은 빈번하게 일어났다. 명나라 태조 주원장은 《맹자》에 대한 엽기적 탄압으로 유명한데 문자옥으로 수만 명을 처형했다.⁵⁾ 또 만주족이 지배했던 청나라때는 유가의 문헌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공자를 대성지성문선선사로 떠받들었지만 실제로는 금서를 발표하여 숭한 문자옥을 일으켜 유학자들을 탄압했다.⁶⁾

중국만 그랬던 것은 아니다. 문치를 표방했던 조선의 경우에도 간혹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일찍이 成俔은 ‘성인의 학문이 화란의 씨앗’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조광조가 “내 임금을 요순으로 만들고 내 백성을 요순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며 성인의 말씀을 조선에 실현하려 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기묘사화를 목도하고 한 말이다.

물론 모든 유학자들이 이들처럼 목숨을 걸고 성현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때로 자신의 출세를 위해 성현의 말씀을 왜곡하는 곡학아세도 자주 일어났다.

한나라 고조 유계(劉季)는 본래 글 읽은 자들을 싫어해서 유학자를 만나면 관을 벗겨 오줌을 갈겼다고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라이벌이었던 항우가 초나라 명문가 출신이었던 것과는 달리 유계는 시정에서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던 무뢰배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그와 가장 친한 친구였던 번쾌는 바로 개를 잡는 개백정이었을 정도다.

아무튼 유학자를 그렇게 싫어하던 유계는 천하를 차지하고 난 뒤 이름을 방(邦)으로 바꾸고 황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름 바꾸고 황제가 되어도 달라진 건 별로 없었다. 유방은 황제

4) 이 때 생매장된 儒生은 유학자들보다는 방술사가 더 많았기 때문에 유학을 탄압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史記 李斯列傳』에 따르면 분서갱유사건의 근본원인은 유가의 시서를 말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희생자들 가운데 방술사가 섞여 있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학을 탄압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5) 젊은 시절 절에서 사미로 일했던 明太祖는 ‘光’자가 자신의 승려시절 깎은 머리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상소문에 ‘光’자만 들어가 있어도 그 사람을 처벌했다고 한다.

6) 淸나라 때의 문자옥은 저술에 명나라 연호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일족 모두를 처형한 戴名世 사건이 대표적이다. 戴名世는 桐城派의 문인으로 《南山集》을 지었는데 그 안에 南明의 연호였던 永曆을 썼다가 자신과 일족들이 모두 몰살당하고 그의 저술도 모두 불태워졌다.

가 된 뒤에도 신하들과 한 방에서 자는 등 대소사를 이전과 다름없이 처리하다 보니 황제의 권위가 설 수 없었다. 또 어쩌다 연회를 베풀기라도 하면 공신들이 저마다 자신의 공을 자랑하다 황제가 있는 자리에서 칼부림을 하기가 일쑤였다.

그런 그에게 만나기만 하면 늘 유가의 시서(詩書)를 이야기한 이가 있었는데 바로 陸賈였다. 얼마나 자주 시서를 들먹였는지 한번은 유방이 짜증을 내며 “나는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은 사람인데, 시서 따위를 어디에 쓴단 말이나?”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자 육가는 이렇게 받아쳤다.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지만,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옛날 탕왕과 무왕은 신하로서 자기 임금을 죽이고 새로 천자가 되었지만, 천하를 얻은 뒤에는 文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천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포악한 진나라는 무력에 의지했기 때문에 쉽게 망한 것입니다. 만약 진나라가 仁義로 천하를 다스렸던들 폐하께서 어떻게 천하를 차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육가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꾼 유방은 그 때부터 말에서 내려와 유학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신하들의 무질서한 모습을 볼 때마다 武力의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이다. 그런 유방의 마음을 파고 든 사람 중에는 叔孫通이라는 유학자가 있었다. 숙손통은 본래 진나라의 박사로, 2세 황제 호해를 섬기다가 도망쳐 항량의 신하가 되었다가 다시 초나라 회왕을 섬겼다가 회왕이 세력을 잃자 다시 항우를 섬겼다가 항우가 패하자 유방에게 항복한 자다. 그는 유방에게 이렇게 말했다.

“무릇 유학자란 함께 진취하기는 어렵지만 이론 것을 지키는 데는 제법 쓸모가 있습니다. 원컨대 신은 노나라의 유생들을 불러 신의 제자들과 함께 조정의 예법을 제정할까 합니다.”

유방의 허락은 얻은 숙손통은 노나라로 가서 유생 30여명을 한나라 조정으로 가게 했다. 그런데 노나라의 유학자 중 두 사람만은 이렇게 말하면서 숙손통을 따르지 않았다.

“당신이 섬긴 군주는 열 명이 넘더군요. 게다가 모두 아첨으로 그들과 가까이했더군요. 지금 천하가 전쟁이 막 끝나서 아직 죽은 이를 장사 지내지도 못했는데 예악을 일으키려 하니 옳지 않소. 예악은 모름지기 백 년이 지난 뒤라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오. 그대는 가보시오. 나를 더럽히지 말고!”

숙손통은 도리어 그들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야말로 비루한 유학자야. 시변(時變)을 모르는구만.”

숙손통을 따라가지 않은 두 명의 유학자가 누구인지 전해지지 않는다. 모름지기 권력자가 부를 때 따라가지 않으면 이름이 전해지기 어려운 법이다. 하지만 저들 덕분에 노나라의 유학자 중 30분의 2, 곧 15명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은 숙손통 같은 자를 따라가지 않고 자신을

뜻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한 숙손통을 두고 사마천은 “때에 맞추어 자신을 바꿈으로써 마침내 한나라의 유종(儒宗)이 되었다[與時變化 卒爲漢家儒宗]. 큰 정직은 굽은 것처럼 보이고, 길은 본래 구불구불한 법[大直若詘 道固委蛇]”이라고 칭찬했다. 뒷말은 그대로 두더라도 공안국이나 원고생, 또 동중서나 복생을 놔두고 국학아세의 대표자라 할 숙손통을 한나라의 유종이라 한 사마천의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아무튼 유방은 숙손통을 등용해서 노나라에 전해지던 유가의 예법으로 황제의 권위를 세우는데 성공했다. 이후 한나라는 고전 텍스트를 적대시했던 진나라와는 달리 고전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지배를 공고히 한다. 이른바 문치를 내세운 것이다. 공자가 편찬한 것으로 전해지는 춘추가 한나라의 천하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언서로 둔갑한 것이나⁷⁾ 고대 제왕의 치도를 기록한 상서를 국가통치의 전범으로 삼기 위해 제남의 복생으로 하여금 상서를 복원케 한 것도 모두 그런 시도의 일환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시도는 한나라의 정통성을 강화하여 온갖 내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한과 후한왕조를 각각 200년씩 존속시키는 대성공을 가져왔다. 한나라를 이어 천하를 차지했던 위(魏)나라, 그리고 위나라를 이은 진(晉)나라, 그리고 동시에 발호했던 수많은 왕조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졌는지를 상기한다면 한나라의 정통성이 얼마나 단단했는지를 실감할 수 있다.

이후 중국의 역대왕들은 한나라처럼 왕조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 저마다 유가문헌의 권위를 빈 문치를 내세웠다. 이를 테면 아버지를 부추겨 반란을 일으킨 다음 형과 동생을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을 거쳐 황제가 된 당나라 태종은 유가문헌의 통일적인 해석을 위해 오경정의(五經正義)를 편찬하게 하였으며, 역시 쿠데타로 집권한 송태조 조광윤도 문치를 내세워 송나라를 다스렸고, 심지어 이민족으로 중국을 지배한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도 문치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말만 그랬지 실제로 문치에 성공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무력을 통하지 않고 통치에 성공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문인이 쓴 글을 빌미로 사람을 죽인 역대의 술한 문자옥들은 문치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다.

7) 이른바 공자가 ‘한나라를 위해 도를 정립하고 한나라를 위하여 제작하였다[爲漢定道 爲漢制作]’는 식의 주장은 전한 말기에 성립된 《緯書》에 자주 보인다.

3. 경전의 복원과 경학의 시작, 한대의 경학

사마천의 공자세가에 따르면 공자가 육경을 산정했다고 했으므로 경학의 근원은 마땅히 공자로부터 비롯되었다 할 것이다. 하지만 공자 시대에는 경전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經자를 찾아볼 수조차 없었다. 시·서·역에는 물론이고 논어나 맹자에도 경전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자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經이라는 글자가 경전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첫 용례는 《장자》에 두 차례, 그리고 순자에 세 차례 보일 뿐이다.

《장자》 〈천운편〉에는 공자가 노담에게 “저는 詩, 書, 禮, 樂, 易, 春秋의 六經을 익힌 지 스스로 오래되었다고 여기고 있으며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孔子 謂老聃曰 丘治詩書禮樂易春秋六經 自以爲久矣 孰知其故矣).”라고 하여 육경을 익혔다고 했고, 〈천도편〉에 “공자가…가서 노담을 만나 보았는데 노담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공자는 가지고 간 十二經을 펴놓고 설득하기 시작했다(孔子…往見老聃 而老聃不許 於是 繙十二經以說).”고 한 대목이 보인다.

그러나 이른바 유가의 문헌을 본격적으로 경이라고 일컬으며 학문적 체계를 세운 것은 한대부터라고 해야 할 것이다. 劉歆이 〈移太常博士書〉에서 “천하에는 단지 《易》과 卜 만이 있었고 다른 책들은 없었다가 마침내 혜제 때 이르러 협서율이 폐지되었다(天下但有易卜 未有他書 至孝惠之時 乃除挾書之律).”고 말한 것처럼 한대의 경학은 진의 분서갱유로 단절된 유학의 주요 문헌, 곧 경을 복원하는 데서 시작하였다.

진의 금서정책은 한에서도 유지되다가 혜제 때에 비로소 협서율이 폐지되었지만 당시의 군신들은 유학의 문헌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다가 문제 시기에 이르러 비로소 제남의 복생이 상서를 암송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晁錯를 보내 상서를 배우게 하면서 경학이 시작되었다.

한대의 경학은 무제시기에 이르러 크게 번창했다. 《사기》 〈유림전〉에 따르면 詩는 노나라의 申培公, 제나라의 轅固生, 연나라의 韓太傅가 전했고, 《상서》는 제남의 伏生이 전했다. 禮는 노나라의 高堂生이 전했고 易은 菑川의 田生이 전했으며 春秋는 胡毋生과 董仲舒가 전했다. 다만 樂經은 전하는 이가 없어서 한대에는 다만 시·서·역·예·춘추의 오경박사만을 설치했고 그 뒤에 논어와 효경을 더하여 칠경을 중심으로 경학을 연구했다.

한대의 박사들은 경을 연구할 때 사법과 가법을 엄격하게 지켜 경을 전할 때 스승에게서 전수받은 것을 한 자도 더하거나 빼지 않았고, 경을 풀이할 때도 오직 일가의 설만 묵수하였다.⁸⁾

한대의 경학은 금문과 고문의 구별이 있다. 금문은 한대의 문자 곧 隸書로 세상에 전해진

8) 피석서의 《중국경학사》에 따르면 前漢에서는 사법을 존중하였고 後漢에서는 가법을 중시하였다. 먼저 사법이 있어야 그 후에 일가의 말을 이룰 수가 있다. 사법은 그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고, 가법은 그 유파를 넓히는 것이다.

당시 통용된 문자로 기록된 경을 말한다. 물론 고문이 일어나기 전에는 따로 금문이라는 명칭이 없었을 것이다. 고문은 한무제시기에 우연한 일로 인해 세상에 나타났다. 노나라 공왕이 자신의 집을 넓히기 위해 공자의 구택을 허물었는데 벽 안에서 고문으로 기록된 상서와 효경, 논어 등이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고문상서와 고논어이다.

《사기》 〈유림전〉에 따르면 공씨에게 고문상서가 있었는데 공안국이 금문으로 읽었다고 했고 유흠에 이르러 《고문상서》·《모시》·《주관》·《좌씨춘추》를 학관에 두었는데 이 경들은 모두 고문에서 비롯된 것으로 후한의 衛宏·賈逵·馬融이 해설을 붙이면서 금문과 나란히 전주게 되었다. 따라서 한대의 경학은 전한에는 금문경학이 유행하였고, 후한에는 고문경학이 유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의 경학은 정현에 이르러 극성기를 맞이하였다. 정현은 금문과 고문에 모두 통달하였기 때문에 경을 공부하는 학자들은 다시 사법이나 가법을 따를 필요가 없이 그저 정현의 설을 따르기만 하면 되었다. 范曄은 《후한서》 〈정현전〉에서 “경전을 통괄하고 衆家를 망라하였으며 번잡한 것을 깎아버리고 소루와 과실을 고쳤다. 이로부터 학자들이 대략 돌아갈 곳을 알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정현은 먼저 금문을 공부하고 뒤에 고문을 공부하여 경전을 주석할 때 금문과 고문을 함께 채택하였다. 이로 인해 학자들은 사법과 가법의 번잡함을 피하여 모두 정현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사법과 가법이 무너져 한의 경학은 정현에 의해 극성기에 도달했지만 역설적으로 정현 이후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4. 경전의 통일, 당대의 경학

십삼경의 주는 한대에 시작되어 위진시대에 이르러 거의 완성된다.⁹⁾ 효경을 제외한 주석을 살펴보면 한대와 위진인이 각각 절반씩 차지하고 있다. 정현은 모시의 전을 지었고 주례의례 예기를 주해하였으며 何休는 공양전을 趙岐는 맹자를 주해하였는데 이 여섯 가지는 모두 한대인들의 주석이다.

그리고 孔安國의 상서전은 王肅의 주이고 王弼의 周易注와 何晏의 논어집해는 모두 위나라 사람들의 주이다. 또 杜預의 좌전집해와 范寧의 곡량집해, 郭璞의 이아주는 모두 진대인의 주이다.

이후 남북조를 거치면서 경학의 문호가 복잡해지고 장구에 대한 해설이 난립하게 되자 수나라 이후 경학을 통일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일어나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9) 당현종이 주해한 효경만 유일하게 당대에 성립되었다.

그러다가 당나라가 들어서면서 태종이 조서를 내려 오경의 의소를 찬하게 함으로써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경설의 통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당태종은 孔穎達과 유생들에게 조서를 내려 오경의 의소를 찬하게 한 뒤 永徽 4년에 반포하였는데 이것이 《五經正義》이다.

공영달과 함께 《五經正義》를 편찬한 이들은 《주역》은 마가운과 조건엽, 《상서》는 왕덕소와 이자운, 《모시》는 왕덕소와 제위, 《춘추》는 곡나울과 양사훈, 《예기》는 주자사·이선신·가공언·유사선·범의군·장권 등이다. 표제에 공영달 한 사람의 이름만 있는 것은 연배가 가장 높았기 때문이었을 뿐이다.

《五經正義》가 반포된 뒤 당나라는 물론 송나라에 이르기까지 경전으로 관리를 등용할 때는 모두 이를 따랐다. 경설이 통일된 것이다.

애초 오경의 의소를 짓게 한 것은 그 목적이 경전의 뜻을 소통시키고자 한 의도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경설의 통일로 인한 학술의 부진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했다. 특히 《五經正義》를 찬하면서 《易》은 왕필의 주, 《書》는 공안국의 傳, 《좌씨춘추》는 두예의 집해를 주로 채택하고 정현의 《역주》와 《서주》 등은 모두 버리고 취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옥석을 제대로 가리지 못했다고 비판받게 되었다.

하지만 《五經正義》는 어디까지나 한대 경학을 정통으로 삼고 그 성과를 대체로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疏가 注를 깨트리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경학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五經正義》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五經正義》 외에 당대 경학의 업적을 말하자면 육덕명이 찬한 《경전석문》을 들 수 있다. 비록 《노자》와 《장자》가 포함되어 있어 순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없지 않으나 《五經正義》보다 앞선 시기에 세상에 나와 모범이 되었다 할 만하다.

5. 훈고를 넘어 선 송대의 경학

한대에는 시·서·역·예·춘추의 오경박사만을 설치했고 나중에 《논어》와 《효경》을 더하여 칠경을 중심으로 경학을 연구한 반면 당대에는 삼례와 삼전을 포함하여 역서시와 함께 구경이 되었다가 송대에 이르러 이아와 《맹자》를 보태서 십삼경이 되었다. 특히 孫奭이 《孟子正義》 14권(漢 趙岐 注)을 찬함으로써 13경의 注疏가 완비되었다.

그러나 이 시대부터 한당의 경학은 거센 도전에 직면하였다. 한대의 경학은 경전의 전승이라는 점에서는 어느 시대보다 탁월했지만 대체로 수동적 인간관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학의 진흥이라는 측면에서는 보잘 것이 없었다. 당시의 경학은 육경고문에 대한 훈고라는 좁은 틀 속에 갇힐 수밖에 없었으며 상대적으로 창조적인 학술의 발전이 어려웠다. 당나라

태종대에 완성된 《오경정의》는 일체의 이설을 배제하고 경설을 통일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철학적 사색의 부진과 유가정신의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그 때문에 당말까지의 유가사상은 학술상의 주류에서 밀려나고 노장사상과 불교가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 노장사상과 불교가 인간의 생로병사(生老病死)와 우주의 본원을 탐색하는 차원 높은 철학적 사색을 전개할 때 유가학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많은 유가학자들이 불교나 도교의 문헌을 탐독하며 스스로 유가를 열등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송대의 학자들은 훈고를 넘어선 창의적인 해석을 통해 유가의 문헌을 재해석함으로써 이와 같은 암흑기를 종식시키고 유가사상을 부흥시키는 성과를 이룩했다. 그 중에서도 “이윤이 가졌던 뜻에 뜻을 두고 안자가 배웠던 것을 배운다(志伊尹之所志 學顏子之所學)”는 혁명적인 선언으로 지나간 성현들에게 도전장을 던진 것이 송학, 곧 주자학이다.

북송의 왕안석과 사마광에 의해 의문이 제기되었던 한당의 경학전통은 남송의 주희에 이르러 완전히 새로운 경전주석으로 대체되기에 이르렀다. 주희는 《사서집주》와 《시집전》, 《주역본의》 등을 저술함으로써 이른바 신주로 불리는 새로운 경학전통을 수립하였다. 이후 명나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당의 경학전통은 주희가 수립한 새로운 경학전통에 자리를 내주었다.

6. 《십삼경주소》의 성립

고전을 ‘經·史·子·集’의 네 가지 분야로 분류하기 시작한 것은 당나라 때부터였다. 이후 시대를 막론하고 맨 앞에 經部가 위치하는 까닭은 동아시아 전통사회의 지식인들이 ‘經’을 다른 모든 문헌의 母胎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여 특별히 존중했기 때문이다. 이들 문헌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끼친 儒家의 경전으로 통틀어 ‘十三經’이라 일컫는다.

‘十三經’은 이른바 ‘四書五經’을 비롯하여 경전으로 존중 받는 주요 문헌의 총칭으로 중국 고대의 왕조 주나라 초기부터 기록되기 시작한 《詩經》과 《書經》을 필두로 《周易》, 《周禮》, 《儀禮》, 《禮記》, 《春秋公羊傳》, 《春秋穀梁傳》, 《春秋左氏傳》, 《論語》, 《爾雅》, 《孝經》, 《孟子》를 포함하는 총 13종의 유가 문헌이다.

《十三經注疏》는 이들 문헌에 대한 가장 오래된 주석일 뿐더러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 체계적인 주석으로 모두 416권에 이르는데, 漢대와 魏晉시기의 학자들이 저술한 古注에다 唐대 孔穎達의 五經正義와 宋대 학자들의 疏를 붙여 완성한 것으로 무려 천 년 이상의 학문적 蘊蓄이 빚어낸 결정체이다.

《五經正義》는 《周易正義》 10권(魏 王弼 注, 晉 韓康伯 注), 《尚書正義》 20권(漢 孔安國 傳), 毛詩正義》 70권(漢 毛亨 傳·鄭玄 箋), 《禮記正義》 63권(漢 鄭玄 注), 《春秋左傳正義》 60권(晉 杜預 集解)이다.

여기에 唐나라 賈公彥이 《周禮正義》 42권(漢 鄭玄 注), 《儀禮注疏》 50권(漢 鄭玄 注)을 찬술하였고, 徐彥은 《春秋公羊傳注疏》 28권(漢 何休 解詁)을 찬하였으며, 楊子勛은 《春秋穀梁傳注疏》 20권(晉 范甯 集解)을 찬함으로써 9경이 갖추졌다.

宋나라 들어와서 邢昺은 眞宗 咸平 3년(1000년)에 《孝經注疏》 9권(唐 玄宗 御注), 《論語注疏》 20권(魏 何晏 등의 集解), 《爾雅注疏》 10권(晉 郭璞 注)을 찬하였으며, 孫奭이 《孟子正義》 14권(漢 趙岐 注)을 찬함으로써 13경의 注疏가 완비되었다.

淸나라때 阮元은 諸刻本을 참조·교정하여 《十三經注疏 校勘記》를 만들었는데, 이 阮元 校刻本 《十三經注疏》는 가장 신뢰할 만한 板本으로 인정받고 있다.

《십삼경주소》의 주와 소를 저술한 학자들로는 漢대의 鄭玄, 何休, 孔安國, 趙岐를 비롯해, 魏晉시대의 何晏, 王弼, 韓康伯, 杜預, 范甯, 郭璞, 唐대의 孔穎達, 賈公彥, 徐彥, 楊士勛, 李隆基, 宋대의 邢昺, 孫奭 등 그야말로 한 시대를 대표하는 巨儒, 碩학들이 총망라 되어 있다.

《십삼경주소》의 注와 疏를 지은 이들은 다음과 같다.

《周易正義》, (魏)王弼注 (晉)韓康伯注, (唐)孔穎達疏

《尚書正義》, (漢)孔安國注, (唐)孔穎達疏

《毛詩正義》, (漢)鄭玄注, (唐)孔穎達疏

《周禮注疏》, (漢)鄭玄注, (唐)賈公彥疏

《儀禮注疏》, (漢)鄭玄注, (唐)賈公彥疏

《禮記正義》, (漢)鄭玄注, (唐)孔穎達疏

《春秋左傳正義》, (晉)杜預注, (唐)孔穎達疏

《春秋公羊傳正義》, (漢)何休注, (唐)徐彥疏

《春秋穀梁傳正義》, (晉)范甯注, (唐)楊士勛疏

《論語注疏》, (魏)何晏注, (宋)邢昺疏

《孟子注疏》, (漢)趙岐注, (宋)孫奭疏

《孝經注疏》, (唐)明皇注, (宋)邢昺疏

《爾雅注疏》, (晉)郭璞注, (宋)邢昺疏

《십삼경주소》는 傳統 사회 지식인들의 經典에 대한 경외심과 학문적 淵源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에 대한 完璧한 이해를 끝까지 추구하려는 치열한 학문적 熱情을 잘 보여주는 결과물로서 방대한 양의 註釋에는 어느 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거의 모든 학문영역이 녹아들어 있다. 그러므로 수천 년 東亞細亞 사회의 學問的 根源이 이 《십삼경주소》에 뿌리하고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십삼경주소》는 앞서 살펴본 대로 朱子學이 官學으로 자리잡는 중국 明대까지 경전 해석에 관한 한 거의 절대적인 지위를 누렸으며 明대 이후에도 ‘集注’ 또는 ‘集傳’으로 명명되어 주자학적 세계관을 담았던 ‘新注 儒家文獻’과 함께 經學傳統의 두 축을 이루어 왔고, 淸대에 이르러 漢學이 부활하면서 中世的 思惟를 넘어 近代의 世界觀을 여는 데 크게 기여했다.

7. 《십삼경주소》와 우리 학문전통

《십삼경주소》는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사회 내내 ‘경전’으로 공인 받아온 만큼 국학과 동양학 연구를 위한 기본고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멀리 三國時代 高句麗의 국가교육기관이었던 太學에서부터 ‘십삼경’에 해당하는 문헌이 基本教科書로 채택되었으며, 百濟 또한 五經博士 제도를 두어 십삼경 중 다섯 개의 문헌을 특별히 중시하는 국가정책을 시행했다. 新羅 또한 吏讀의 창안자인 薛聰이 方言으로 九經을 읽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십삼경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또 6世紀의 유물인 壬申誓記石의 銘文에도 “3년 동안 詩經·尙書·禮記·春秋傳을 차례로 익힐 것을 맹세한다.”는 식으로 십삼경에 해당하는 書目이 나열되어 있을 정도로 일찍부터 십삼경이 三國의 國家政策과 科擧試驗을 비롯한 人材登用に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高麗時代에 이르러서도 崔沖의 九齋學堂을 비롯한 각종의 私學에서 십삼경의 일부인 九經을 중심 교과목으로 하는 교육정책이 시행되었다.

또 儒敎를 國是로 하는 朝鮮時代에 이르러서는 成均館과 鄉校를 비롯한 각종 교육기관에서 이른바 四書五經을 비롯한 십삼경이 더욱 중시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으며 그간 십삼경을 주석하거나 引用한 경우는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다.

이처럼 십삼경은 우리 나라 傳統社會에서는 시대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필독했던 敎養書였을 뿐만 아니라 전시대에 걸쳐 國家政策과 人材登用을 위한 기본 교과서로 인정받아 왔다.

이 때문에 현재에 이르러서도 國學이나 東洋學 관련 기관이나 대학에서는 대부분 십삼경과 관련된 교과목을 채택하여 학습과 연구에 반영하고 있을 정도로 국학과 동양학 분야에서 십삼경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8. 《십삼경주소》 번역의 필요성

이처럼 《십삼경주소》는 우리 학문 전통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전통적으로 수천 년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동안 ‘십삼경’을 비롯한 유가 문헌을 대다수 지식인들이 熟讀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독창적으로 이해하고 발전시켜 3,000만여 자에 이르는 방대한 經學 資料를 학문적 유산으로 남겼다. 이들 경학자료는 우리의 學問傳統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현들의 견해가 반영된 십삼경의 번역이 필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십삼경주소》가 완역된 적이 없으며, ‘십삼경’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유가문헌의 번역 또한 古注와 新注를 비롯한 주요 주석을 고르게 反映하지 못하고 특정 주석에 치우치거나 아예 주석이 번역되지 않는 채 진행되어 왔다. 이 같은 관행은 번역의 질을 크게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번역물에 의존하는 학술 연구 또한 뚜렷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十三經注疏》의 번역은 特定 註釋 중심의 학술 풍토가 가지는 한계를 넘어 學問的 多樣性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古典 研究와 翻譯의 수준을 한 층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우리 先賢들의 학문적 견해가 반영된 《십삼경주소》 번역은 그간 학계에서 거의 잊혀지다시피 했던 우리의 학문전통을 복원함으로써 독창적이고 자생적인 學問風土를 진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십삼경’에 해당하는 유가문헌은 단순히 특정분야의 기록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양사상의 원류라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의 충실한 번역은 국학과 동양학을 비롯한 인문분야는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십삼경주소》는 우리 역사와 사상과 문학 등 모든 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기록물일 뿐만 아니라 東洋古典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동아시아 사회를 떠받치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 왔으며,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수십억 世界人이 삶의 지침으로 존중하는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문화의 시대 21세기에 이를 번역하고 정리하는 일은 우리의 민족문화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이제라도 이들 고전을 특정 국가나 특정 종교의 전유물로 여기는 狹隘한 태도에서 벗어나 인류의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번역하고 정리하는 데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할 것이다.

Ⅲ. 결론: 경이 없는 시대의 고전 번역

經이란 그저 텍스트일 뿐만이 아니다. 注가 經을 깨트리지 않고 疏가 注를 깨트리지 않는다는 전통은 경의 無誤謬性을 확신한 데서 비롯된 전통시기 학자들의 자연스러운 태도였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현대사회는 더 이상 전통사회처럼 단일한 가치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다. 따라서 당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注不破經 疏不破注’의 전통에 따른 경전의 무오류성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경이 고전으로 그 이름을 바꾼 이유다.

이 글의 冒頭에서 밝힌 것처럼 전통시대의 학자들이 성인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 기울인 온갖 노력은 그것을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오랜 시간이 흐른 현대를 사는 우리의 경우 그 영원한 가치를 알려면 반드시 고대의 한어를 현대의 우리말로 옮기는 이른바 ‘번역’이라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지금의 우리가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 번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번역은 우리가 새로운 시공간으로 넘어가고 새로운 사람과 사상을 만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다리와도 같다.

번역을 뜻하는 한자 ‘譯’은 본디 바꾼다는 뜻인 ‘易’자의 음가에서 비롯된 말로 여기서 바꿈의 대상은 다름 아닌 ‘말〔言語〕’이다. 그런데 말은 바꾸되 뜻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번역하는 이라면 누구나 당면하는 번역의 모순이다. 말은 바꾸되 뜻은 바꾸지 않는, 그래서 동서가 통하고 고금이 함께 만나 어우러지는 장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번역하는 이의 임무이다. 번역의 궁극적 목적은 소통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원전의 말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면 원전의 뜻이 필경 훼손되기도 하고, 원전의 말을 그대로 두면 독자가 이해할 수 없게 되어 번역의 목적인 소통을 이룰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더욱이 원전의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어휘를 찾을 수 없을 때 번역자의 역할은 창작의 영역에까지 이르게 된다. 하물며 언어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살아있는 듯 변하는 것임에랴.

간혹 16세기 조선의 철학자 이황이나 이이는 어떤 언어로 사유했는지 궁금해 질 때가 있다. 물론 그들이 남긴 글을 읽어보면 그들이 고대의 한어 곧 한문으로 철학적 주제를 논의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별로 없다. 하지만 그들은 생각도 한문으로 했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들 또한 조선인으로서, 조선의 말로 말하고 조선말로 노래하고 생활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때로 한문에 능통한 사람은 우리말보다 오히려 한문으로 사유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아무리 한문에 능통하다 하더라도 일상에서 우리말을 쓰는 한, 우리말로 생각하는 것보다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 또한 당시의 조선어로 사유하고 나서 다시 그것을 한문으로 번역하여 철학적 주

제의 글을 썼을 것이다. 그리고 글을 읽는 다른 사람은 당연히 그 글을 다시 당시 조선의 말로 번역하여 이해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글을 번역한 결과가 처음 그들의 생각과 같을 수 있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원전을 들여다 보고 원전과 우리말 사이를 오가며 사유하면서 나는 생각을 말로 옮기는 일,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꾸는 일 사이의 틈을 자주 생각하게 되었다.

번역은 비유하자면 마라톤에 견줄 수 있는 정직한 학문적 작업이다. 기본적으로 번역은 원문을 충실하게 옮기는 작업으로 어떤 명분으로든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선별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번역가는 원전과 독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가능한 한 원전의 뜻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 전달하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번역가는 때로는 절대 옮길 수 없는 원전의 절대성 앞에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체적인 독서를 포기한 독자들의 몰이해 때문에 실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번역가의 외로운 싸움의 결과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공간적 시간적으로 뛰어 넘어 수많은 고전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본디 번역에 관한 한 원전숭배주의자였고 전문가주의자였다. 그래서 연구자는 모름지기 원전을 직접 읽어야지 번역서를 보아서는 안 되고, 번역을 하더라도 독자의 이해보다는 원전의 함의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더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번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2001년 6월 교수신문에서 마련한 ‘번역과 탈식민의 모색’을 주제로 한 대담에서 국문학자 권보드래 선생, 영문학자 강내희 선생과 만나 대화하면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특히 권보드래 선생의 이야기에서 나는 내가 고집했던 원전에 대한 집착이나 전문가위주의 번역이 우리 학문의 식민성이나 비민주적인 학문풍토를 방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중요한 사실을 깨우쳐 준 그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그 뒤로 나는 번역을 평가할 때 원전과의 일치성을 위해 노력한 번역보다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더 고민한 번역에 주목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예기치 않게 텍스트를 誤譯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를테면 주석을 보지 않거나 무시하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또 주석을 보았다 하더라도 주석에 담긴 상세한 내용을 일일이 전달할 자신이 없으면 복잡난해한 내용은 접어두고 대의만 전달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그러다 보니 전통 주석과 다른 번역이 나오게 되고 때로 그런 오역을 창조적인 번역이라는 말로 피해가기도 했다. 물론 창조적인 번역은 번역하는 이의 자유로운 선택에 속하는 문제다. 다만 어떤 것이 오역이고 어떤 것이 창조적인 번역이냐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예컨대 주석을 읽고 그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주석과 다른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는 것

은 얼마든지 창조적인 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내놓은 견해는 제아무리 창조적인 견해라 하더라도 오역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고전은 지금을 사는 번역가에 의해 당대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독자에게 이해될 수 있지만 내용은 지금의 창작물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 옛날 고전의 작자에게 빚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시대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주석을 무시하고 내놓은 창조적 해석은 창조가 아니라 독단에 지나지 않는다. 말할 것도 없이 독단은 문자를 아는 이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래저래 번역을 하다보면 원전과 독자, 그리고 고색창연한 선현의 주석과 무지한 나 사이에서 헤매기 마련인가보다.

한문문헌의 斷句와 諺解

沈慶昊 (고려대 교수)

目 次

1. 머리말	(3) 直解
2. 斷口과 符號	(4) 이문체
(1) 斷句	4. 언해
(2) 之의 쓰임	(1) 정음문헌
(3) 『용비어천가』의 단구	(2) 사역원 교재의 언해본
(4) 鴛鴦雙對格	(3) 훈요서와 도가 관련 서적
3. 현토와 직해	(4) 고전시문집의 언해
(1) 구결	(5) 경서의 언해
(2) 이두식 한문	5. 맺는 말

1. 머리말

한국의 한문학과 전통 학술사상은 한문 문헌자료의 문맥을 분석하여 의도한 자료를 추출하는 문헌비판 방법을 발전시켜 왔다. 문헌비판의 방법은 한자학·한자음운학·훈고학의 지식을 기초로 삼아 문체론·수사학, 경전의 상호 대조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층위를 이루었다. 이 가운데 유가 경전의 본문을 분석하기 위한 한자학·한자음운학·훈고학의 방법을 특히 소학(小學, philology)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소학은 경전 해석의 도구학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일반 지식론과 학문방법론으로 응용되었다.¹⁾

그런데 소학의 수준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대표적인 결과가 바로 斷句와 諺解 등 한문문헌의 해독과 관련된 가공방법이다.

한국의 한문 독해법 역사에 대해 이유원의 『林下筆記』는 다음과 같이 개괄했다.

신라의 설총이 方言으로 九經을 풀이하고 또 俚語로 吏札을 만들어 관부의 공문서에 썼다. 박세채가 이르기를, “우리나라에서 經書를 口訣로 뜻풀이하는 것은 중국에는 없

1) 심경호, 『한국한문기초학사』 1-3, 3책, 대학사, 2012. 10.

으니, 설총에서 시작되어 鄭圃隱과 權陽村에서 완성되었다. 세조대에 이르러 신하들에게 나누어 명하여 구결을 짓도록 했는데, 여전히 각자 쓰는 것이 달라 이리저리 어지럽고 억지로 꿰맞추는 점이 있었다. 또한 선조 대에 이르러 담당 부서를 설치하고 관원을 명하여 상호 참조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여 諺解를 만들어 정하도록 하여 마침내 한 시대의 전형이 되었으니, 훌륭하다고 할 만하다. 다만 구결은 또한 중국에서 정한 句讀를 기준으로 해야 할 듯한데, 지금은 자르고 끊는 것에 힘써 구결과 뜻풀이가 마구 뒤섞여 기준으로 삼는 바가 없으니, 또한 다시 손봐야 할 듯하다.” 하고, 또 이르기를, “언해는 또한 더욱 종류가 많아 退溪 李滉에 이르러 뜻풀이를 합성했는데, 여전히 세상에 다 드러나지는 않았다. 栗谷 李珥가 이에 四書を 가지고 언해를 만들어 학자들이 받아 읽기 편하도록 했으니, 대개 당시 나라에서 미처 담당 부서를 설치하여 경서 언해를 만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했다.²⁾

2. 斷口과 符號

동아시아 삼국에서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후 8~9세기에 이르는 기간에 제작·사용된 다양한 용도와 형태의 목간 자료가 존재하는 것을 보면, 동아시아의 한 지역인 한반도에서도 기원전에 이미 한자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고구려 동천왕이 평양에 도읍하기 이전에 우리 민족은 한자한문을 활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자가 일본으로 전래한 시기가 2세기로 소급되는 것을 보면, 한반도에서의 한자 사용은 그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시작되었다고 추정하여도 좋을 것이다.

한문의 문맥 이해는 斷句과 口讀에서부터 시작한다. 斷句는 이미 木簡의 서사에도 나타났다. 고려시대의 角筆에는 상당수의 독해 부호들이 사용되었다.

중국은 白話文 등장 이후 고문 독해 방법으로 표점 문제를 제기하여, 周·漢부터 淸에 이르기까지 標點符號를 검토하고 서구의 표점 방식을 수용하여 활용했다. 周·漢부터 淸까지의 표점부호는 모두 26종이라고 한다.³⁾

△ □ = ∷ , ∟ 云云 點 乙 圓圍 方圍 抹 圈 截 擲 ○○○○ …
 , , , ○○○ ■ ■ / ∟ 括弧 方框 雙圈

2) 국역 『林下筆記』 권17, 「文獻指掌編」, ‘方言解九經’ 참조.

3) 중국의 전근대 標點符號에 대해서는 管錫華(2002), 452-453면 참조.

1996년에 중국 國家技術監督局은 「標點符號用法」을 제정했는데, 현재 16종류 24가지의 표점부호를 활용하고 있다. 근대 이전의 한문문헌인 古文에 사용하는 표점부호는 대개 14종류 22가지이다.⁴⁾

[표1] 고문의 표점

點號	명칭	句末點號			句中點號			
	모양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쉼표	모점	머무름표	쌍점
		. / ,	?	!	,	,	;	:
標號	명칭	따옴표	괄호	줄표	생략부호	書名號	專名號	가운뎃점
	모양	「 」 『 』 “ ” , ,	() [] 【 】	—		「 」 『 』 ~~~~~	——	.

(1) 斷句

상고시대 문자생활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자료로, 근년 들어 목간 자료가 중시되고 있다. 한국의 목간은 6~8세기의 것이 주류를 이룬다.

첫째, 扶餘의 陵山里·官北里·宮南池 等地에서 出土된 6~7世紀 百濟의 木簡들⁵⁾

둘째, 慶州 雁鴨池·月城垓字, 咸安 城山山城 等地에서 出土된 6~8世紀 新羅 木簡들⁶⁾

셋째, 金海 鳳凰臺 遺蹟과 仁川 桂陽山城에서 發掘된 『論語』 木簡⁷⁾

4) 袁暉·管錫華·岳方遂, 『漢語標點符號流變史』湖北教育出版社, 武漢, 2002 참조

5) 李成市, 「韓國出土의 木簡について」, 『木簡研究』 19, 木簡學會, 1997, 221-249면; 李成市 著, 李鎔賢 번역, 「韓國木簡연구의 현황과 咸安城山山城출토의 木簡」, 『한국고대사연구』 19, 한국고대사학회, 2000, 77-108면; 金永旭, 「百濟 吏讀에 대하여」, 『口訣研究』 11, 口訣學會, 2003, 125-151면; 金永旭, 「古代 韓國木簡에 보이는 釋讀表記에 대하여」, 『口訣研究』 19, 구결학회, 2007, 157-167면; 近藤浩一, 「扶餘 陵山里 羅城築造 木簡의 研究」, 『百濟研究』 39, 충남대 백제연구소, 2004, 85-129면; 尹善泰, 「扶餘 陵山里 出土 百濟木簡의 再檢討」, 『東國史學』 40, 동국사학회, 2004, 55-78면; 尹善泰, 「百濟 泗泚都城과 嵎夷: 木簡으로 본 泗泚都城의 안과 밖」, 『東亞考古論壇』 2, (財)忠淸文化財研究院, 2006, 239-303면.

6) 國立慶州博物館 編, 『文字로 본 新羅: 新羅人의 記錄과 筆跡』, 학연문화사, 2002;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고대목간』, 예맥출판사, 2004;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개정판)한국의 고대목간』, 예맥출판사, 2006; 한양대학교박물관 편, 『二聖山城: 이성산성발굴 20주년 기념특별전』, 2006;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월성해자II-고찰』, 慶州: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6.

7) 橋本繁, 「金海出土『論語』木簡と新羅社會」, 『朝鮮學報』 193, 朝鮮學會, 2004, 1-32면; 平川南

6세기 후반 늦어도 7세기 전반의 것으로 추정되는 월성해자 9(156) 목간에는 ■ | , ■, ㄱ 등 3종의 부호가 사용되었다. ■는 部別 시작을 나타내고, |는 구간의 구분을 표시하며, ㄱ는 시작을 나타내는 듯하다.

월성해자 9(156)

I ·「 ■ 習比部上里今受 ㄱ 南置上里今受 阿今里不 岸上里不」

II ·「 □□受 □上受 尤祝受 除□井受 開池□受 赤里受 □□受 □□□□ □里
不有 □□□」

III ·「 □□南川受 □東里禺□受 □ □北伐□受 多比刀不有 □ □川岸□受代土□ 」

IV ·「 □□不 伐□里□受 赤居伐受 麻支受 ■ | 牟喙 仲里受 新里受 上里受
下里□ 」

I 면에서는 ‘習比部上里今受’ 과 ㄱ 사이에 공간이 있다. 관리가 메모로 사용하고 그 내용을 정식문서에 옮긴 후 이 부분을 깎아 다시 사용한 듯하다.

월성해자 19(168) 목간에는 글자를 썼다가 지우면서 검게 덧칠한 抹消符를 사용하였다. 말소의 부호는 서사 습관상 흔히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데 6세기 중엽의 자료인 함안 성산산성 출토 성산1-12 목간은 교정용의 顛倒 부호를 사용하였다.⁸⁾

성산1-12(『함안산성』 1999)

「竹戸□牟ㄴ于支稗一 ∨ 」 18.6×2.5×0.8

ㄴ은 앞 글자와 뒷글자의 순서를 바꾸어 읽으라는 표시이다. ‘于牟’로 써야 할 부분을牟부터 잘못 쓰고는 전도부호로 순서를 정정한 것이다.

성산3-7 목간에는 반복 부호가 사용되었다. 이 목간은 “次々支村(촌 이름) + 支你留(인명) + 稗石(稗 1석)”으로 분석된다. 촌 이름에 앞 글자의 반복을 표시하는 々를 사용하였다.

성산3-7(『함안산성』 2004)

編, 『古代日本 文字の來た道：古代中國・朝鮮から列島へ』, 東京：大修館書店, 2005.

8) 함안 성산산성은 『삼국유사』에 보이는 아라가야, 광개토왕비의 安羅의 옛 땅인 함안에 자리 잡은 여러 성 중의 하나이다.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咸安 城山山城』, 學術調査報告書 第5輯, 1998;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咸安 城山山城』 2, 學術調査報告書 第27輯, 2004.

- 「次々支村支你留 V」
- 「稗石 V」

한문 문헌에는 대개 구두 부호를 하지 않았다. 간혹 부호를 붙인 것도 있지만 후대의 抄錄者나 독자가 덧붙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문장이 끊어지는 곳에 권점을 찍거나 구두 붙일 자리에 사이를 떼어두거나 문장이 끊어지는 곳에 [句]라는 표지를 넣어두기도 하고 행을 바꾸기도 했다.

조선의 지식인들도 한문원전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이해시키고자 할 때 斷句의 필요를 절감했다. 후대의 예이지만, 윤근수는 한유 문장의 ‘句節本’ 즉 단구본을 구입하려고 명나라 사신 熊化에게 수소문을 부탁했다.⁹⁾ 윤근수는 중국 구절본을 구하지 못하고,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한유 문장에 현토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조선전기에 간행된 한문 전적 가운데 단구본의 예로는 『사서대전』·『오경대전』, 『四書輯釋章圖通義大成』, 『용비어천가』, 『속삼강행실도』, 『歐陽論範』, 『家禮大全書』, 『書傳大文』, 『聖學十圖』, 『小學集說』(계유자본)이 있다.

조선전기의 언해본 교훈서는 독자의 열람에 편리하도록 권점을 이용하여 斷句를 해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481년(성종 12)에 간행된 『삼강행실도』와 1518년에 초간된 옥산서원본 『이륜행실도』를 보면 句와 讀의 곳에 권점이 붙어 있다.¹⁰⁾ 김안국이 1518년(중종 13)에 언해한 『주자증손여씨향약』은 1574년(선조 7)에 을해자로 간행할 때 단구의 권점을 아예 본문 글자의 크기로 해 두었다.¹¹⁾ 하지만 1727년에 규장각에서 『이륜행실도』를 중간하면서 권점을 없앴다. 한편 『삼강행실도』나 『이륜행실도』의 畵의 欄上에 있는 언해문은 1518년의 초간본에서부터 아예 단구를 하지 않았다. 이것을 보면 한글 문장을 가공하는 방식과 한문 문장을 가공하는 방식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문헌에서 한문본이나 역경의 한글 독음에 구두점을 친 것은 종종 볼 수 있으나, 언해문 전체에 걸쳐 구두점을 친 문헌은 매우 적다. 15세기 『용비어천가』를 제외한다면 근대국어 시기의 극히 일부 문헌에서 볼 수 있을 뿐이다. 예천 용문사판 『염불보권문』(1704년)¹²⁾, 『지장경언해』(1765년, 약사전판), 해인사판 『염불보

9) 『月汀集』 부록 「尹月汀樞府別狀」 “韓文句節三家會粹，聞其板在杭而書不甚行，不佞亦未嘗見.”

10) 『이륜행실도』의 1518년 초간본(옥산서원본)과 1727년 중간본(규장각본)은 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 『二倫行實圖·警民編』(東洋學叢書 제6집,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1978. 9. 초판, 1995. 1. 2쇄)에 영인되어 있다.

11) 만력 2년 2월의 내사본이 전래되고 있다. 일본 내각문고 소장의 을해자본도 같은 시기의 간행물로 추정된다. 심우준, 『일본방서지』, 222-224면.

12) 용문사판 「염불보권문」의 구두점에 대해서는 김주원, 「보권염불문(용문사판)의 구두점 연구」

권문』(1776년)에 합철된 『아미타경언해』¹³⁾, 『묘법연화경언해』(1799년, 송광사판), 『규합총서』(1869년) 등이 그것이다. 근대 국어 시기에 띄어쓰기를 한 문헌은 찾아볼 수 없고, 띄어쓰기의 시초가 되는 구두점을 찍은 문헌은 조선후기에 등장하게 된다.¹⁴⁾ 곧, 19세기 말 학부(學部) 간행 교과서에 이르러 구두점을 사용하게 된다.

『사서대전』·『오경대전』과 『四書輯釋章圖通義大成』은 명판본을 번각하면서 구와 두를 구분한 단구의 권점도 같이 새겼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단구의 권점을 새기지 않게 된다. 을해자판 번각 『대학장구대전』·『중용장구대전』(蓬左文庫 소장)을 보면 단구의 권점이 없다.

『歐陽論範』은 원나라 歐陽起鳴이 엮은 論體 문장학습서다. 2권 2책의 갑진자본이 일본 내각문고에 있는데, 이 책에는 단구의 권점이 있다. 논체 문장의 학습에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家禮大全書』는 1563년(명종 18)에 곡성에서 개간된 것이 있는데, 일본 蓬左文庫 소장의 4권 1책을 보면, 단구의 권점과 破讀의 圈發을 정교하게 새겨 두었다.

李滉의 저술 『聖學十圖』는 「聖學圖」 및 「退溪封事」와 함께 각각 1권씩 합책하여 1572년(선조 5) 목판으로 인쇄하면서 단구를 위한 권점을 새겨두었다. 현재 일본 내각문고에 1572년 간본의 후쇄본이 수장되어 있어 원 모습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저술에 단구의 권점을 붙인 것이어서 이례적이다.

『소학집설(小學集說)』은 본래 명나라 정유(程愈)·이감(李鑑)·이승조(李承祖) 등이 편한 책이다. 1485년(성종 17) 경에 인출한 목활자본 6권 2책(일본 宮內廳 書陵部 소장)을 보면 단구의 권점이 없으나, 선조 연간 간행의 계유자본(일본 내각문고 소장)은 단구의 권점을 인쇄했다.¹⁵⁾

또한 명종 연간의 부안 간행 목판본 『서전대문(書傳大文)』과 『시전대문(詩傳大文)』은 호사 문고(蓬左文庫) 소장의 민여임 구장본 『서전대문』¹⁶⁾을 보면 경문에 단구의 점을 인쇄하고 변란 위의 서미(書眉)에 이두로 구결을 새겼다. 이 책은 『서전대전』의 대문(즉 경문)과 채

(『국어국문학연구』 22, 영남대 국어국문학과, 1994), 7-33면을 참조.

13) 해인사판 「염불보권문」(1776년)에 합철되어 있는 『아미타경언해』는 합철본을 만들 때 기입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는 김무봉, 「長壽經諺解(동국대 도서관 소장본) 연구」, 『동악어문논집』 38(동악어문학회, 2001.12)를 참조.

14) 홍윤표, 『근대국어연구(Ⅰ)』(태학사, 1994), 155-156면.

15) 심우준, 『일본방서지』, 210-211면에는 같은 내각문고에 소장된 계유자본(內 9379. 4. 298-230)을 함께 소개했는데, 이 별도의 ‘계유자본’은 단구하지 않았다. 같은 시기에 단구본과 단구 않은 텍스트를 동시에 간행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재고해야 한다.

16) 천혜봉, 『일본 봉좌문고 한국전적』, 60-62면.

침(蔡沈) 주(註) 등 본주(本註)만 뽑고 음주(音註) 이외의 쌍행소주(雙行小註)는 삭제한 것이어서, 경문 본문만 인쇄하는 백문본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본문에 단구를 한 점이 특이하다.

(2) 之의 쓰임

문장말 조자 之는 월성해자 목간의 3면(‘牒垂賜教在之’)과 棕直銘 목간의 앞면(‘棕直傳之, 我者反來之’)에 나타난다. 중국에서는 드물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었다.¹⁷⁾ 다음의 (a)는 중국 문헌의 예 (b)는 한국 문헌의 예 (c)는 일본 문헌의 예이다.¹⁸⁾

(a) ③延昌卅二年(A.D.542?) {……} 汜崇慶之墓表之焉也 『高昌國墓表』

⑥[因王其國 百有餘歲之] / [則此城之也] 『翰苑』(張楚金, 660)의 夾註

⑦則是世俗之君子之視義士也 不若視負粟粟者之 『墨子』 「貴義」篇

(b) ③買人制令守墓之 『廣開土大王碑』(414) 4面 9行

⑥五月中 {……} 東來之 {……} 跪營之 『中原高句麗碑』(5세기 전반?) 3面

⑦于時教之 『蔚珍鳳坪新羅碑』(524)

⑧ {……} 更赤城烟去使之 {……} □□□□□合五人之 『丹陽新羅赤城碑』(6세기 중반)

(c) 君則天之, 臣則地之 『日本書紀』(720) 22卷 憲法17조 중 제3조

주제격 조사 ‘-者’는 월성해자 목간 3면(‘後事者命盡’)과 棕直銘 목간의 전·후면(‘我持往稻者, 我者反來之, 其稻在處者’)에 나타난다. ‘-者’는 한문에서는 지시대사인데, 한국어나 일본어에서는 주제격 조사를 표시하는 글자로 활용되었다. 부여 능산리사지 4면 목간(6세기 초반?)의 “其身者如黑也”에서도 이 용법이 확인된다. 고구려에는 같은 용법의 자료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甘山寺阿彌陀如來造像記」(720년)는 병려문의 원문 끝에 이두문을 첨가하였다. 이 이두문에서는 신라 이두 ‘哉’의 용법이 확인된다.¹⁹⁾ 원문과 이두문을 보면 아래와 같다.²⁰⁾

17) 南豐鉉, 『吏讀研究』, 태학사, 2000, 107-108면; 모리 히로미치(森博達) 저, 심경호 옮김, 『일본서기의 비밀』, 황소자리, 2006, 168-169면.

18) 모리 히로미치(森博達) 저, 심경호 옮김, 『일본서기의 비밀』, 황소자리, 2006, 168-69면 및 237면. (a)⑦는 이승재 외, 『角筆口訣의 解讀과 翻譯』 3, 태학사, 2006. (b)④~⑧는 南豐鉉, 『吏讀研究』, 태학사, 2000.

(a) 若夫至道者，不生不滅，猶表跡於周宵。

能仁者，若去若來，尙流形於漢夢。

濫觴肇自西域，

傳燈及至東土。

遂乃佛日之影，奄日域，以照臨。

貝葉之文，越涓川，而啓發。

龍宮錯峙，

鴈塔駢羅。

舍衛之境在斯，

極樂之邦密爾。

有重阿浪金志全，

誕靈河岳，降德星辰。

性叶雲霞，情友山水。

蘊賢材而命代，

懷智略以佐時。

朝鳳闕而銜綸，則授尙舍奉御。

逡雞林而曳綬，則任執事侍郎。

年六十七，懸車致仕，

避世閑居，侔四皓之高尙，

辭榮養性，同兩疎之見機。

仰慕無著眞宗，時時讀瑜伽之論。

兼愛莊周玄道，日日覽逍遙之篇。

以爲報德慈親，莫如十號之力。

酬恩聖主，無過三寶之因。

19) 남풍현, 『이두연구』, 태학사, 2000, 422-434면.

20)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1-3,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번역은 한국금석종합영상정보시스템 제공 김남윤씨 번역을 따르되 약간 윤문을 한다.

(b) 故奉爲國主大王伊飡愷元公，亡考亡妣，亡弟小舍梁誠，沙門玄度，亡妻古路里，亡妹古寶里。又爲妻阿好里等，捨其甘山莊田，建此伽藍，仍造石阿彌陀像一軀。

伏願託此微，因超昇彼岸，四生六道，並證菩提。

開元七年，歲在己未二月十五日，奈麻聰撰奉教。沙門釋京融，大舍金驟源， 」

(c) 亡考仁章一吉飡，年卅七，古人成之，東海欣支邊，散也。

後代追愛人者，此善助在哉。

金志全，重阿飡，敬生已前，此善業造。

歲 十九庚申年，四月廿二日，長逝，爲 之」

(a)의 부분은 사륙병려체이되 압운을 의식하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압운의 효과를 지닌 用字가 있지만 압운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b)는 緣起敍述이면서 중간에 “伏願託此微，因超昇彼岸，四生六道，並證菩提”의 贊을 두었다. 압운은 하지 않았다.

(c)는 후대의 비명에서 銘이나 辭에 해당한다. 하지만 문언어법의 한문으로 짓지 않고 이두문을 사용하였다. 구어의 祝詞를 이두문을 이용해서 읊기고자 한 것이다.

“年卅七，古人成之，東海欣支邊，散也”에서는 之[也]를 이용하여 평서법 종결어미를 표시하고 동시에 어구의 반복리듬을 살렸다. “此善助在哉”의 ‘哉’는 이두어 ‘齊’, 향가어 ‘制’와 같은 용법인데, 전체구절은 감탄의 뜻을 지닌다. “敬生已前，此善業造”은 “已生前，敬造此善業”을 4언 2구로 개작하되 이두식 표현을 이용하였다. “長逝，爲 之”에서도 之자를 이용해서 평서법 종결어미 ‘-라’를 표시하였다.

798년에 행서체로 작성된 「葛項寺石塔記」[국립중앙박물관. 原 慶北 金陵郡 南面 梧鳳里 葛項寺址]에 보면 한국의 고유 글자인 姉자가 나온다. 이 글자는 남형제의 뜻을 지닌다. 姉姉妹는 남자 1인과 여자 2인의 3인을 말한다.²¹⁾

二塔，天寶十七年戊戌中立在之。

姉姉妹三人，業以成在之。

姉者，零妙寺言寂法師在姊，

姉者，照文皇太后君姊在姊，

2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妹者, 敬信太王妳在也.

天寶十七年戊戌은 신라 景德王 17년(758).

中은 처격조사 ‘-에’의 이두 차자.

在는 ‘겨’의 차자, ‘두다’의 의미.

之는 종결어미 ‘-다’를 표기한 이두.

甥은 우리나라 俗字로 男兄弟의 뜻.

以는 조격조사로서 ‘-로’.

在妳는 뒤의 在也와 함께 앞에 ‘是’가 생략된 것으로 ‘-이겨다’로 읽음.

君은 황태후나 부인의 뒤에 쓰인 ‘-님’의 표기인 ‘主’와 같은 용법.

妳는 유모를 의미하는 한자. ‘내’의 차용으로, 여성 지칭 명사에 연결되는 존칭 접미사.

敬信은 元聖王(785~799 재위)의 휘. 원성왕비는 각간 金神述의 女 蓮化夫人. 그러나 부인을 남편으로 지칭한 용례가 없어 미상임. 이 3인을 외숙, 원성왕 母. 이모로 추정하기도 함.

(3) 『용비어천가』의 단구

『용비어천가』는 훈민정음 반포 이전인 1442년(세종 24) 3월 임술(1일)부터 집현전 학사들이 편찬을 시작해서 1445년 4월 무신에 權躋·鄭麟趾·安止 등이 원고를 上進했다. 이때 『용비어천가』는 현재와 같은 125장으로 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八駿」은 즉시 ‘성률’에 올려 조정에서 사용했다.²²⁾ 그 뒤 崔恒·朴彭年·姜希顔·申叔舟·李賢老·成三問·李塏·辛永孫 등 집현전 학사들이 주해를 첨부해서, 1447년 2월에 10권 5책으로 묶었다. 이것이 그 해 10월에 출간되었다.²³⁾ 그 뒤 梁誠之는 1457년(세조 3) 6월 28일에 判書雲觀事로 있으면서 「龍飛御天圖」를 국왕에게 헌정했다.²⁴⁾

22) 심경호, 「論 『龍飛御天歌』」, 『국문학연구와 문헌학』(태학사, 2000)을 참조.

23) 『용비어천가』의 판본으로는 임진왜란 이전 고판본 零本(규장각 가람문고, 일사문고 등 소장), 1612년(광해군 4) 간행본(규장각 소장 太白山本과 五臺山本), 1659년(효종 10) 간행본, 1735년(영조 41) 간행본 등이 있다. 또한 『세종실록』 「樂志」에 국문가사만 초록되어 있다. 1612년 간본은 1937년에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가 영인한 일이 있다.

24) 梁誠之, 『訥齋集』 속집 권2 「龍飛御天圖序」. 양성지는 1446년(세종 28년 11월 임신 조에 보임)에 龍飛詩를 첨입할 때 春秋官記注官으로 있으면서 『태조실록』을 抄한 인물이다. 「용비어천도」 자체는 현전하지 않는 듯하다.

『용비어천가』는 한글창제 이후 간행된 최초의 한글문헌이다. 조선 세종 때에 先祖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 6대의 사적과 그에 대응되는 중국 역대 제왕의 사적을 대구로 하여 읊은 노래와 그 주석을 실었다. 10권 5책의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125장의 한글가사와 그에 해당하는 한시를 본문으로 하고, 각 장마다 주해를 붙인 체재로 되어 있다.

이광사는 「論東國諺解吐」를 남겨 『용비어천가』의 현토와 문헌가공에 대해 일정한 평가를 했다.²⁵⁾ 小學의 水準을 척도로, 세종조 문화와 선조조 문화를 비교한 바 있다. 선조 때 大全本을 底本으로 이루어진 校正廳諺解本을 평가절하하는 의미를 지닌 논문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말로 文에 쓰고 句에 끊어 달고서 이름하여 吐라하니, 토란 마땅히 구가 끊어지는 곳에 달아야 한다. 우리나라 언해토는 반 이상이 구가 끊어지지도 않는 곳에 다는데 여러 문인의 글이나 경연의 기록의 토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러하다. 수백 년 동안 한 사람도 바로 잡은 이가 없으니 개탄할 노릇이다. 구란 마치 시인들이 五言 七言을 한 구로 치듯 장단을 따질 것 없이 스스로 한 뜻을 이루어야만 구가 되는 것이어늘, 언해와 경연토는 모두 한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구를 이루지 못하니 급히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본 경서의 點句는 서당 선생이나 승방의 서생이 멋대로 어지럽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예로부터 구는 있어도 토는 없지만 漢唐의 큰 선비들의 손을 거쳐 전해 오다 마침내 程朱 여러 선비에 의해 바로 잡히어 마땅히 따르고 받들어 읽지 않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문장이 성하기로는 穆陵[선조대] 때를 최고로 잡거니와 목릉 때의 문장은 崔嵬으로 으뜸을 삼으나, 최립이 『漢書』 「열전」을 엮음에 그가 찍은 구두와 토를 기재한 것이 비루하고 촌스럽기가 외딴 촌구석 것과 같아서 견식 없는 학생들이 억지로 문리를 꿰뚫은 것처럼 도무지 체계를 모르니 심히 괴이하고 우습다.

국초에 정인지가 『고려사』를 찬수할 때 자못 史體를 알아 錢謙益 같이 남을 홍보기 좋아하는 사람도 역시 극히 칭찬했다. 그가 엮은 「용비어천가」를 보건대, 그 구두에 점 찍은 것이 모두 체계를 알아서 하나도 차이가 없고 글자 사방의 권점인 平上去入이 모두 법칙에 맞고 音釋, 訓義가 모두 옛 법에 어긋남이 없으니 세종 때 문인이 정인지를 닦추어 보았으되 사실인즉 이만한 사람이 없다. 이 규례란 문인의 緒餘 같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면 족히 문장하는 선비가 될 수 없으니 목릉 시대 이래로 문인들은 대개가 규례를 모르는 자들인 까닭에 언해를 그르치고 토를 잘못 달았는데도 바로 잡은 사람

25) 심경호 외 편집, 『定本貞嶠李匡師集』 참조. 1757년 11월 26일 저술.

이 없었으니 언해와 文旨의 잘못됨이 헤아릴 수 없으리니 토의 잘못됨이야 또한 어찌
 족히 말할 수 있겠는가?²⁶⁾

한편 한문고전에서 어떤 글자들은 관습적인 음과는 다른 성조나 발음으로 읽어 의미나 어
 법 기능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것을 破讀 혹은 讀破라고 한다. 발음이 아주 달라졌을 때를
 變讀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 파독 혹은 변독을 표시하기 위해 聲點을 붙인 문헌이 있다. 중
 국서적의 복각으로는 『사서대전』·『오경대전』과 『家禮大全書』가 있다. 조선 편찬의 예로는
 정인지 등이 편찬한 『용비어천가』와 최세진의 『훈몽자회』가 있다. 조선후기에는 『사서대전』
 ·『오경대전』에 파독의 권4발을 인쇄하지 않게 된다.

(4) 鴛鴦雙對格

이승인의 『陶隱集』(1406년 무렵 초간 이후 중간된 간기 미상의 고려대 만송문고 소장본)
 을 보면 시를 2구 1련마다 행을 바꾸어 새겼다. 조선후기에 한시를 2구씩 나란히 적는 이른
 바 ‘원앙쌍대격(鴛鴦雙對格)’에 선행하는 것으로서 매우 주목된다.

3. 현토와 직해

삼국은 한자를 차용하여 모국어 표현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실험하였다. 또한 구절과 이
 두를 사용하였다. 구절은 한문을 그대로 읽어나가면서 우리말의 관계사나 동사 뒤에 단락 짓
 기 위해 사용하므로 불과 20~30자의 차용만으로 충분하다. 이두는 공용문서나 증서 및 소장
 등에서 관계사뿐 아니라 동사·부사 등 우리말의 특수어에까지 사용하였다. 의문문의 경우,
 의문조사를 생략하고 이두로 의문의 뜻을 표시하였으므로, 한문 자체의 문체도 상이하게 변
 형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미 고구려 성벽의 석각문 제1석(566년)에 이두식 표현이 들어 있다.

26) 東人以方言足文書句絕，名曰吐。吐當足於句絕，東國諺解吐，強半足於 無句絕處，至諸家書經
 筵記吐，皆然，數百年無一人正之，可慨。句者，如詩家以五言七言爲一句，不問長短，自成一義，
 乃爲句。諺解及經筵吐，皆不成一義，故不成句，不可不急正。華本經書點句，非塾師坊生，以意亂
 之者。中國自古有句無吐，皆經漢唐大儒手相傳，終正於程朱諸儒者，當遵奉勿失。我東文章之成，
 以穆陵時爲最，穆陵時文章推崔立之爲巨手，立之編『漢史列傳』，所點句記吐，野陋鄙俚，類閭鄉僻
 陋，無聞見學究，強自穿理者，都不識體段，甚可怪笑。國初鄭河東麟趾，纂『高麗史』，頗有史體，
 以錢謙益之喜詆人，亦亟詡之，觀所撰『龍飛御天歌』，其點句，皆知體段，無一差，字四傍圈平上去
 入，皆有法，音釋訓義，皆不違古式。穆陵時文人，視河東卑夷也。其實當無及此者。似是規例，文
 人之緒餘，有不解，亦不足爲文章士。穆陵以來文人，皆無識規例者，故誤諺解，誤記吐，而亦無正
 之者。諺解文旨之失，不可算，吐之誤，亦何足道。

(1) 구결

김부식은 『삼국사기』에 설총을 立傳하여, 설총이 方言으로 九經을 읽어 후생을 훈도했다고 했다.²⁷⁾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설총이 “方音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풍속과 물명을 通會했으며, 육경과 문학을 訓解했다.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明經의 業을 하는 사람들이 그의 훈해를 전하여 끊어지지 않고 있다.”²⁸⁾라고 했다. 설총은 한자한문의 한국어 독음을 정하고 借字標記의 이두를 달거나 한문을 해석하는 순서를 알려주는 기호와 점·선 등의 부호를 붙였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자세한 사정은 알 수가 없다. 단, 고려의 이승휴는 『帝王韻紀』(1289년 간행)에서 “홍유 설총이 吏書를 만들어서 俗言과 鄉語로 科隸에 통하게 했다.”²⁹⁾라고 했다. 설총이 吏書 즉 이두로 한문을 독해했다고 본 것이다.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한문독해 방식에 대해 이규경은, 경서를 읽기 위해 우리 민족이 구두를 사용해야 했으며, 구두를 달아 경문을 우리식으로 읽는 것을 懸吐(懸讀)이라고 했다. 다만 이규경은 설총 시대의 구두법이 당나라에서 수용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를 것이다.³⁰⁾

『경국대전주해』 권3 「禮典」에서 정의했듯이, 글을 이루고 말이 끊기는 곳을 句라 하고 말이 끝나는 곳에 점을 찍어 구분하여 글을 읽거나 외우는 데 편하게 하는 것을 讀라 한다. 구두를 기호로 표시하는 것이 懸吐이다.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 이후 문맥을 자국의 언어로 환치하는 것을 諺解라고 했다.

불경에 角筆한 釋讀口訣은 독창성을 지닌 문자체계였다. 이를테면 점이나 선을 이용하는 符點이 한문 어순을 한국어 어순으로 바꾸거나 한자를 한국어 단어나 형태소로 치환했다.³¹⁾

근래의 연구에 따르면 구결은 음독구결과 석독구결로 나뉜다.³²⁾

27) 『三國史記』권46 열전 제6 「薛聰傳」.

28) 『三國遺事』권4 「義解·元曉不羈」.

29) 李承休, 『帝王韻紀』下. “弘儒薛侯製吏書, 俗言鄉語, 通科隸.”

30)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經書口訣本國正韻辨證說」, 『오주연문장전산고』고전간행회본 권34 경사편1 경전류3 經傳雜說.

31) 각필과 같은 석독구결의 발견은 11~12세기의 國語 資料는 물론 한자 문화와 관련한 동아시아적 소통과 교류, 나아가 한문 독해 방식의 다양성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석독구결의 의미와 번역과의 관련성 등의 성과는 이승재(2004), 289-317면과 이승재(2005) 173-197면 참조.

32) 장경준, 『瑜伽師地論 點吐釋讀口訣의 解讀 方法 研究』, 국어학총서 58, 국어학회, 2007. 28-29면.

- ㉔ 음독구결은 구두점을 찍는 방식보다 더 작은 단위(구나 절)로 문장 성분을 구분한 다음, 우리말의 문법 형태를 나타내는 구결자들을 닮으로써 문장 성분들 사이의 통사 관계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 ㉕ 석독구결은 문장성분을 가장 작은 단위(단어)로 분석하고 각 단위마다 우리말의 문법 형태를 나타내는 구결자를 달되 역독점과 토의 위치를 이용하여 어순까지 우리말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석독구결은 口訣字로 토를 단 字吐釋讀口訣과 口訣點으로 토를 단 點吐釋讀口訣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즉, 한자 주위에 각필로 부호를 표시하기도 하고 점토를 하기도 한 것이다. 이때 부호는 한국어의 조사, 조동사, 경어 등을 나타내어, 일본의 ‘오코토 점’(한문 훈독 때 오쿠리 가나 대신에 한자 주위에 점으로 표시한 것)과 유사하다. 한편 點吐는 표음문자의 속성을 가진다.

각필이나 묵서로 점이나 선, 점이나 선을 합한 부호, 또는 기타의 다른 부호들로 현토한 것들에 대해 남풍현 교수는 이것을 點吐口訣이라고 불렀다.(남풍현2000: 5-45). 이후 이승재(2000: 135-152)와 정재영(2001: 43)은 부호구결이라고 부르겠다고 했다. 장경준(2001: 114)은 한문 원문에 점과 선을 이용하는 것을 點吐口訣이라 하고 문자를 이용하는 것을 字吐口訣이라고 구별했다. 석독구결 중에서 특히 점토석독구결의 문자 체계는 문자론, 표기법의 연구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런데 음독구결과 석독구결은 불경의 독해에서 흔적을 남기고 있다. 正史나 일반 서적에 구두를 표기한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구결은 오히려 조선시대에 더욱 널리 활용되었다.

고려 말 이래로 여러 학자들은 유가 서적에 현토를 시도했다. 1398년(태조 7) 10월에는 왕이 四書を 열람하려고 하자, 知經筵事政堂文學 河崙과 兼大司憲 趙璞이 四書を 點節하여 진헌했다고 한다. 點節은 곧 점토구결을 뜻할 수 있다.

훈민정음 전후로 한문 독해는 불경과 유교 경전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면서 독해 방법은 다양해 졌다. 한문 원전을 언해하거나, 한문 원전에 현토하며, 혹은 吐釋하는 방법으로 한문을 독해했다. 현토는 한글 창제 이후에 더욱 활발하게 되었다. 구결이 함께 인쇄된 문헌은 다음과 같다.

(a) 借字 口訣 문헌 : 『童蒙先習』(1587년판), 『童蒙須知』, 『書傳大文』, 『小學集說』(한

글과 차자), 『詩傳大文』, 『詩正文』, 『朱子增損呂氏鄉約』, 『周易大文』, 『地藏菩薩本願經』, 『孝經』 등.

(b) 한글 口訣 문헌 : 『句解南華眞經』, 『南華眞經大文口訣』, 『論語大文口訣』, 『禮記集說大全』, 『圓覺經口訣』, 『周易傳疑大田』, 『周易傳義』 등.

口訣은 시대마다 개인마다 표기 형태가 다르고, 한자 略體吐와 한글 토를 각각 구별하여 쓰거나 통합하여 쓰기도 했다.

유가 경전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헌에서 구절을 확인할 수 있다. 李珣(1536~1584)의 『醇言』은 그 가운데 한 예이다.

李珣는 『도덕경』에서 유학에 부합하는 구절만을 가려 뽑아 구절을 달고 주석을 붙였다. 뒤날 洪啓禧(1703~1771)가 1750년에 활자로 간행했다. 전체 40章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 토를 달고 字句마다 주석을 했을 뿐 아니라, 각 章 끝에는 전체의 의미를 요약해 놓았다. 전체를 「道經」과 「德經」 2편으로 나누거나 81장으로 나누던 河上公本の 체제와 다른 를 벗어나 전체를 재구성했다.

尹根壽는 崔岌이 韓文을 초록하고 懸吐를 하고자 난해처와 이견처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는데, 윤근수는 왕복한 箋紙를 정리하여 『韓文訂疑集覽』으로 엮었다. 이 『한문정의집람』을 다시 刪改한 것이 『韓文吐釋』이다. 『한문토석』은 『月汀先生別集』(1744년간 윤각인서체자본)의 권2와 권3에 수록되어 전한다. 윤근수는 『한문토석』을 1612년경에 광해군에게 헌정하면서 筭子를 올렸는데, 그 ‘進註解經史筭’가 『月汀集』권4에 수록되어 있다.³³⁾

조선후기에는 예학 관련 서적에도 연구자가 현토를 하기도 했다. 姜浩溥(1690~?)의 『喪禮備要口訣』은 그 일례이다. 강호보는 申義慶이 편찬하고 金長生이 보완한 『喪禮備要』 「喪禮」에 口訣을 붙이고 각종 註疏 중에서 긴요한 것들만 따로 추려내 欄外에 덧붙여서 『상례비요구결』을 편찬했다.³⁴⁾ 그는 이 책을 숙독한 이후 주희의 『家禮』로 나아가는 공부 방법을 취할 것을 제시했다. 강호보가 「喪禮備要口訣識」를 작성한 것은 1738년(영조 14)의 일이다. 강호보의 「喪禮備要口訣識」가 전한다.³⁵⁾

33) 『月汀別集』에 수록된 『韓文吐釋』의 권말에도 일부 초록되어 있다. “韓文則曾從同知崔岌相與往復訂正, 寫成訂疑集覽上下卷. 或可因其有疑難處而參考, 則不無所益. 今敢投進, 少賜乙覽後還下, 則可更刪改繕寫而進.”

34) 본관은 진주, 자는 養直이다. 아버지는 寺正 錫圭이며, 韓元震의 문인이다. 1754년(영조 30) 通德郎으로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했으며, 같은 해 교리를 거쳐 현감으로 나가 크게 치적을 남겼다. 관직은 첨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정조 초에 벼슬길에서 물러나 성리학 연구에 몰두했는데, 특히 主氣論의 입장을 취했다. 편저로 『朱書分類』가 있다.

정조는 『좌전』과 杜預 註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춘추좌씨전』에서 그것을 산절하였다. 그리고 책에는 諺讀(즉 懸吐)을 하였다.

조선후기에는 구두의 문제와 관련하여 指南書가 나왔다. 곧 李森煥(1729~1813)의 「句讀指南」도 그 중 하나이다.³⁶⁾ 「句讀指南」은 ‘句讀指南’, ‘句讀舉要’, ‘助辭訓釋’의 세 節로 구성되어 있다.

(2) 이두식 한문

고려시대의 비명에도 이두식 한문은 잔존하였다. 신라말 고려초의 선사 慈寂禪師 弘俊(882~939)을 위해 세운 「高麗國尙州鳴鳳山境清禪院故教諡慈寂禪師凌雲之塔碑銘并序」 즉 「영풍 경청선원 자적선사 능운탑비문」은 여말선초의 崔彦擣가 지은 것으로 추정되며, 문하 제자인 ‘口裕’가 구양순체 해서를 집자하여 대사 입적 2년 후인 941년(태조 24)에 세웠다. 비문은 30행에 1행 59자로 구성되었다. 銘은 완전한 운문이다. 陰記에는 국가에서 선원 명칭을 윤허받은 것을 인용한 廣評省文書인 帖이 실려 있는데 여기에 이두를 사용하였다.³⁷⁾

한편 8세기 초에는 압운의 방식이 시문 속에 나타나서, 구두의 기능을 수반하였다. 신라말에 이르러 경문왕은 郎慧스님과 『文心雕龍』을 강독하고 스스로 「眞鏡大師碑文」을 짓는 등 문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낭혜화상은 “어려서 유가의 책을 읽어서 남은 맛이 입술에 젖어 있었으므로 응답할 때 韻語를 많이 썼다”³⁸⁾고 한다. 이때에 이르러서는 韻語를 사용하는 것이 문화적 관습으로 정착되었다. 최치원이 신라에 돌아와 지은 이른바 사산비명은 李商隱의 「唐梓州慧義精舍南禪院四證堂碑銘」에 필적하며, 문체는 병려체이다. 남북국시대 통일신라말, 고려초에는 병려체가 우세하였다. 이를테면 신라말, 고려초의 崔彦擣(868~944)는 11편의 비문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法鏡大師碑」를 보면 병려체의 특색이 뚜렷하다.

35) 姜浩溥, 「喪禮備要口訣識」, 『贅言』권22, 연세대 소장 필사본 30卷(본집 16冊, 別集2冊, 共 18冊).

36) 필사본으로 현전하는 이삼환의 『百家衣(附 句讀指南·隨筆)』1책 19장(殘本)에 「句讀指南」이 들어 있다. 「百家衣」는 1811년 저술이지만 이 「句讀指南」은 어느 때 저술인지 명확하지 않다.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편, 『近畿南人實學淵源諸賢集』 六, 대동문화연구원, 2002. 심경호의 해제.

37) 許興植, 『韓國金石全文』(古代篇), 亞細亞文化社, 1984; 李智冠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 1』, 가산불교문화원, 1994; 南豐鉉, 「高麗初期의 貼文(慈寂禪師凌雲塔碑陰)과 吏讀」, 『國語國文學』 72-73면, 국어국문학, 1976.

38) 李佑成 校譯, 『新羅四山碑銘』, 亞細亞文化社, 1995; 李佑成, 『新羅四山碑銘 校譯』, 李佑成 著作集 7, 창비, 2010; 최영성, 『(譯註)崔致遠全集 1: 四山碑銘』, 亞細亞文化社, 1998.

고려시대에는 사대부들의 무덤 앞에 묘비를 세우지 않고 무덤 안에 묘지를 묻었다. 그런데 고려중엽에 이르러 비로소 묘지명은 작자 이름을 밝히고 銘의 형식을 더욱 갖가지로 실험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원나라 간섭기에는 원나라 법령이 繼受되면서 이문체가 수용되었을 것이다. 이때의 吏文은 원나라 법령집에서 사용된 문체로, 4언의 구절을 사용하고, 종결사를 사용하지 않으며 의미 전달만을 목표로 하는 문체로, 吏語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였다. 고려와 조선 초에는 중국의 吏文을 모방하여 중국과의 외교문서에 사용하였다. 『고려사절요』에 원나라와 주고받은 이문이 실려 있으며, 이문을 모은 『吏文』이라는 책도 나왔다. 『이문등록』은 승문원에서 중국 조정과 왕래한 吏文으로 적힌 문서를 모아 편찬한 등록으로, 5년마다 한 번씩 書寫하고 10년마다 한 번씩 인쇄하여 출간하였다.

(3) 直解

조선초에는 이두로 문헌을 ‘直解’하는 일이 있었다. 간행 문헌으로 『大明律直解』가 있다. 大明律, 直解大明律(조선중기), 大明律直解(일제시대), 小全大明律, 直解大明律, 吏道大明律으로 부르기도 한다.

명나라 법규는 律·誥·例·令 등의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그 가운데 律에 대해서는 朱元璋의 吳王 元年(1364)에 李善長 등에게 唐律을 참조하여 285條로 편찬하게 하여 그 해 12월에 반행하였다. 홍무 6년(1373)에는 형부상서 劉惟謙 등이 조칙을 받들어 『大明律』 30권 606조를 찬정하고 다음해(1374) 반행하고, 홍무 22년(1389)에는 翰林院과 刑部에 재차 更定을 하되, 六部官制에 따라 편목을 조정하게 하였다. 홍무 30년(1397)에는 『欽定律誥』 147조를 부기하여, 전체를 『大明律』이라고 하였으며, 그해 5월에 정식으로 반행하였다. 『대명률직해』는 홍무 22년 『대명률』을 이두로 번역한 것이다. 1394년 간행 『경국대전』에 수록된 「憲典總序」에서 정도전은, 『대명률』을 ‘방언’으로 번역하여 대중이 알기 쉽도록 하라는 왕명이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이 직해본은 1395년 2월 書籍院에서 白州知事 徐贊 제작의 목활자로 간행되었다. 현전본 권30 끝에 있는 金祗의 識語에 따르면, 平壤伯 趙浚의 명으로 檢校中樞院 高士爕과 김지가 전담하고, 鄭道傳·唐誠이 윤색하였다고 한다. 1415년(태종 15) 5월에 ‘大明分類律’을 간행하여 중앙과 외방 각관에 반행하였다. 1431년(세종 13) 6월에 趙瑞康과 權克和로 하여금 詳定所에서 ‘大明律’을 譯解하도록 하였다.

『대명률직해』는 1395년 原刊本은 전하지 않고 16세기 이후 중간본만 전한다.³⁹⁾ 『대명률

39) 조선총독부 중추원 조사과, 『교정대명률직해』, 조선총독부 중추원, 1936; 법제처, 『대명률직

직해』의 識語에서 김지는, 직해에 이두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두에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김지는 본문을 逐字直解한다고 하였다. 축자직해는 직역(literal translation / word-for-word translation)만이 아니라 의역(literary translation / free translation)을 포함한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다.⁴⁰⁾

● 妻妾毆夫(20:10b-11b)

[음문] 凡妻毆夫者 杖一百 夫願離者 聽

[직해] 凡 妻/亦 夫/乙 犯打/爲在乙良 杖一百/爲乎矣 本夫/亦 自願棄別/爲在乙良 許聽

[현대어역] 무릇 처가 남편을 구타한 경우에는 杖 100대를 치되 本 남편이 스스로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들어준다.

직해의 문장은 한문의 동-빈 구조를 우리말 어순에 맞추어 목적어-술어의 구조로 바꾸고 이두를 붙였을 뿐만 아니라, 毆→犯打, 聽→許聽과 같이 글자를 보속하고 대체하여 한문의 뜻을 밝혔다. 願離는 구조를 바꾸지 않고 ‘自願棄別’로 번역하였다.

(4) 이문체

조선시대에는 일반 공문서도 이러한 이문체를 본받아 4언 중심의 어구를 연결하면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법률 용어, 관용어를 다용하였다. 곧 『경국대전』 권3 「예전」은 告身式 등에 사용되는 순한문체의 書式을 吏文이라 하였고, 실제로 吏科와 承蔭出身 奉贈爵牒 등의 文牒에도 사용되었다. 세조 3년 이후로는 東西班 五品 이하의 告身에도 吏讀 대신 吏文을 썼다.

이문은 원나라 쿠빌라이 정권에 의해 조성된 문체이다. 쿠빌라이 정권은 문서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몽골어 직역체를 정형화하는 한편, 至元 3년 10월에 勅牒의 舊式을 고치고, 지원 5년에 中書省와 御史臺 등 관청 사이의 文書書式的 體例를 정돈하였으며, 지원 6년 2월에 파스파문자를 頒行하고, 지원 8년에 蒙古學校를 설립하였다. 지원 5년에 정한 文書書式은 『翰墨全書』를 비롯한 당시의 類書에 매뉴얼로 게재되었다.

한국은 고려 때 원나라의 문서 서식을 채용하여 조선 초까지 활용하였다. 그 문서 서식은 조선말까지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 이를테면 조선의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관작·자격·시

해』, 1964;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도서영인 16호 『대명률직해』, 보경문화사, 1986.

40) 安秉禧, 「大明律直解 吏讀의 研究」, 『奎章閣』 9, 서울대학교 규장각, 1985; 朴喜淑, 『大明律直解의 吏讀 研究』, 明知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4; 韓相仁, 『大明律直解 吏讀의 語學的 研究』, 忠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3; 박철주, 『대명률직해의 국어학적 연구』, 일지사, 2006.

호·토지·노비 등을 내려줄 때 발급하는 敎旨에는 ‘某爲某階某職者’라고 하여 어말에 ‘~者’를 사용한다. 이것은 몽고어 직역체에서 ‘~者’를 사용한 것에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인 듯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용문에 이두 문자를 두루 썼기 때문에, 심지어 임진왜란 때 黑田長政(구로다 나가마사)는 황해도 양반과 인민들에게 通諭하는 榜文에서도 이두를 섞었다. 李廷龜(1541~1600)은 아마도 우리나라 아전이 방문을 지었는지 모른다고 하였다. 곧, 이정암은 『行年日記』 가운데 임진년 6월 초4일의 기록에서 그 사실을 언급하였다. 이정암은 본래 이두가 섞여 있다는 방문을 자신의 일기에 게재하면서 이두를 제거하였다. 고문가인 金邁淳(1776~1840)은 공용문자를 모은 『臺山草藁』를 별도로 남겼다. 이것을 보면 고문의 대가라고 하여도 이두식 공용문자를 별도로 익혀서 실생활에서 두루 활용해야 하였음을 똑똑히 알 수가 있다.

4. 언해

15세기 중반에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한자음과 한문의 정음 번역이 활발하게 되었다. 1449년(세종 31)에는 왕명으로 『洪武正韻譯訓』이 이루어졌다. 譯訓이란 한자에 대해 우리말 발음을 표시하는 것을 뜻했다.⁴¹⁾ 한편 諺解란 말은 1510년대 문헌에 처음 나타나고 1588년의 『소학언해』에서 처음으로 서명에 등장했다. 일반적으로 15세기 이래 갑오경장까지의 한문 원전에 대한 국어 번역 전체를 언해라고 한다. 언해는 釋 혹은 翻譯이라고도 했다. 이때 釋은 한문의 훈독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의 언해는, 『警民編諺解』의 예에서 나타나듯, 이두로 구결만 단 것도 포함한다.

언해는 불경언해를 필두로 『續辟瘟方』과 같은 醫書의 언해,⁴²⁾ 『殺手譜』와 같은 병서의 언해⁴³⁾, 그리고 『續三綱行實圖』와 같은 교화서의 언해⁴⁴⁾는 물론 『無冤錄諺解』의 실용서 등의 언해⁴⁵⁾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41) 본래 16권 8책인데, 낙질 1·2권 1책, 현전 14권 7책이 고려대 도서관에 있다. 한글과 한자 큰 글자는 목활자를 사용하고 작은 글자는 갑인자로 간행되었다. 자모를 음각으로 보이고, 그 아래 양각으로 한글 역훈(譯訓)을 달았으며, 다시 속운(俗韻)을 넣고 필요에 따라 발음의 설명을 붙인 체제이다. 이 책은 그 서문만이 신숙주의 『보한재집(保閑齋集)』 권15와 『동문선』 등에 전하여 오다가, 이충녕(李崇寧), 「洪武正韻譯訓의 연구」(『진단학보』 20호, 1959)에 의하여 그 전래가 세상에 알려졌다.

42) 『중종실록』 중종 20년 을유(1525년) 1월23일 임오.

43) 『선조실록』 선조 28년 을미(1595년) 5월28일 경자.

44) 『광해군일기』 광해군 5년 계축(1613년) 12월12일 을미.

45) 『정조실록』 정조 20년 병진(1796년) 11월3일 갑진.

(1) 정음문헌

훈민정음 창제 이후 연산군 때에 이르는 50여 년간 간행된 정음 문헌은 40여 건이 전한다. 불서의 정음 문헌만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석보상절』(1447년), 『월인천강지곡』(1447년), 『舍利靈應記』(1449년), 『월인석보』(1459년), 『蒙山法語諺解』(?1459년), 활자본 『능엄경언해』(1461년), 활자본 『아미타경언해』(?1461년), 목판본 『능엄경언해』(1462년), 『법화경언해』(1463년), 『선종영가집언해』(1464년), 목판본 『아미타경언해』(1464년), 『금강경언해』(1464년), 『반야심경언해』(1464년), 『상원사어첩』 및 『중창권선문』(1464년), 『원각경언해』(1465년), 『원각경구결』(1465년), 『목우자수심결언해』(1467년), 『사범어언해』(?1467년), 한글판 『오대진언』(?1476년), 『수구영험』(1476년), 『금강경삼가해』(1482년), 『남명집언해』(1482년), 『불정심경언해』(1485년), 『오대진언』(1485년), 『영험략초』(1485년), 『육조법보단경언해』(1496년), 『진언권공』(1496년), 『삼단시식문언해』(1496년), 『개간 법화경언해』(1500년) 등

이 가운데 언해본 『오대진언』 중 『隨求即得陀羅尼』의 『隨求靈驗』(1476년간)과 『神仙太乙紫金丹』(1497년간) 등은 사간본이다.

임진왜란 이후 17세기 초에서 19세기 말까지 3세기 동안 한글은 더욱 널리 보급되었다. 이 때 이루어진 언해 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諺解胎産集要』, 『諺解痘瘡集要』

『東國新續三綱行實圖』

『家禮諺解』

『警民編諺解』

『火砲式諺解』, 『新傳煮取焰硝方諺解』

『馬經抄集諺解』

『御製內訓』(성종 6년 소혜왕후 편찬본을 새로 언해)

『女四書諺解』

『御製常訓諺解』, 『御製訓書諺解』,

『闡義昭鑑諺解』

『十九史略諺解』

『明義錄諺解』, 『續明義錄諺解』

『念佛普勸文』

『字恤典則』

『武藝圖譜通志諺解』

『增修無冤錄諺解』

『五倫行實圖』

『新刊增補三略直解』

『敬信錄諺解』, 『太上感應篇圖說諺解』, 『關聖帝君明聖經諺解』

(2) 사역원 교재의 언해본

또한 조선 왕조는 통역 및 번역에 관한 사무를 맡은 관청으로 사역원을 두었는데, 여기에는 한학(중국어학), 몽학(몽고어학), 여진학(여진어학), 왜학(일본어학)의 四學이 있었다. 여진어학은 17세기에 청학(=만주어학)으로 변경되었다. 이들 四學 관련 언해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중국어학습용 언해서 : 『老乞大諺解』, 『朴通事諺解』, 『譯語類解』, 『伍倫全備記諺解』, 『華音啓蒙諺解』

일본어학습용 언해서 : 『捷解新語』

청어(만주어)학습용 언해서 : 『淸語老乞大』, 『三譯總解』, 『小兒論』, 『八歲兒』

몽고어학습용 언해서 : 『捷解蒙語』, 『蒙語老乞大』

이밖에 사역원 四學 관련 어휘집으로 『同文類解』·『倭語類解』·『蒙語類解』·『方言類釋』·『漢淸文鑑』, 『華語類抄』 등이 나왔다.

(3) 훈요서와 도가 관련 서적

조선후기에 영조는 『御製常訓諺解』, 『御製訓書諺解』, 『御製警民音』, 『御製百行源』, 『御製

經世問答諺解』 등 훈민언해본을 제작했다.⁴⁶⁾ 또한 영조는 1755년(영조 31)에 闡義昭鑑纂修廳을 설치하여, 亂賊을 징계하고 倫綱을 바로잡아 왕세자를 세우는 義를 천명하기 위해 『闡義昭鑑』을 편찬하고, 그것을 언해했다. 정조는 즉위한 다음해 1777년(정조 원년)에 金致仁 등을 시켜 벽과 洪麟漢 등이 時派의 탄핵을 받아 제거된 일의 경위를 적은 『명의록』을 편찬하게 하고, 그것을 이듬해 언해해서 반포했다. 『천의소감』과 『명의록』은 일종의 군주를 위한 黨論書에 해당한다.

1852년(철종 3년)에 『太上感應篇圖說』을 한글로 번역한 『太上感應篇圖說諺解』가 나왔다.

『太上感應篇圖說』은 청나라 許纘曾⁴⁷⁾이 1655년(淸 順治 12년)에 청나라 世祖의 명을 받아 편집해서 반포한 『太上感應篇』에 주석을 하고 그림을 추가한 것으로, 본래 8책이다. 『태상감응편』은 『感應篇』이라고도 하는데, 그 작자에 대해서는 정론이 없다. 대개 북송 말에서 남송 초에 쓰여진 것으로 추측한다. 청나라 世祖의 「御製勸善要言序」에, “하늘이 인간의 행실을 살펴서 재앙과 상서를 내리니, 상서를 내리는 것은 착한 이를 도우려는 것이요, 부득이해서 재앙을 내리는 것도 또한 백성들을 경계를 보여서 허물을 고쳐 善에 돌아오게 만들려는 것이다.”라고 했다. 허찬증은 六經 子史에서 百家에 이르기까지 여러 서적들을 두루 취해서 勸善懲惡할 수 있는 내용을 가려 뽑아 1274자의 『태상감응편』을 엮었다. “禍福은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부르는 것이요, 善惡의 업보는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강령으로 내세우고, 20여개의 선행과 1백 여개의 악행을 실례로 들면서 “天仙이 되기를 구하는 자는 마땅히 1천3백 가지의 선행을 쌓아야하고 地仙을 구하는 이는 3백가지의 선행을 쌓아야 한다.”라고 했다. 전편에 걸쳐 天人感應과 因果應報 사상에 입각하여 勸善懲惡을 강조했고 유가의 윤리관과 불교의 신앙을 뒤섞었다. 맨 앞에 『태상감응편』 본문을 싣고, 다음의 「卷首」에는 『태상감응편』을 간행하여 공덕을 받은 실례 10가지를 그림과 함께 기록했다. 그리고는 본문을 한 구절씩 나누어 놓고, 각각의 구절마다 「箋注」의 항목을 두었으며 그 다음에 「引經」의 항목에서 유가의 경전과 선현들의 말을 인용했다. 이어서 『태상감응편』의 해당 구절의 내용을 지켜 영험을 본 이야기들을 그림과 함께 병기하여 붙여두었다. 제 1책에서부터 제8책에 이르기까지 孝 悌 忠 信 禮 義 廉 恥의 8가지 유가덕목으로 각권의 주제로 삼아서, 각각 주석을 달고 유가 경전을 인용하고 영험을 본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려

46) 배영환, 「장서각 소장 영조 어제 언해서류(1) - 『어제자성편(언해)』와 『어제속자성편(언해)』를 중심으로」, 배영환, 「신성철장서각 소장 영조 어제 언해서류(2) - 『어제경세문답(언해)』, 『어제경세문답속록(언해)』, 『어제조훈(언해)』, 『어제(언해)』를 중심으로」, 이광호 외, 『장서각 소장 한글필사자료 연구』, 태학사, 2007.

47) 許纘曾은 江南 華亭 사람으로 자는 孝修이고 호는 鶴沙이다. 1649년(淸 順治 6년)에 進士가 되었고 雲南 按察使를 지냈다. 詩를 잘했다고 하며, 『國朝詩人徵略二編』 권1에 그에 관한 기록이 실려있다. 저서로 『滇行紀程』 『東還紀程』 『寶綸堂集』이 있다.

서 편집해놓았다. 元나라 陳堅이 1324년에 편찬한 것은 유교경전에서 인용한 주석과 함께 500여장의 圖說을 삽입해놓았고, 문장에는 구두점을 찍어 두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848년(헌종 14년) 崔瑄煥이 편집하여 간행한 것이 있었다.

(4) 고전시문집의 언해

조선 왕조는 한문 고전시문집도 언해의 대상으로 삼았다. 성종은 재위 12년인 1481년 가을에 두시집의 언해령을 내렸다. 그 첫 원고가 그해 겨울에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인쇄한 것이 『分類杜工部詩諺解』(약칭 『두시언해』)이다. 두시집 언해의 경위는 『분류두공부시언해』 중각본(인조 10년 = 1632년 간행)에 실려 있는 曹偉의 초간본 서문⁴⁸⁾과, 초간본에 실려 있었을 金訥의 「翻譯杜詩序」⁴⁹⁾에 의하여 추정할 수 있다. 조위의 초간본 『두시언해』 서문은 세종 때에 편찬된 『찬주분류두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김혼의 서문은 『두시언해』가 ‘구본’에 따라 편찬되었음을 알려 준다. 그 ‘구본’이란 세종 때에 이루어진 『찬주분류두시』를 가리킨다.⁵⁰⁾ 『두시언해』의 주 편찬자는 柳允謙으로, 그는 승려 의침에게서 두시를 배운 柳方善의 아들이다. 성종은 연소 문신들의 시 수준을 높여 중국 사신들과 창화할 때 ‘華國’하도록 하고자 해서, 유윤겸은 성종의 명으로 한 해전부터 연소 문신들을 대상으로 두시를 講하고 있었다.⁵¹⁾

『두시언해』는 『찬주분류두시』를 저본으로 했으므로, 두시의 분류와 배열은 『찬주분류두시』, 그리고 『찬주분류두시』의 저본인 徐宅(자 居仁) 편차본 계열본의 그것과 일치한다. 수록된 두시는 1,451수로, 他人作 16수를 합하여 총계 1,467수이다. 권수는 25권이다.

『두시언해』는 『찬주분류두시』의 성과를 참고로 했으나, 주석은 어휘와 자구 풀이에 중점

48) 成化辛丑, 上命弘文館典翰臣柳允謙等, 若曰: “杜詩諸家之注詳矣. 然會箋繁而失之謬, 須溪簡而失之略. 衆說紛紜, 互相牴牾, 不可不研覈而一. 爾其纂之.” 於是廣撫諸註, 芟繁釐正. 地理人物字義之難解者, 逐節略疏, 以便考閱. 又以諺語, 譯其意旨. 向之所謂難澁者, 一覽瞭然. 書成, 繕寫以進. 命臣序.

49) 『顏樂堂集』, 영인표점 한국문집총간 15(민족문화추진회, 1988). 서강대 중앙도서관본과 충남대 중앙도서관본, 국립중앙도서관본을 저본으로 영인되어 있다.

50) 초간본 『두시언해』의 현전본 잔본을 보면 미교정본과 교정본의 두 종류가 있다고 한다. 교정본으로는 규장각 가람문고의 영본(零本) 1책(권 6·7)과 국립중앙박물관의 영본 1책(권 17-19)이 알려져 있다. 미교정본과 교정본의 인출 시기는 둘 다 미상이다. 안병희, 「杜詩諺解의 書誌的 考察」 참고.

51) 『성종실록』 성종 11년(1480) 10월 임신. “御晝講. 講訖, 侍讀官李昌臣啓曰: 詞章雖若不關於治國, 中朝使臣如張寧·祈順輩出來, 則必與唱和, 詞章不可視爲餘事而不習之也. 杜詩, 詩家之祖. 前司成柳允謙, 傳受其父方善, 頗精熟. 請令年少文臣受業. 上曰: 可.”

을 두었다. 초간본 권12의 「秋雨歎」 제3수를 예로 들어본다(편의상 방점은 생략한다).⁵²⁾

長安布衣誰比數 反鎖衡門守環堵 [衡門은 橫木爲門也 | 라環堵는 環은 周回也 | 오方丈
이爲堵 | 니四方이各一堵也 | 라○長安앳뵈웃니브니를 뉘比數호리오도로나모빋기뵈온門
을닫고횃도로손다물守호앳노래]

老夫不出長蓬蒿 稚子無憂走風雨 [늘근아비는 나든 니디아니호야서다뵈과뵈괘기뵈겨
늘져믄아드른시름업서브 뵈뵈비에든 니뵈대]

雨聲颼颼催早寒 胡鴈翅濕高飛難 [颼颼는 風聲이라○ 빗소리颼颼호야이른치우믈뵈아
느니되그러기늘개져저노피느로미어렵도대]

秋來未曾見白日 泥汚后土何時乾 [그술오매일죽불근나를보디뵈호리로소니즌홀기后
土를더러이느니어느뵈사뵈를고]

위의 예시를 통하여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 (ㄱ) 『두시언해』는 詩題에 대한 주를 일체 달지 않았으므로, 시의 창작 배경이나 시기에 관
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 (ㄴ) 평점을 달지 않았다.
- (ㄷ) 圈內的 자구 해석은 평이한 訓釋을 위주로 했다.
- (ㄹ) 圈外的 언해는 시구의 뜻을 문장어로 풀이하는 데 그치고, 그 함의를 천착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稚子無憂走風雨”를 두고 안록산의 작태를 비유했다고 풀이하는 것은, 錢謙
益에 따르면 가장 잘못된 천착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두시언해』의 언해만으로는 서
택본과 『찬주분류두시』의 箋註에 수록된 그러한 천착의 설을 그대로 수용했는지 여부
를 알 수가 없다.

『두시언해』는 『찬주분류두시』를 저본으로 하면서도 劉辰翁 평점을 삭제했다. 이것은 갑진
자본 『찬주분류두시』가 평점을 뺀 것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 또 『두시언해』는 난해한 곳
을 간단히 설명하고 詩意를 해석하여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되, 警拔한 어구를 평점으로 제시
하지는 않았다.

『두시언해』는 두시 참고서로서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魚叔權은 두시 「送路六侍御入朝」(『찬주분류두시』권12 ; 『두시언해』권23)의 頸聯을 잘못 언해한 사실을 지적했다.⁵³⁾ 『두시언

52) 孤本 初刊本 『杜詩諺解』권12 張15-16.

해』초간본의 이해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⁵⁴⁾

童稚情親四十年	아희뵈뵈 親호미 마흔 히니
中間消息兩茫然	그 스시엿 消息은 들히다 아스라흐더라
更爲後會知何地	다시 後에 會集호몬 아노라 어느썩코
忽漫相逢是別筵	믄드시 서르 맞보니 이 여회는 듯기로다
不分桃花紅勝錦	복썩고직 불고미 錦이라와 더오물 내 分엿것 삼디 못흐고
生憎柳絮白於綿	버듧개야지소오미라와 히요물 ㅁ장 ㅁ노라
劒南春色還無賴	劒南엿 ㄸ비치 도르혀 依賴홀줄 업도소니
觸忤愁人到酒邊	시름흐는 사르물 다덜어거슬써 술ㅁ식 오놏다

『두시언해』는 ‘不分’을 ‘내 分의 것 삼지 못하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그런데 『우주두울』은 “所以妬桃憎柳者，爲其春色無賴之甚，偶近別筵見之而觸忤我之愁思也”라고 하여, ‘不分’을 ‘妬’로 해석했다. 『두시언해』의 언해자들이 이미 조선에서도 복간되어 유행했던 『우주두울』을 검색하지 않은 것은 일견 기이하다. 뒷날 李植은 『杜詩批解』에서 “不分猶不期也”라고 했으니, 역시 ‘不分’이 口語임을 몰랐고, 『우주두울』도 검색하지 않은 것이다. 일례에 불과하지만, 『두시언해』의 언해는 이렇게 잘못이 없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의 영조 연간에는 『고문진보』 등이 언해되었다. 고려대학 육당문고본과 장서각본을 합하여 20권 14책이 있는데, 전집의 1,2권이 빠진 상7태이며, 부분적으로는 번역이 없이 원문만 있는 것도 있다. 장서각본 『고문진보언해』 落帙本 8권 8책은 『詳說古文眞寶大全』을 저본으로 하여 발췌·번역한 것을 한글 정자체로 필사한 책이다.⁵⁵⁾ 장서각본 8권 8책은 상단

53) 魚叔權, 『稗官雜記』 권1. “不分二字, 中國方言也. 分與憤同, 不分卽怒也. 猶言未噴其怒而含蓄其怒也. 老杜詩‘不分桃花紅勝錦·生憎柳絮白於綿,’生憎卽憎也. 亦方言也. 不分旣方言, 故以生憎對之. 東坡詩‘不分東君專節物,’亦此意也. 成廟朝諺解杜詩者, 誤以不分之分爲分內之分, 遂使東人承誤而用之, 竟不知不分之義.”

54) 通文館 1954年 影印 『杜詩諺解』卷23, 張23.

55) 표제는 ‘古文眞寶’이고 內題는 ‘詳說古文眞寶大全’이라 한자로 적은 뒤 그 옆에 한글발음을 써 놓았다. 완질이 몇 권 몇 책이었는지 알 수 없다. 전집 가운데 권1-5·7과 후집 가운데 권6·7을 합쳐 모두 8권 8책이 장서각에 남아 있다. 이 책에는 장서각 소장 한글본 『무목왕정충록』과 『손방연의』에 찍힌 영빈이씨(?~1764)의 藏書印 ‘暎嬪房’이 똑같이 찍혀있다. 또 ‘春宮’이란 方印과 ‘達’이란 인장이 먹으로 찍혀 있다. ‘達’자 인장은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내린 御押이다. 백두현, 「사도세자의 학습서로 사용된 『고문진보언해』 연구」, 이광호 외, 『장서각 소장 한글필사자료 연구』, 태학사, 2007. 또한 『고문진보언해』, 중한번역문헌연구소, 2002.8 참고.

에 원문을 한글과 한자로 거듭 싣고 하단에 意譯體의 번역을 실었다. 각 권이 시작되는 맨 앞에 목차가 한문으로 적혀 있다. 『고문진보』는 100편본과 黃堅의 상설본이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상설본이 유행했다. 상설본은 前集 10권, 後集 10권으로 되어 있으며, 전집에는 勸學文·五言古風短篇·七言短篇·七言長篇·長短句·歌·行·吟·引·曲 등 10體 217편의 시, 후집에는 辭·賦·說·解·序·記·箴·銘·文·頌·傳·碑·辯·表·原·論·書 등 17체 67편의 문장을 수록했다. 고려대본 『고문진보언해』는 이 가운데 시 219편과 문 67편을 수록했다.

장서각에는 金錫胄 편 『古文百選』을 언해한 필사본도 소장되어 있다.⁵⁶⁾ 김석주는 명의 謝陞이 陳壽의 『三國志』를 한글한 『季漢書』를 영남에서 간행할 정도로 새로운 문학사조에 민감했는데,⁵⁷⁾ 진한 이하 남송까지의 산문을 선한 『古文百選』을 스스로 엮었다. 이 책은 권수제가 ‘古文上’ ‘古文中’ ‘古文下’로 되어 있어 ‘古文上下篇’이라고도 불리고, 판심제가 ‘古文選’으로 되어 있어서 ‘고문선’으로도 불렸다.⁵⁸⁾ 김석주는 「古文百選序」에서, 『고문진보』⁵⁹⁾는 “雜採賦辭而章程未整”하다는 결함이 있고 『문장계범』은 “偏取唐宋而詞氣漸俚”하다는 결함이 있어서 새로 고금 문장을 抄選하여 복습에 편하게 한다고 밝혔다.⁶⁰⁾ 각 편마다 중국인의 평어와 편찬자의 평어를 부기하여 둔 것이 특징이다. 훗날 李明夏는 『古文百選』 속편을 엮고 集解를 붙였다.

(4) 경서의 언해

정조 연간에 작성된 徐有渠의 『鏤板考』는 『周易諺解』·『書傳諺解』·『詩傳諺解』·『大學諺解』·『論語諺解』·『孟子諺解』·『中庸諺解』등 사서오경의 언해본을 著錄하고, 다음과 같은 해제를 붙였다.

선조조에 儒臣들이 敎命을 받들어 편찬했다. 처음에 世祖가 우리 동국의 학자들이

56) 정재영·박재연, 「『古文百選(언해)』에 대한 연구」, 이광호 외, 『장서각 소장 한글필사자료 연구』, 태학사, 2007.

57) 洪奭周, 『淵泉全書』(昨晨社 影印本) 『鶴岡散筆』권5 참조.

58) 한구자로 간행된 『고문상하편』 2책이 현존하고(국립중앙도서관 일산문고), 1708년(숙종 34)에도 인서체 활자로 간행되었으며, 『누판고』에는 北漢太古寺藏版本 『고문백선』 3권이 저록되어 있다. 洪命憲 校訂, 『鏤板考』권6 集部 上. 일본 大阪府立圖書館에는 외표지제에 ‘古文百選’이라 쓰인 목판본이 소장되어 있다.

59) 元의 陳櫟이 편한 것인데, 김석주는 西山 眞德秀의 편집이라고 오기했다. 진덕수가 편집한 고문선집은 『文章正宗』이다.

60) 『息庵遺稿』(日本 大阪府立圖書館 소장) 권8 「古文百選序」.

句讀가 분명하지 않음을 보고 사서오경을 鄭麟趾·申叔舟·崔恒 등에게 나누어 주고, 鄭夢周·權近이 찬했던 口訣에 의하여 그것을 정정하게 했다. 이에 이르러 局을 설치하고 교정시키고 方音으로 經文을 譯하고는, 그 旨義까지 釋했다. 纂修한 諸臣 가운데 이름을 고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柳希春·申欽·李廷龜·沈岱뿐이며, 나머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局을 설치한 干支는 諸臣의 私乘에 혹은 계유년이라고도 하고 혹은 신축년이라고도 하므로, 처음 시작하여 마칠 때까지 상당히 더디고 오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인조 초에 처음으로 이것을 諸道에 반포하여, 貢闈에서 선비를 선발할 때 일체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 명나라 永樂 때의 大全과 표리를 이루었다.⁶¹⁾

이 해제에 따르면 정몽주와 권근에 의한 경전 현토를 토대로 세조 연간에 이르러 본격적인 현토 작업이 있었고, 선조 연간에는 언해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선조 연간의 언해본이 인조 때 諸道에 반포되어 과거용의 텍스트로 된 사실과, 그 언해본이 영락 연간에 편찬된 『四書五經大全』과 표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선조는 1585년에 교정청을 신설하고, 『小學諺解』(1587년), 『孝經諺解』(1589년), 『四書諺解』(1590년), 『周易諺解』(1606년), 『書經諺解』(1613년), 『詩經諺解』(1613년) 등을 차례로 간행했다. 이 교정청의 언해본은 이후 개인이나 지방의 관청에서도 중간되어 널리 보급된 바도 있다.

선조 연간에는 경서에 현토·언해하는 작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은 당초 유희춘에 의하여 추진되다가, 뒤에 교정청이 설치되어 언해본 편찬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되었다. 교정청 언해본은 1585년(선조 18)에 교정청이 설치되고 경서의 현토언해가 시작되었으나, 작업은 순탄하지 않았다. 『미암일기』(권14)에 수록된 1574년(계유, 선조 7) 10월 10일의 기사는 경서의 구결 제정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

상께서 말씀했다. “무릇 문자 吐釋에 대하여, 혹자는 小事이므로 꼭 유념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 하지만 성현(朱熹를 가리킴)도 말씀했듯이, 문의 의미〔文義〕를 파악하지 못하고서 그 精微한 뜻에 통하는 자는 없는 법이다. 지금 四書經書의 구결과 언석은 그대가 정하지 않은 것이 없다(『미암일기』에는 ‘지금 四書經書의 구결과 언석이 분

61) 徐有榘 著, 洪命憲 校訂, 『鏤板考』(大同出版社, 1941), 권1 御定 ‘周易諺解九卷·書傳諺解五卷·詩傳諺解二十卷·大學諺解一卷·論語諺解四卷·孟子諺解十四卷·中庸諺解一卷’. “宣祖朝儒臣等奉教撰. 始世祖以我東學者, 口讀不明, 分授四書五經于鄭麟趾·申叔舟·崔恒等, 因鄭夢周·權近所撰口訣而訂定之. 至是設局校正, 以方音譯經文, 并釋其旨義. 纂修諸臣名氏之可攷者, 惟柳希春·申欽·李廷龜·沈岱, 而餘不可詳. 其設局干支, 則諸臣私乘, 或稱癸酉, 或稱辛丑, 可推其起訖之遲遠也. 仁祖初, 始頒之諸道, 貢闈取士, 一切準是, 與永樂大全相表裏.”

분하여 확정되지 않았다'로 되어 있다). 그대의 학문이 정밀하고 해박함은 세상에 드문 바이다. 사서오경의 口訣과 釋을 그대가 詳定하도록 하라. 또한 그것을 위해 局을 설치하도록 하라. 만일 經學을 강론할 인원을 취하고자 한다면, 일곱 서적이네 『미암일기』에는 ‘有七’의 구가 없대, 그대가 전적으로 선발하도록 하라.” 臣이 대답했다. “이 일은 반드시 局을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精明한 사람과 함께 두루 의논하여 정하면 됩니다. 단 臣은 방금 『朱子大全』을 교감하고 있으므로 다른 것에 힘을 겨룰이 없습니다. 저는 몹시 孱弱한데다가 衰老까지 겹쳤습니다. 명년에 『주자대전』을 인출하는 일을 마치고서 가을에 田里에 돌아가 구결과 언석을 제정하는 일을 했으면 합니다.” 상께서 말씀하셨다. “아아! 그것은 불가하다!”

유희춘은 사서오경의 구결언석 작업을 연기하고자 했으나, 선조는 즉각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누판고』가 언해본 편찬의 設局이 계유년에 시작되었다고 적은 것은 그 때문이다. 같은 해(1574년) 10월 19일(경신)에는 유희춘이 이미 언해 작업에 착수했다(『미암일기』와 『실록』의 해당일자 기록). 이때 盧守愼은 구결언석의 상정에 반대하였다. 세종 연간에 맹사성이, 구결이 도리어 經義 연구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 『예기』구결의 제정을 반대했던 것과 같은 논리였을 것이다.

유희춘은 이황의 설을 참고로 하면서 구결언석을 상정하기 시작했다. 그해 10월 10일(경신)의 『경연일기』기록에 의하면, 유희춘은 이황 교정의 『朱子大全』·『語類』와 四書五經口訣諺解說을 참고로 하겠다고 하여 허가를 받았다. 10월 25일(병인)에는, 이황의 설을 근간으로 삼아 제설을 절충하고 李珥의 『大學吐釋』을 참고하며 或說을 부기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 무렵 이황에게만 경서의 口訣諺釋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李珥에게도 『大學吐釋』이 있어서, 그해 11월 8일, 유희춘은 坡平에서 기거하던 成渾에게 청하여 이이의 『대학토석』을 전해 받았다. 또 유희춘은 朴希立에게 朴의 선친 世茂가 제정한 경서토석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다. 또한 유희춘 자신도 이미 사서구결을 제정한 일이 있다.

그런데 유희춘은 오정보다도 사서의 구결·언석을 우선 정하려 했다. 1574년(선조 7) 10월 20일(신유)의 경연 뒤에 유희춘은 『춘추』는 글의 뜻이 한결같아 토석에 별 문제 없고 다만 曲折하여 구결하는 것이 십여 곳 있을 따름이므로 『춘추』는 굳이 현토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또 앞서 언급했듯이 『주역』은 강녕전구결이 『程傳』에 의거했으므로 부득이 주희의 『본의』를 大文으로 삼아 개정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선조는 “『춘추』를 현토하지 않는다면 오경의 토석을 전부 갖추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여 사서오경 일체를 현토하고자 하는 뜻을 내비쳤다.

유희춘은 1576년(선조 9) 4월 4일(정묘)에 경서의 토석 작업을李珣에게 맡길 것을 허락받았으며(『실록』기록), 다음해 5월에 노병으로 졸하고 만다. 이이는 유희춘의 뒤를 이어 경서 토석 작업을 진행시켜서 이듬해(1577년)에는 四書의 언해를 마쳤다. 단 그 원고는 繕寫投進되지 않았다. 뒤에 이이의『四書栗谷先生諺解』가 1809년(순조 9)에 이르러 洪啓禧에 의하여 운각인서체 활자로 간행된다. 이이는 1584년(선조 17)에 몰하기까지 동서 분당의 당쟁에 연루되어 경서언해본을 완성할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뒤 1585년(선조 18) 정월 초하루(계유)에 鄭述·崔永慶·洪晩·韓百謙·鄭介淸이 校正郎에 임명되어, 경서의 구결언석을 새로 시작했다(『선조수정실록』기록). 이황의 제자로 처사적 삶을 살았던 趙穆도 공조정랑의 직함으로 불려와 동 작업에 참여했다. 그 결과 다음해(1586년) 2월까지『소학』과 사서의 언석이 거의 완료되어 繕寫와 讎校의 일만 남은 상태였다.⁶²⁾ 경진자본『小學諺解』에 실려 있는 李山海의 발문에 의하면『소학』은 1586년 여름에 繕寫·投進되어 간행되었다. 四書의 언해본은 선조 23년에 陶山書院에 내사한 경진자본이 傳存하여, 적어도 1590년 무렵에는 경진자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경 가운데『예기』와『춘추』는 諺釋을 시행하지 않았다.『시』·『서』·『역』의 언석본 편찬은 1601년(선조 34)에 재개되었다. 즉 1601년 10월 19일(계미)에 吳億齡은,『시』와『서』의 언해본이 전쟁 이전에 간행되었지만 入啓되지 못했으므로 그 간본을 외방에서 구할 것을 청했다.⁶³⁾ 단,『역』의 언석본은 1594년(선조 27) 10월 24일(무진)에 入內令이 있는 것으로 보아(『실록』참조), 임란 이전에 일단 成書된 것이 있었는지 모른다.

『주역』의 경우는 1601년에 진강이 시작되었고 그 해에 전담국을 설치하여 언해본을 편찬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그로써 이듬해 1602년(선조 35)에 이른바 壬寅本『周易諺解』가 이루어졌다.⁶⁴⁾『주역』언해본 편찬의 首班은 尹根壽였는데, 구결 개정의 정도를 둘러싸고 이견이 많았다. 특히 강녕전구결이『程傳』에 의거한 것을 개정하는 문제로 논란이 많았다. 결국 임인본은 현토에서『정전』과『본의』를 절충하는 방안을 따랐다. 한때 찬집청의 당상관으로 있었던 崔崧은 사임하고 杆城의 외직을 얻어 나가『본의』만을 따라『周易本義口訣』을 독자적으로 편찬하여 간행, 투진하게 된다. 임인본이 인쇄된 이듬해 1603년(선조 36) 정월 21일

62) 『선조실록』권20, 19년 2월(不書日). “工曹正郎趙穆, 陳疏乞退. 其疏略曰……今小學四書讎譯校正廳中, 略已畢功. 所未訖者, 只繕寫讎校一事而已. 如臣有無, 本不關輕重. 況於功役已畢之後乎?”

63) 吳億齡曰, “詩書, 今將爲諺解矣. 而但聞亂前亦曾爲校正及印, 而特未及入啓, 遭變, 故其冊或在於外方云. 若然則前所刊者, 尙存. 不必更爲讎譯. 下書外方求之, 或有可出之路矣.”(『선조실록』권142, 34년 10월 19일)

64) 『누관고』가 신축년에 언해본편찬국이 설치되었다고 한 것은 이『주역』구결언해를 위한 設局 사실을 두고 한 말이다.

무인(『실록』)에는 校正賞格에 관한 선조의 備忘記가 내렸다.

선조 연간의 교정청 언해본은 『소학』·사서·삼경에 한정했는데, 뒤에 『孝經』의 언해본이 더했다. 그 체제는 경서의 본문을 大文으로 하고, 현토한 뒤에 그것을 언해하는 방식이다. 유희춘은 朱熹 註까지 언해하는 계획도 세웠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언해본은 당시 통용되던 『四書三經大全』의 학습을 보완하는 기능을 했지, 경전의 새로운 주석을 시도한 것이 아니다. 이 언해본이 인조 이후에 幼學과 生進出身者의 講經基本書로 공인되어, 諸家の 訓解가 폐기되었다.

『주역언해』는 임인본이 초간본이지만, 『시경언해』와 『서경언해』의 경우에는 초간 관련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 『시경언해』는 1613년(계축, 광해군 5)에 안평대군자체 훈련도감자로 간행된 목활자본이 초간본이 아닌가 한다.

교정청본 『사서언해』는 주희의 四書章句集註를 충실하게 따랐다. 『대학』의 「보망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사서의 장구를 주희의 설에 따라 분장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대학언해』를 보면 『대학장구』의 주석을 충실하게 반영한 예들을 볼 수 있다. 『중용언해』에서도 『중용장구』를 충실하게 따라서 한문 원문은 있으되 구결도 없고 한자 독음도 없으며 언해도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17세기 초부터 사서삼경의 언해본은 감영이나 사원에서 널리 刻板되어 인출되었다. 1684년(숙종 10)에는 성균관에서 『심경』·『근사록』과 함께 『四書三經大全諺解』를 간행했고,⁶⁵⁾ 그 뒤 戊子新刊嶺營藏板本, 壬戌季春嶺營重刊本, 庚辰新刊內閣藏板本이 나왔다. 서유구의 『누관고』는 언해본경서의 해제 뒤에 北漢山太古寺藏板本·嶺南觀察營藏板本·寧邊府藏板本の 書冊印紙容入數를 기록해 두었다. 또한 1870년에는 전주의 河慶龍 판각본이 나왔다.

하지만 조선후기의 학자들은 교정청 언해본의 오류를 상당히 많이 지적했다. 이익은 『대학장구』 傳 제9장 제9절의 ‘其爲父子兄弟足法而后’의 諺解에 ‘그 부자와 형제 되온 이 足히 法흔 후에’라고 한 것을 비판하고 ‘아버가 된 경우, 자식이 된 경우, 형이 된 경우, 동생이 된 경우에 각각 족히 본보기가 된 뒤에’라는 뜻으로 해석했다. 이익은 언해의 오류가 대전본 세주의 ‘問 父子兄弟足法而後民法之 然堯舜不能化其子……’라고 한 혹자의 질문에서 연유했다고 보고, ‘父子兄弟足法’에 대해 ‘부자·형제가 족히 본받는다’고 하는 말이 이치상 타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⁶⁶⁾

65) 『숙종실록』 권15상, 숙종 10년 5월 정축, 成均館啓 참조.

66) 崔錫起, 「星湖 李瀾의 『大學』 解釋과 그 意味」에 의하면 지금까지 『대학질서』는 세 종류의 필사본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① 규장각 소장본「古1331-5」(『星湖全書』, 여강출판사, 1984) ②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한貴古朝01-4」 ③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古1250-27-4」(태동고전연구

또한 조선후기에는 율곡 이이의 『사서언해』가 특히 노론 학맥에서는 더욱 권위를 지녔다. 이이의 언해는 1576년 전후에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1749년에 『栗谷先生四書諺解』로 간행되었다. 이 책의 간행 경위는 권말에 실린 洪啓禧(1703-1771)의 발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발문에 따르면 經書諺解의 異同이 매우 심하여 선조가 1576년(선조 9)에 이이에게 경서언해를 詳定할 것을 명했는데, 이미 상정해 놓았던 『대학』을 비롯하여 『중용』·『논어』·『맹자』의 언해는 이루었으나 五經의 언해를 이루지 못하여 進呈하지 못했다.⁶⁷⁾ 이리하여 이이의 사서언해는 간행되지 못한 채 한 두 謄本만 그의 후손과 문하생의 집안에 전해져 왔는데,⁶⁸⁾ 영조 대에 이르러 陶庵 李締가 이이의 후손 李鎭五를 시켜 등본을 관본의 체제로 淨寫하게 했다. 이진오는 1748년(영조 24) 홍계희를 만나 간행을 의논하여, 홍계희가 芸閣(校書館)에서 활자를 얻어 그 다음해에 이 책을 간행했다.⁶⁹⁾ 따라서 『율곡선생사서언해』의 한글 표기는 후대에 고쳐진 부분도 있다.

근세의 田愚는 1907년에 『중용언해』의 교정청본과 율곡본을 취하여 대조하면서 언해의 방식에 대해 논평하고, 「經書諺解口訣源委」라는 글을 작성했다.

중국인은 글을 읽을 때 단 句讀을 나눌 뿐이지, 吐釋이란 것이 없어도 뜻이 저절로 뚜렷해지고 명백해지므로, 말과 글이 일치하여 글짓기가 쉽다. 우리 동방은 句에는 口訣이 있고 字에는 俚釋이 있어서, 글에 임하여 뜻을 구하기에는 마땅하며 붓을 잡아 말을 기록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듯하지만 도리어 煩瑣함에 해를 입어 戛戛함을 초래한다. 애석하도다! 세종 때 鄉言을 금하고 漢語를 익히라고 하신 敎命이 세상에 행하지 않게 되었다. 經書諺解에 대해서 나는 전하는 말에 따라 그것이 퇴옹(이황)께서 정하신 것이라 믿어왔는데, 뒤에 다시 고찰해보니 아주 그렇지 않았다, 그러다가 『梅山集說』을 보니, 宣廟가 白沙(李恒福) 등 여러분께 명하여 제가의 구결을 모아서 경서언해를 이루게 했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宋子大全』에서 언해의 잘못된 곳이 많다고 탄식한 말을 보았고, 『巍巖集』에 「釐正孟子諺解」가 있었다. 또 마지막으로 栗翁(李珣)이 정한 『四書諺解』에 『大學』「補亡章」과 『孟子』「萬章」 이하가 빠져 있는데 朴玄石이 보완을 하였더니 沙溪(金長生)과 尤庵(宋時烈) 두 분이 매번 이것을 옳다고 여겼다고

소 번역 저본). 세 종류의 필사본 모두 傳 제4장[聽訟章]을 해석한 것이 없다.

67) 萬曆丙子, 宣廟因眉岩柳公希春書, 命先生詳定四言五經諺解. 先是先生有所定『大學吐釋』, 及承命中庸·語·孟以次續成, 而未及於經, 不果進御云云.”

68) 惟一二謄本在先生後孫及門生家, 中庸則手筆猶存. 今攷諸編凡例, 不無抵牾, 或有釋而無吐. 恐當時有未及整頓而然也. 然一吐一釋之間, 旨義精確, 其於開發後學, 類非官本之所可及.

69) 1973년 성균관대학교, 1984년 홍문각에서 각각 영인한 바 있다.

들었지만, 때때로 한 두 가지 따질 만한 곳이 있었다. 금년에 『중용』을 읽다가 두 해석을 합하여 상호 참조하며 자세히 살피면서, 믿기 어려운 부분은 내버려두고 의심 없는 부분을 취하매 역시 자못 맛이 있었다. 이에 그것을 초록하기를 위와 같이 하고, 간간히 나의 견해로 참망되게 개정을 가하되 약간 조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지는 않고 삼가 동시대의 군자들에게 질정을 하여 정정해주길 청하는 바이다. 그리고 『대학』·『논어』·『맹자』에 대해서도 두 언해본을 취하여 단점은 버리고 장점을 모아서 후진들에게 남겨주었으면 한다.⁷⁰⁾

전우는 『의암집』에 「釐正孟子諺解」가 있다고 했으나, 현행의 『의암유고』에는 이 글이 실려 있지 않다. 전우는 「經書諺解口訣源委附」를 덧붙여서, 조선시대의 언해구결 작업의 역사를 개관했다.

한편 申湜(1551~1623)은 『家禮』를 언해했다. 1책의 落秩이 규장각에 있다.⁷¹⁾ 申得淵이 守江原道觀察使로 있던 1632년(인조 10)에 原城에서 開刊했다. 凡例는 다음과 같다.

- 一. 大字正文, 則書於極行, 而并配諺字, 釋解, 則圈而書之.
- 一. 小子註, 則低行書之, 而只用諺釋, 以省繁文.
- 一. 年號·先儒氏·歷代人物·書籍篇名·物名及註語之必待別釋處, 則標題於紙頭.
- 一. 若要字字入釋, 則不成說話, 辭旨反晦, 故但取語意之通暢.
- 一. 文字語, 則亦多直以文字書之.
- 一. 告辭·祝文書式, 則并只配諺字, 而不加釋解.

이 범례를 보면 『가례언해』는 大字 正文을 먼저 쓰고 그 밑에 언문으로 음을 썼고 언해문은 따로 둔다고 했다. 小字注는 한 자를 낮추어 쓰고, 언해문에는 본문은 다시 쓰지 않고 언

70) 田愚, 「題中庸諺解後, 附經書諺解口訣源委」(丁未), 『艮齋集』II 권14, 한국문집총간 333. “中國人讀書, 但分句讀而已, 無所謂吐釋, 而義自曉白, 故言文一致, 而屬辭易. 我東則句有口訣, 字有俚釋, 宜其臨文求義, 執筆記言, 若不甚難, 反被煩瑣, 而致其戛戛也. 惜乎! 世宗朝禁鄉言習漢語之教, 不行於世也. 經書諺解, 愚因相沿之說, 認爲退翁所定, 後復考之, 殊不然. 及見梅山集說, 宣廟命白沙諸公, 聚諸家口訣, 爲經書諺解. 既而見宋子大全歎諺解誤處甚多, 『巍巖集』有「釐正孟子諺解」, 最後得栗翁所定『四書諺解』, 『大學』「補亡章」, 『孟子』「萬章」以下缺, 朴玄石就爲補之, 而聞沙尤兩門, 每以是爲善. 然時有一二可議處. 今年讀中庸, 合二解, 參互看詳, 闕其未信, 而取其無疑者, 亦頗有味. 因竊錄之如右, 間用陋見, 僭加更定, 不過若干. 然未敢自是, 奉以質於并世君子, 而乞其是正, 仍願其并取大學語孟二解, 而去短集長, 以惠後來云爾.”

71) 규장각 소장. 四周雙邊 半郭: 23.9×16.4cm. 有界 10行 1行 24字 注雙行. 版心: 上下花紋魚尾.

해문만 썼다. 年號, 先儒, 歷代人物, 書籍篇名, 物名 및 注語를 특별히 해석할 때는 紙頭에 표제했다. 언해는 의역을 시도하되, 文字語는 그대로 文字로 썼다. 告辭와 祝文書式 등은 언문으로 음을 달고 따로 해석은 하지 않았다.

한편, 17세기에는 善州(지금의 경북 선산) 지역 관아에서 일하던 문인 또한 학자들이 공동으로 『家禮喪葬祭三禮諺解』를 편찬했다. 金應祖(1587~1667)의 「家禮喪葬祭三禮諺解跋」이 있다. 『주자가례』의 句讀와 文義가 난해하므로, 언해를 통해 열람에 편하게 하고자 한 듯하다. 언해를 붙인 뒤에는 여러 사람이 녹봉을 내어 간행·반포했다. 간행 시기는 1660년대로 추정된다. 발문에 따르면 이 책은 『가례』 가운데 喪·葬·祭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뽑고 이를 언해한 것이다.

5. 맺는 말

조선시대에는 한문의 해독과 보급에서 언해와 현토를 활용했다. 세종 때는 韓愈 문집과 杜甫 시의 주석들을 집성하고 성종 때는 『두시언해』를 간행했으며, 선조 때는 경서를 언해하여 교정청 언해본이 성립하였다. 조선후기에는 언해와 현토의 범위가 훨씬 확대되었다.

조선조 후기에 오면 많은 학자들이 현토 문제를 주목하면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논의와 용례를 제시했다. 그리하여 각양각색의 구두와 현토가 나타나는데, 같은 경전이라도 학파에 따라 달리 현토를 한다거나, 그 방식 또한 학자와 학파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석독구결부터 조선시대 현토에 이르기까지 현토의 방식이 지닌 역사적 계승관계와 그 특징(한계 포함)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언해는 현대의 번역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번역은 全譯變譯으로 나뉘고, 全譯은 다시 直譯과 意譯으로 나뉜다. 번역에는 12가지의 방법이 있다. 즉, 摘譯·編譯·譯述·縮譯·綜述·述評·譯評·譯寫·改譯·闡釋·參譯·仿作 등이다.⁷²⁾ 그런데 정음 문헌의 언해는 대개 全譯의 범주에 들어가고, 그 가운데서도 의역보다는 직역에 치중했다.

사실 의역과 직역의 문제는 번역자의 의도, 텍스트의 유형과 수용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라이스(Reiβ)의 이론에 따르면 텍스트 유형에는(박용삼, 1990:278f) 내용 강조 텍스트, 형식 강조 텍스트, 호소 강조 텍스트 등이 있다.⁷³⁾ 내용 강조 텍스트를 번역할 때는 ‘내용

72) 黃忠廉: 『翻譯方法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9.

73) Nida, E.A. 1964,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Leiden, 1964. ; Nida, E.A. 1975, *Language Structure and Translation*, California, 1975.

차원의 불변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라이스와는 달리 콜러(Koller)는 내용 불변이란 문서나 기록을 번역한 번역본의 경우, 가능한 한 출발언어와 가깝게 되는 것이지 목표언어의 법칙에 적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언해문에 연용된 한자어도 출발언어의 범주에 속한다. 번역본의 수용자는 목표언어 독자이므로 이상적으로는 목표언어 방향에 맞추어져야 하지만, 내용 불변을 위해서는 출발언어에 가까운 유형을 유지해야 한다. 언해의 방식과 문체는 이러한 모순과 긴장을 필연적으로 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토와 마찬가지로 언해의 성과도 현대의 한문번역과 가공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문고전 정리 번역에 있어서 懸吐의 필요성

-四書諺解를 중심으로-

李相夏 (한국고전번역원 교수)

目 次

1. 토란 무엇인가
2. 토와 문장부호의 관계
 - 1) 토와 구두, 문장부호
 - 2) ‘~니’와 ‘~라’, ‘~다’는 통용된다.
 - 3) ‘~니’와 문장부호
 - 4) ‘~니’ 토를 달 곳을 어떻게 식별하는가?
 - 5) ‘~니’와 ‘이어늘’, ‘한대’의 차이
3. 현토는 지금도 유용하다
4. 맺음말

1. 토란 무엇인가

한문은 원래 낱자와 낱자를 연결하여 쓰고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글이라, 한문을 읽으려면 낱자로만 이어져 있는 白文에 스스로 句讀를 떼어 주어, 술어 및 품사를 식별하여야 한다. 오늘날의 문장부호로 보면 대개 句는 온점(마침표), 讀는 반점(쉼표)에 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한문이 자국어인 중국에서도 한문을 학습할 때는 白문에 구두를 떼는 법부터 배웠다. 《禮記》〈學記〉에 “比年入學，中年考校，一年視離經辨志.”라 하였으니, 여기서 ‘離經’은 經文의 字句를 문리에 맞게 떼어서 읽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句讀를 떼는 것이다. 漢나라 何休는 《春秋公羊傳解詁》에서 “援引他經，失其句讀.”라 하였고, 唐나라 韓愈는 師說에서 “彼童子之師，授之書而習其句讀者，非吾所謂傳其道解其惑者也.”라 하였다. 중국은 語와 文이 구별되므로, 자국의 문자로 된 글이지만 고문은 따로 공력을 들여서 배우지 않으면 문리를 얻기 어렵다. 그렇지만 白話와 고문 모두 한자를 사용하고 고문도 어순의 기본 구조는 白話

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중국 사람들은 짧게 또는 길게 글을 끊어 읽음으로써 讀와 句만 식별해도 문맥을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때 설총이 儒家經書에 토를 달았다고 하는데 이는 단순한 구두에 그치지 않고 약간의 해석을 가한 것이다. 한문이 자국어가 아니어서 중국처럼 구두를 떼는 정도로는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다. 한문은 우리말과 어순이 판이하게 다른데다 백화와 달리 고문은 조사, 연결사, 종결사, 의문사 등이 생략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구두만 떼는 데 그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한문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고려 때 義天 등의 승려들이 불경을 언해했다고 하는 것은 불경에 토를 단 것이었다. 현전하는 불경 고서에는 단순한 토를 넘어서 字行의 좌우에 한문을 우리말의 어순에 맞게 읽을 수 있게 토를 달아놓은 것이 있다. 이를 釋讀口訣이라 하는데 일본의 訓讀과 같은 것이다.¹⁾

조선시대에 와서는 태종이 權近에게 五經에 토를 달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成俔은 권근의 이 토를 구결이라 불렀으니, 토와 구결은 같은 말이다. 한글이 창제된 뒤로는 현토와 함께 언해를 하기 시작하여 많은 주요 고전들이 언해되었는데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儒家經書의 언해이다.

柳崇祖(1452~1512), 李滉(1501~1570), 李珥(1536~1584), 柳希春(1513~1577) 등이 경전에 토를 달았다. 1585년에 왕명으로 校正廳이 설치되고 鄭述, 崔永慶, 韓百謙, 鄭介清, 鄭澈 등 당대의 탁월한 학자들이 참여, 그 이듬해에 《小學》과 四書의 諺解를 완료하였다. 이를 ‘校正廳諺解’라 한다. 한편 이이는 혼자서 사서를 언해하였는데 이를 ‘栗谷諺解’라 한다.

이와 같은 언해에는 엄정한 문법 개념이 적용되어 한 글자를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문장의 흐름에 꼭 맞게 토를 달고 풀이하였다. 그래서 과거 한문교습에서는 문법을 따로 가르치지 않

1) 그 例로 1973년 忠南 西山 文殊寺 金銅如來坐像 腹藏物로 《舊譯仁王經》 落張이 발견되었는데 원문 사이사이, 한문의 좌우에 토가 적혀 있었다. 《구역인왕경》은 1346년 이전에 인쇄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전의 구결 자료도 속속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고려시대 구결은 한자 획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초서를 부호화하여 조사, 조동사, 한자음을 표기하였다. 한편 일본인 학자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芳規]씨는 200년 7월에 성암고서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1세기 초에 간행된 고려 대장경 초판본 《瑜珈師地論》 8卷에서 500行 정도의 角筆 자료를 처음 발견하였다. 각필은 상아나 나무, 대나무 등의 한쪽 끝을 뾰족하게 다듬은 筆記具인데 그 끝으로 종이를 눌러 문자, 부호, 그림 등을 표시한다. 각필은 40여년 전 일본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중국, 티베트 등지에서 발견되었다. 고바야시씨는 8세기에 일본에 건너간 新羅 元曉의 《判比量論》에 표기된 각필에서 가나카나 문자의 원형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심경호, 《한학연구입문》, 이회문화사, 2003년 4월. 127-129면 참조.

일본에는 訓點과 訓讀이 있다. 훈점은 문장의 뜻을 새기는 순서를 표시한 것이고, 훈독은 그 순서에 따라서 字行의 좌우에 부호와 글자를 덧붙여서 풀이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講公부를 위해 만든 講譜란 책이 있었는데 훈독과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용 자습서에 가까운 것이고 그 형식도 제각각 달라 일정한 원칙과 범례를 이루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아도 정확히 토를 달아서 읽음으로써 한문의 구조를 파악, 스스로 문리를 얻을 수 있었다.

토를 읽다 보면 현대어 감각에는 어색하게 느껴지는 곳들을 자주 만난다. 이를테면 ‘하나’ 또는 ‘하지만’이 되어야 될 듯한데 ‘하고’ 또는 ‘하니’라 하거나, ‘하고’ 또는 ‘하며’가 되어야 할 듯한데 ‘하야’라 하거나, ‘하야’가 되어야 할 듯한데 ‘하니’가 되는 등 현대 국어의 문리에는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곳이 많은 것이다. 이러한 곳들을 보고 지레 판단하여 토가 잘못 달렸다고 보기 쉬운데, 이는 옛날과 지금의 어투의 차이, 내지 한문과 현대 국어의 문법, 구문의 연결 구조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언해의 토의 개념에 맞게 한문을 읽는 곳은 많지 않다. 오히려 토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고로 한문을 이해하고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 토를 다는 것을 과거 한문을 존중하던 시대의 낡은 사고방식으로 치부하여 이를 의식적으로 탈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기까지 한다. 오랜 세월을 걸쳐 탁월한 학자들의 研鑽을 거쳐 완성된 언해의 토가 오늘날 학자들에게 제대로 이해되지도 못한 채 死藏될 위기에 직면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자. 같은 문장을 열 명이 읽어서 문장의 연결과 종결을 각각 다르게 읽는다면 아무리 좋게 보아도 그 중 아홉 명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한문은 조사, 연결사, 종결사, 의문사 등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고, 게다가 주어, 술어, 목적어의 순서가 현대 국어에 비해 자유로이 바뀐다. 따라서 한문 문리를 얻으려면, 기본서의 구문을 착실히 읽어 구두를 떼고 문맥을 정확히 파악하는 학습과정이 중국 사람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 언어는 사람 사이의 일종의 약속이다. 토는 한문을 이렇게 읽자고 우리 선조들이 약속해 놓은 하나의 언어 체계이다.

우리가 토를 달아서 읽는 것은 자신의 생각에 내맡기지 않고 자신이 익힌 한문의 원리에 따라 구문을 파악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토를 달지 않고 글을 읽으면 글을 읽는 속도가 빠르고 글을 이해하는 사고의 전환이 활발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한문의 문리에 밀착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 의미 단위들을 임의로 연결하여 자기 나름의 짐작으로 글을 이해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을 기르기 쉽다.

한문 문장의 문리의 기초는 대개 기본서의 구문에서 얻어진다. 그런데 四書五經과 같은 기본서들은 先秦古文이라 주석의 도움 없이 곧바로 읽어서 그 문리를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국가의 주도로 《四書集註》와 같은 기본서들을 엄밀한 원칙을 적용하여 현토해 놓았고, 우리 古人들은 그 현토에 의지하여 한문 문리를 습득하여 글을 지었다. 이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모든 언어 문자는 일종의 약속 체계이다. 즉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읽기로 그 민족 또는 공동체의 사람들끼리 약속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언해라고 해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朱熹의 《集註》가 孔孟의 뜻을 틀림없이

이해했다고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 그렇지만 주희의 《집주》는 그 나름의 논리 체계를 갖추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조선시대의 언해에는 그 나름의 언어체계를 갖고 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리체계를 바탕으로 한문을 읽고 익히고 글을 지었으므로 이러한 기본서의 구문을 파악하는 훈련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 한문고전을 잘 독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가 언해의 기본 문리체계를 익히는 것이 우리 한문을 읽고 문리를 얻는 데 매우 유용할 것임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한문이라는 한 언어 체계를 습득하는 과정과 四書를 연구하는 일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四書를 읽는 사람들은 대개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그치고, 언해의 토를 통하여 한문 문리를 체득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것 같다. 토를 달아 읽지 않으면 훨씬 한문 문리에 밀착하여 토에 얽매지 않고 자유로운 발상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할 터이나 사실은 머릿속에서는 이미 익숙해져 있는 우리 현대어 언어체계를 거쳐서 한문을 해석하는 습성에 젖어들기 쉽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 문법 지식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말의 틀 속에서 한문을 이해하는 습관을 버릴 수 없게 되고, 한문 그 자체의 문리에 깊이 들어가기 어렵다. 중국에서도 白話에는 구두를 떼는 연습을 할 필요가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白話에는 토를 달아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한문 학습에 있어서 현토의 필요성에 대해 소견을 발표한 바 있다.²⁾ 그 글에서 한문 표점에 있어서 현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 장을 따로 두어 설명한 바 있는데 이 글에서는 그 논의를 연장하여 조선시대 현토를 오늘날 문장부호와 비교 검토하는 한편 무턱대고 중국을 따라 현대문 문장부호로 고문을 표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법인지도 논의에 부치고자 한다.

2. 토와 문장 부호의 관계

1) 토와 구두, 문장부호

토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글의 뜻을 풀어주는 것이고 하나는 文理, 즉 문법을 밝혀주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대개 토에 전자의 기능만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듯하다.

2) 이상하, 〈한문 학습 및 번역에 있어서 현토의 문제〉, 《민족문화 29집》, 민족문화추진회, 2006.

토의 의미와 기능은 다양하여 이 자리에서 다 논할 수 없다. 그런데 표점을 찍을 때 가장 판별하기 어려운 것이 중지부호와 휴지부호의 차이이니, 이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는 토와 휴지부호에 해당하는 반점(.) 쌍반점(;) 쌍점(:), 중지부호에 해당하는 온점(.)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후기에 와서는 토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 설명한 저술들이 간혹 나왔다. 그 중에서도 錦川 任圭直(1811~1853)의 《句讀解法》이 비교적 자세하다.³⁾ 《句讀解法》의 범례 중에서 논의에 필요한 몇 조목을 발췌한다.

- ① 무릇 한 뜻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한 사람의 일일 경우 -하야[凡一意相承及一人之事 -하야]
- ② 무릇 다른 사람의 일 및 다른 뜻으로 이어질 경우 -하니 한대 이어늘- … ○ 무릇 다른 사람의 일에서 ‘이어늘’은 대개 위에 있고, ‘하니 · 한대’로 그 文勢에 따라 이어 받는다. 이 ‘하니 · 한대 · 이어늘’ 세 가지 토가 다 있고 그 아래에 또 다른 사람의 일이 있으면 ‘이라’로 약간 끊는 게 좋다. ○ 무릇 구두에 있어 한 뜻으로 서로 이어지는 경우와 對待의 경우에는 토가 중첩해도 무방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과 斷辭의 아래에는 모두 중첩해서는 안 되니, ‘이니 · 이라’를 서로 섞어서 읽어야 한다. ○ 여기서 ‘하니’ 이하 세 가지 토는 모두 다른 사람의 일과 다른 뜻일 경우에 句讀하는 예인데 만약 위 아래 글에 연이어 있으면 이 세 가지 토를 變通하여 읽어야 한다. 나머지는 대개 이와 같다.[凡各人之事及他義相承者 -하니 한대 이어늘- … ○ 凡各人之事이어늘, 多在上, 而하니 · 한대隨其文而承之. 三者既備, 而其下又有各人之事, 則以이라微斷之, 可也. ○ 凡句讀, 一意相承及對待之事, 重疊不妨; 各人之事及斷辭以下, 皆不可重疊. 當以이니 · 이라相間而讀之. ○ 此하니以下三者, 皆各人事及他義句讀之例. 若上下文連有之, 則以此三者通變而讀之. 餘多倣此.]
- ③ 斷辭 -이라 이니라 하니라 하나니라 이러라 하더라 이로다 하나다 하듯다 이랴다 … ○ 무릇 이 斷辭들은 비록 같지만 그 토는 각각 해당되는 곳이 있으니, 예컨대 ‘이라’는 약간 끊는 말이고, ‘이니라’는 결단하는 말이고, ‘하나니라’는 泛論하여 판단하는 말이다. …[斷辭 -이라 이니라 하니라 하나니라 이러라 하더라 이로다 하나다 하

3) 최식은 〈句讀解法, 한문의 句讀와 懸吐, 口訣〉에서 李森煥(1729~1813)의 《句讀指南》과 錦川 任圭直(1811~1853)의 《句讀解法》을 자세히 소개하고 원문을 첨부해 놓았다. 《민족문화 32집》, 민족문화추진회, 2008.

늦다 이랴다 … ○ 凡此斷辭雖同, 而其吐亦各有當. 如이라者, 微斷之辭也; 이니라者, 決斷之辭也; 하나니라者, 汎論而斷之辭也….]

여기서 임규직은 먼저 ‘하야’와 ‘하니’, ‘한대’, ‘이어늘’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토들이 讀에 해당하는지 句에 해당하는지는 밝혀 놓지 않았다. 위 범례를 피상적으로만 보면 斷辭 외 다른 토들은 모두 쉼표인 반점에 해당한다. 이들 토와 문장부호와의 관계를 규정하지 않은 채 斷辭인 ‘이라’, ‘이니라’에만 온점을 찍는다면 문장은 하염없이 길어질 수 있다. 이를 보고서, 대개 현토를 지금의 문장 개념, 부호에 안 맞다고 지레 판단한다.⁴⁾

그렇지만 위 범례를 자세히 읽어보면, ①과 ②에서 말하는 토의 문법적 기능이 서로 다를 수 있다.

①에서 ‘하야’는 하나의 주어, 한 가지 일이 이어지는 곳에 붙이는 토이므로 讀에 해당하는 곳이다. 따라서 이곳에는 반점을 찍어야 한다.

②는 문맥이 바뀌는 곳을 설명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한 문장 안에서 ‘하니’, ‘한대’, ‘이어늘’로 토를 달아서 읽어야 하는 곳은 다른 사람의 일 또는 다른 주제로 이어지는 경우이므로, 문맥이 바뀐다고 할 수 있다. 즉 내용이 서로 다른 말이 이어지는 곳에 붙이는 토이므로 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한 뜻으로 서로 이어지는 경우와 對待의 경우에는 토가 중첩해도 무방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과 斷辭의 아래에는 모두 중첩해서는 안 되니, ‘이니 · 이라’를 서로 섞어서 읽어야 한다.”고 하였으니, 반점을 찍을 곳, 또는 병렬로 이어지는 곳은 문맥이 바뀌지 않으므로 중첩해도 괜찮지만 한 문장 안에서 주어가 바뀌거나 斷辭가 들어가는 곳은 문맥이 바뀌므로 가급적 중첩하지 말고 ‘이니’와 ‘이라’ 두 토를 互換해서 사용하라는 것이다. 이 또한 전자는 讀, 후자는 句에 해당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하니’ 이하 세 가지 토는 모두 다른 사람의 일과 다른 뜻일 경우에 句讀하는 예인데 만약 위 아래 글에 연이어 있으면 이 셋을 變通하여 읽어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하니’, ‘한대’, ‘이어늘’ 세 가지 토 토가 서로 상통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③은 斷辭의 종류를 밝혀놓은 것인데 주목할 것은 ‘이라’를 ‘微斷之辭’, 즉 약간 끊는 말이라 한 것이다. 微斷은 문장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일단 安頓하고 다음으로 이어짐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라’에 해석의 의미를 가하면 ‘하니’, ‘한대’, ‘이어늘’와 같은 연접사로 전

4) 김언중은 〈한국고전적표점의 현황과 과제〉(민족문화 35집, 한국고전번역원, 2010) 8쪽에서, 표점 부호 사용문제점으로 전통적 형태의 현토를 표점에 적용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박은희는 〈한국 고전문헌의 표점방식에 대한 시론〉(역사와 담론 35집, 호서사학회, 2009)에서 제5장 ‘우리나라에서의 표점의 어려움-표점과 현토의 차이’를 두어 현토를 그대로 표점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환될 수 있으니, 句가 될 수 있다. ‘이니라’는 ‘決斷之辭’라 하였으니, ‘이라’보다 문장을 끊는 성격이 강하고, 종결의 의미를 지닌다. 한문에서는 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니’와 ‘~라’, ‘~다’는 통용된다.

교정청언해와 율곡언해의 토를 보면 ‘~니’와 ‘~라’를 서로 바꾸어 사용하는 곳이 많다. 괄호 안이 율곡언해의 토이며, 문장부호는 《論語今註今譯》⁵⁾의 것이다.

可妻也로다(니); 雖在縷綬之中이나, 非其罪也라. (論語 公治長)

율곡언해에서는 ‘니’ 토를 달았는데 이는 ‘雖在縷綬之中 非其罪也’가 ‘可妻也’의 이유이어서 전후 두 구의 의미가 연속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敏而好學하며; 不恥下問이라(하니); 是以謂之文也니라. (論語 公治長)

‘是以’ 앞에는 대개 ‘이라’와 ‘하니’ 두 가지 토가 달린다. ‘是’ 자가 앞의 말을 이어받기 때문에 앞의 글은 일단 정돈되어야 한다. 따라서 微斷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니’ 토를 다는 것은 역시 微斷한 곳인데, ‘是’ 자가 앞 구절의 뜻을 이어받기 때문에 연결하는 것이 문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今註今譯》에서도 온점을 찍지 않고 쌍점을 찍은 것이다.

夫子循循然善誘人하사; 博我以文하시고; 約我以禮하시니라(하시니). 欲罷不能하여; 既竭吾才하니. 如有所立卓爾라; 雖欲從之나, 末由也已로다! (論語 子罕)

《금주금역》에서 ‘夫子循循然善誘人: 博我以文; 約我以禮’으로 표점한 것은 ‘夫子循循然善誘人’의 내용을 ‘博我以文 約我以禮’로 파악한 것이다. 그렇다면 ‘夫子循循然善誘人’ 다음 “博我以文 約我以禮”에는 ‘하니라’ 토를 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이 문장을 온점을 찍은 것이다. 교정청언해에서 ‘하사’ 토를 단 것도 문맥 파악은 다르지만 ‘夫子循循然善誘人’의 내용을 ‘博我以文 約我以禮’로 본 것이다. 그래서 ‘하시니라’로 토를 달아 이 부분을 따로 독립시킨 것이다. 율곡언해에서 ‘하시니’로 토를 단 것은 연결의 의미를 강조한 것일 뿐 그 문맥을 교정청언해와 다르게 파악한 것은 아니다. 《금주금역》에서 온점을 많이 사용한 것은 현대어

5) 《論語今註今譯》은 臺灣 商務印書局股份有限公司가 1975 초판, 1984, 1994 재판 간행한 책이다.

문장부호를 적용했기 때문에 微斷과 決斷, 句와 節의 차이를 엄밀히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3) ‘~니’와 문장부호

교정청언해의 토를 《論語今註今譯》의 문장부호와 비교해 보자.

顏淵問仁한대. 子曰: “克己復禮爲仁이니. 一日克己復禮면, 天下歸仁焉하리니. 爲仁由己니; 而由人乎哉아!”

이 문장의 토와 문장부호를 비교해 보면 ‘한대’와 ‘니’ 토에는 모두 온점이 찍혔다. 위 임규직의 범례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 문장을 다시 분석해 보면 ‘爲仁由己니 而由人乎哉아’의 경우는 두 구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므로 쌍반점을 찍어서 다른 구와 구별하였다. 이를 다시 분석하면, ‘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을 붙여서 읽고 ‘天下歸仁焉’을 따로 떼어 읽으면 문맥이 연결되지 않고, 또한 ‘天下歸仁焉 爲仁由己’를 붙여서 읽어도 문맥이 자연스럽지 못하다.⁶⁾

《금주금역》⁷⁾을 보면 특히 ‘하니’, ‘이니’, ‘하나니’ 등 ‘~니’ 토에 해당하는 곳에 대개 쌍반점, 또는 온점을 찍는다.

① 齊宣王이 問曰: “交隣國이 有道乎잇가?” 孟子對曰: “有하니. 惟仁者라야, 爲能以大事小하나니; 是故로 湯事葛하시고, 文王事昆夷하시니이다. 惟智者라야, 爲能以小事大하나니; 故로 大王事獯鬻하시고, 句踐事吳하니이다.”

② 梁惠王曰: 寡人之於國也에, 盡心焉耳矣로니: 河內凶이어든, 則移其民於河東하고, 移其粟於河內하며; 河東凶이어든 亦然하노니./ 察隣國之政한대, 無如寡人之用心者로 되.(:) 隣國之民不加少하며, 寡人之民不加多는, 何也잇고?

6) 박은희는 이 문장을 분석하여 “현토에는 의문종결어미 ‘아’ 1개뿐이지만, 표점에는 온점이 4개 들어간다. 현토에 익숙한 분일수록 고리점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이다.”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보듯이 토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와 두를 정확히 구분하여 표점하면 똑같이 네 개의 온점을 찍을 수 있다. 박은희, 〈한국 고전문헌의 표점방식에 대한 시론〉(《역사와 담론》 제35집, 호서사학회, 2009) 제5장 ‘우리나라에서의 표점의 어려움-표점과 현토의 차이’ 참조.

7) 《孟子今註今譯》은 臺灣 商務印書局股份有限公司가 1974 초판, 1985, 1996 재판 간행한 책이다.

‘~니’ 토가 떨어지는 자리에 온점도 찍고, 쌍점, 또는 쌍반점도 찍었다. 온점을 찍을 수 있는 곳에 쌍점, 쌍반점을 찍은 것은 微斷할 자리이기 때문에 표점자의 재량에 따라 표점부호가 바뀐 것이다.

①에서 ‘是故’ 앞에는 대개 ‘이라’ 토가 붙는데 ‘하나니’ 토를 단 것은 역시 微斷했을 뿐 의미는 연결되기 때문이다.

②는 ‘하노니.’에서 크게 둘로 수 있다. 그리고 아래 문장은 다시 ‘로되.’에서 둘 나눌 수 있다. 《금주금역》에서는 쌍반점, 쌍점, 온점이 통용되는데 굳이 변별한다면 쌍반점보다는 쌍점, 쌍점보다는 온점이 문장을 끊는 의미가 더 강하다.

①思天下之民이, 匹夫匹婦有不被堯舜之澤者어든, 若已推而內之溝中하니./ ②其自任以天下之重이 如此라; ③故로 就湯而說之하여, 以伐夏救民하니라. 《孟子 萬章 上》

이 문장은 세 句로 이루어져 있지만 ‘하니’ 지점에서 크게 둘로 나뉜다. 그러므로 표점한 사람도 이곳에 온점을 찍고, ‘故로’ 앞에 쌍반점을 찍은 것이다. 이 문장을 쌍반점을 찍지 않고 반점과 온점으로만 표점하면 세 부분으로 쪼개져, ②와 ③이 한 부분으로 묶여 ①과 照應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없다.

임규직은 범례에서 ‘하나니라’를 ‘汎論而斷之辭’라 하고, ‘하나니’ · ‘이나니’를 ‘汎論之辭’라 하였다. 여기서 범론이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치, 상식이나 사실을 말할 경우를 뜻한다. ‘이니’도 ‘하나니’와 통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니’, ‘이니라’와 같이 명사형으로 글이 맺어지거나 마무리될 때는 역시 현대어에서의 이러한 유형인 ‘해야 하는(할) 것이니’, ‘해야 하는(할) 것이다.’ 등과 같이 當爲 내지 명령의 의미를 지니고, 따라서 종결의 의미가 강해진다.

① 五百年에 必有王者興하나니, 其間에 必有名世者니라. (孟子 公孫丑下)

② 惟仁者아, 爲能以大事小하나니; 是故로 湯이 事葛하시고, 文王이 事昆夷하시니이다. (梁惠王 上)

③ 樂歲에 終身苦하고, 凶年에 不免於死亡하나니; 此惟救死而恐不贍이어나, 奚暇治禮義哉리오? (孟子 梁惠王 上)

①, ②에서 ‘하나니’는 당연한 이치를 뜻하고, ③에서 ‘하나니’ 통상 그러한 이치를 뜻한다.

이러한 곳은 물론 句에 해당하므로 온점을 찍을 수도 있다.

다음은 두 句가 이어져 ‘~니’ 토가 거듭 나오는 경우이다.

① 孟子曰 爲政이 不難하니, 不得罪於巨室이니; 巨室之所慕를 一國이 慕之하고; 一國之所慕를 天下가 慕之하나니. (孟子 離婁 上)

② 方里而井이니; 井九百畝니; 其中이 爲公田이라; (滕文公 上)

①은 두 구가 끝나는 곳에 쌍반점을 찍고, ②는 두 구를 연결하는 곳에 쌍반점을 찍고 두 구가 끝나는 곳에 쌍점을 찍어 두 구가 한 부분으로 묶여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니’ 토가 떨어지는 문장이라도 두 구만의 연결일 경우에는 반점을 찍어 놓은 것을 보면, 비록 구이지만 온점을 찍어서 두 구를 분리해서는 안 됨을 알 수 있다. 예컨대 “①稱은 舉也요 貸는 借也니 ②取物於人하고 而出息以償之也라”⁸⁾의 경우 ‘借也’ 다음에는 온점을 찍을 수 있다. 그러나 아래 ②도 ‘稱’과 ‘貸’의 술어이므로 두 구를 아주 끊으면 문맥이 이어지지 못한다. 이와 같이 두 句라도 뒤 구가 앞 구를 부연 설명하고 있을 경우에 앞 구 뒤에 온점을 찍으면 좋지 못하다.

4) ‘~니’ 토를 달 곳을 어떻게 식별하는가?

현토할 때 ‘~니’ 토가 달릴 곳을 식별하기가 특히 어렵다. ‘~니’ 토가 달릴 곳을 잘 알 수 있다면 句와 讀를 구별하는 안목이 생겼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①死徙에, 無出鄉이니(하며). ②鄉田同井이, 出入에 相友하며, 守望에 相助하며, 疾病에 相扶持하면, 則百姓이 親睦하리라. (孟子 滕文公 上)

‘無出鄉’ 다음에 어떤 토가 와야 할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여기서 교정청언해에서 ‘이니’ 토를 단 것은 ‘死徙 無出鄉’을 전제하는 말로 본 것이다. 이러한 곳은 뜻으로 판단하기보다 문장의 형태로 판단하는 것이 더 좋다. 문장 형태를 보면, ‘死徙 無出鄉’에서 문장이 한 번 安頓하고, 이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이와 같이 前提의 의미를 가지는 곳에서 ‘~니’ 토를 판별하기가 특히 어렵다. 문맥이 역접으로 이어지는 곳에서는 주어나 말의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句와 讀를 구별하기가 비교적 쉽다.

8) 《孟子集註》〈滕文公 上〉3장 “又稱貸而益之”의 ‘稱貸’에 대한 註.

匡章曰 陳仲子는, 豈不誠廉士哉리오? 居於陵할새, 三日不食하야(하니), 耳無聞하며, 目無見也러니. 井上有李ㅣ(호되), 螯食實者ㅣ 過半矣어늘. 匍匐往將食之하야; 三咽然後에 야, 耳有聞하며, 目有見하니라(하니이다). (孟子 滕文公 下)

해석해 보아서는 ‘三日不食’ 다음에 ‘하야’ 토를 다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듯한데 율곡의 언해에서 굳이 ‘하니’ 토를 단 것은 뒤 부분 ‘目無見也러니.’의 ‘也’ 자와의 조응을 고려한 것이라 생각된다. ‘也’ 자로 종결되는 문장은 대개 ~이(는) ~也라, ~하니 ~也라 형태의 구문을 이룬다.

①王曰: 何以利吾國고하시면, 大夫曰何以利吾家오하며, 士庶人曰何以利吾身고하야(고하리니); ②上下交征利면 而國危矣리이다.

교정청언해에는 ‘하야’로, 율곡 언해에서는 ‘하리니’로 토를 달았고, 《금주금역》에는 쌍반 점을 찍었다. 이 문장을 분석해 보면 교정청 언해에서는 ‘何以利吾國고하시면, 大夫曰何以利吾家오하며, 士庶人曰何以利吾身고하야, 上下交征利면,’까지를 연결하여 한 부분으로 보고, ‘而國危矣리이다’가 뒷부분 전체를 조응하는 것으로 보았다. 율곡 언해에서는 ‘王曰何以利吾國고하시면, 大夫曰何以利吾家오하며, 士庶人曰何以利吾身고하리니’까지를 한 구로 묶고, ‘上下交征利면 而國危矣리이다’가 다시 한 구로 묶였으며, 《금주금역》의 표점과 일치한다.

5) ‘~니’와 ‘이어늘’, ‘한대’의 차이

위 임규직의 범례에서 보았듯이 ‘~니’와 ‘이어늘’, ‘한대’는 통용될 수 있지만 句讀를 나눌 때에는 문장을 끊는 정도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仲子는, 齊之世家也라(ㅣ니). ①兄戴ㅣ, 蓋祿이 萬鍾이러니(이어늘). ②以兄之祿으로 爲不義之祿而不食也하야; 以兄之室로 爲不義之室而不居也하고; ③辟兄離母하야, 處於於陵이러니. (孟子 滕文公 下)

①에서 교정청언해에서는 ‘이러니’로 토를 달았고 율곡언해에서는 ‘이어늘’로 토를 달았다. 교정청언해대로 ‘이러니’로 토를 달면 ①이 한 부분, ②와 ③이 묶여서 한 부분이 된다. 율곡 언해대로 ‘이어늘’로 토를 달면 ①과 ②, ③이 보다 긴밀히 연결된다. 그런데 이 문장을 다시 분석해 보면, ①과 ②보다 ②와 ③이 더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교정청 언해에서는 ‘이러니’ 토를 달아서 ①을 ②, ③을 약간 분리하여, ‘형 대가 함 땅에서 받는 녹이

만중이었는데'라고 전제해 두었던 것이다.

① 孔子時已致仕 尙從大夫之列 言後 謙辭(論語集註 先進 7장)

② 自古賢者 無不死 惟令名不朽 則爲永存矣(歐蘇手簡抄選 3권 與王郎中)

이 두 문장은 모두 두 가지로 토를 달 수 있다.

①을 '孔子時已致仕로되 尙從大夫之列이어늘 言後는 謙辭라'로 토를 달면 '孔子時已致仕로되 尙從大夫之列이어늘 言後는'이 모두 연결되어 하나의 句로 묶이며, '孔子時已致仕로되 尙從大夫之列이니 言後는 謙辭라'로 토를 달면 '孔子時已致仕로되 尙從大夫之列이니'와 '言後는 謙辭라' 두 구로 나뉜다. 이 문장은 '孔子時已致仕 尙從大夫之列'을 전제하는 말로 보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옳다. 다시 분석하면 '尙從大夫之列'는 앞의 '孔子時已致仕'와 긴밀히 연결되고, '言後'는 뒤의 '謙辭'와 긴밀히 연결되므로, 중간에 '이니' 토를 달아서 약간 분리하는 게 옳다.

②를 '自古賢者이 無不死어늘 惟令名不朽면 則爲永存矣.'로 토를 달면 '自古賢者이 無不死어늘 惟令名不朽면'이 모두 연결되어 하나로 묶이며, '自古賢者이 無不死니 惟令名不朽면 則爲永存矣.'로 토를 달면 '自古賢者이 無不死니'와 '惟令名不朽면 則爲永存矣.' 두 구로 나뉜다. 여기서 '自古賢者이 無不死니'는 당연한 이치를 전제한 것이므로 여기서 구를 떼는 것이 옳다.

'~니'가 '어늘'보다 문장을 끊는 의미가 더 강하고 '어늘'은 '니'보다 연결의 의미가 강함을 알 수 있다.

① 樂歲엔, 粒米狼戾하야(하니), 多取之而不爲虐이어늘(이라도), 則寡取之하고. ②凶年엔, 糞其田而不足이어늘(이라도), 則必取盈焉하나니.

교정청언해는 '樂歲엔, 粒米狼戾하야, 多取之而不爲虐이어늘'이 한 부분으로 묶여서 '則寡取之하고.'와 조응하고, 율곡언해는 '樂歲엔, 粒米狼戾하니'와 '多取之而不爲虐이라도, 則寡取之하고.'가 각각 한 부분으로 묶었다. 율곡언해의 경우는 '하니'에 쌍반점을 찍어야 할 것이다. 교정청언해는 ①과 ②가 병렬로 호응하는 문장 구조로 파악하여 '粒米狼戾'를 삽입구로 처리, '하야' 토를 단 것이라 생각된다.

子華使於齊러니(어늘) 冉子爲其母請粟한대 子曰 與之釜하라

이 경우에도 ‘子華使於齊러니 冉子爲其母請粟한대 子曰 與之釜하라’로 토를 달면 ‘子華使於齊러니’가 한 부분이 되고, ‘冉子爲其母請粟한대 子曰 與之釜하라’가 하나로 묶이게 된다. ‘子華使於齊어늘 冉子爲其母請粟한대 子曰 與之釜하라’로 토를 달면 ‘子華使於齊어늘 冉子爲其母請粟한대’가 하나로 묶이고, ‘子曰 與之釜하라’가 한 부분이 된다.

이와 같은 곳은 어느 쪽으로 토를 달아도 말이 되므로 어떤 토를 달아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다양한 형태의 구문을 본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해야지 내용 이해를 근거로 토를 달아서 안 될 것이다.

3. 현토는 지금도 유용하다.

한문은 중국의 문자이면서 동아시아 공용의 문자였다. 그러나 한문이 자국어가 아닌 나라에서 한문을 자국의 어순에 맞추어 읽는 방법을 개발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일 것이다. 그리고 이 방법은 천여 년의 유구한 세월 동안 착실히 전승 발전되어왔다. 특히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언해의 토에는 퇴계 이황, 율곡 이이 등 당대 최고의 석학들의 안목이 고스란히 들어 있어 한문의 구문을 파악하는 데 더없이 좋은 전범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토를 버리고 방점 또는 표점으로 한문 문장을 정리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왜 좋은지에 대해 언제 어디서 논의하고 합의했는지 알 수 없다.

단순히 표점보다 해석이 가미되어 우리나라 사람이 읽기에 편하기 때문에 토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읽어야 할 한문 전적들이 토에 따라 한문을 읽어 얻어진 문리에 의해 씌어진 글이기 때문이다.

토는 대개 내용을 해석하기 이전에 먼저 문장의 형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만약 문장을 해석한 바탕 위에 토가 결정된다면 짐작에 의해 문맥을 잘못 파악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토는 한문의 문리를 따른 것이라기보다 한문을 한글의 틀에 넣어서 이해하는 방법에 불과한 것이다.

한문 문장은 讀, 句, 節, 章으로 이루어진다. 장 속에 절이 있고 절 속에 구가 있고 구 속에 두가 있다. 한문에서 문장의 호흡이 끝나는 곳, 즉 한 문장이라 하는 곳은 대개 節이다. 지금의 표점서들을 보면 대개 句와 讀를 구별하는 데 그치고, 호흡이 긴 문장을 잘게 끊어서 오히려 전체의 문맥을 파악할 수 없게 하기도 한다.

고전번역원의 표점지침의 일례를 보자.

孟子去齊，宿於晝。有欲爲王留行者，坐而言(;)。不應，隱几而臥。

() 안은 《금주금역》에서 달리 표점한 곳이다. 이 문장은 언해에서는 “孟子去齊하실새 (하시고), 宿於晝러시니. 有欲爲王留行者 1, 坐而言이어늘; 不應하시고, 隱几而臥하신대.”로 토를 달았다. ‘~니’, ‘어늘’, ‘하신대’ 토가 붙은 곳에 마침표에 해당하는 고리점을 찍었으니, 句를 잘 구별했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길지도 않은 節을 破碎하여 세 부분을 나누어 놓았으며, ‘坐而言(;)’에서는 《금주금역》에서 쌍반점을 찍은 곳에도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고리점을 찍어서 종결해 놓았다.

한문은 대체로 우리 국어보다 문장의 호흡이 길다.

自孟子既沒로, 而世不復知有此學이라(하니);/ 一時英雄豪傑之士가 或以資質之美와 計慮之精으로, 一言一行이 偶合於道者가, 蓋亦有之로되;/ 而其所以爲之田地根本者는, 則固未免乎利欲之私也어늘./ 而世之學者가 稍有才氣하면, 便自不肯低心下意하야, 做儒家事業聖學功夫하고;/ 又見有此一種道理가, 不要十分是當하며, 不礙諸般作爲라도, 便可立大功名하며 取大富貴라;/ 於是에 心以爲利하야, 爭欲慕而爲之나./ 然又不可全然不顧義理일새;/ 便於此等去處에 指其須臾之間에 偶未泯滅底道理하야, 以爲只此便可與堯舜三代比隆이라 하고, 而不察其所以爲之田地本根者之無有是處也라. (朱子書節要 5권 答陳同甫)

194자에 이르는 긴 문장이다. 주희의 글 중에는 이보다 훨씬 더 긴 문장도 많다. 위 문장을 句로 나누면 대략 여덟 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누어 표점하면 구와 두는 잘 구별되겠지만 문맥의 연결이 끊어져 한 편의 글 속에서 어디까지가 한 節인지 알 수 없게 되고 만다. 이 예문의 문장부호는 《朱子全書》(上海古籍出版社, 2002)에서 옮긴 것인데 두 곳에만 온점을 찍어 세 문장으로 나누어 놓았다. 고전번역원의 표점지침에 의하면 고리점을 찍어야 할 곳에는 반점 또는 쌍반점을 찍었다.

또 하나의 例로 歐陽脩의 〈醉翁亭記〉를 보자.

環滁는, 皆山也라(니). 其西南諸峯이 林壑尤美하야 望之蔚然而深秀者는 琅邪也요; 山行六七리에 漸聞水聲潺潺而瀉出于兩峯之間者는 釀泉也요; 峯回路轉에 有亭翼然臨于泉上者는 醉翁亭也라. 作亭者誰오? 山之僧曰智僊也요 名之者誰오? 太守自謂也라. 太守與客으로 來飲于此에, 飲少輒醉하고 而年又最高라; 故自號曰醉翁也라하니; 醉翁之意 1 不在酒하고 而在乎山水之間也니; 山水之樂을 得之心而寓之酒也라. /若夫日出而林霏開하고, 雲歸而巖穴暝하야, 晦明變化者는, 山間之朝暮也요; 野芳發而幽香하고, 佳木秀而繁陰하

며, 風霜高潔하고, 水清而石出者는 山間之四時也요; 朝而往하고, 暮而歸에, 四時之景이, 不同而樂亦無窮也. /至于負者歌於塗하고, 行者休于樹하며, 前者呼하고, 後者應하야, 僂僂提携하야, 往來而不絕者는, 滁人遊也요; 臨谿而漁에, 谿深而魚肥하며, 釀泉爲酒에, 泉香而酒冽하고, 山肴野蔌를, 雜然而前陳者는, 太守宴也니. 宴酣之樂은, 非絲非竹이라(이오); 射者中하고, 奕者勝하야, 觥籌交錯하야, 起坐而誼譁者는, 衆賓懽也요; 蒼顏白髮이, 頽然乎其間者는, 太守醉也라. 已而오 夕陽在山하고, 人影散亂은, 太守歸而賓客從也요; 樹林陰翳, 鳴聲上下, 遊人去而禽鳥樂也. 然而禽鳥知山林之樂하고, 而不知人之樂하며, 人知從太守遊而樂하고, 不知太守之樂其樂也라.(;) 醉能同其樂, 醒能述以文者는 太守也니; 太守謂誰오? 廬陵歐陽修也라.

〈취옹정기〉 전문이다. 이 글은 3節로 구성되어 있는데 403자의 짧은 글에 21개의 也자를 사용하였다. 이 중에서는 決斷에 해당하는 것도 있지만 微斷에 해당하는 것이 더 많다. 만약 也 자마다 모두 종결 처리를 한다면 문맥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문장은 잘게 破碎되어 이 全文을 3절로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라’, ‘~니’, ‘어늘’, ‘한대’ 등의 토가 떨어지는 곳은 대개 微斷할 곳이다. 즉 한 문장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잠시 안돈하는 곳일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곳은 句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온점을 찍어서 한 문장이 끝났다고 표시할 수 있을까. 微斷할 곳과 決斷할 곳을 구별하지 못하고 미단할 곳에 온점을 찍어서 문장을 마쳐 버리면 독자로 하여금 어디서 어디까지가 한 節인지 파악할 수 없게 하고 만다. 문맥 파악에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쓰는 국어도 여러 구가 이어져 한 문장[節]을 이루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자. 우리가 본래 백문으로 되어 있는 한문 전적을 표점으로 정리하는 목적이 필경 무엇인가? 현토든 표점이든 문장의 맥락과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될 수 없다면 구태어 현토하고 표점할 필요가 있을까.

이 밖에도 토에는 좋은 점이 많다. 토에는 일정한 해석이 가미되어 있어 문맥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예컨대 必, 須, 不必, 不可, 當과 같은 글자를 새길 곳에는 ‘이니’ 또는 ‘이니라’ 토가 온다. 따라서 어느 곳에 ‘이니’ 토를 달았는가를 보면 句가 되는 곳을 식별할 수 있어 문맥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 지금 우리나라의 표점 범례들을 보면 以, 使, 爲 등의 글자의 의미가 어디까지 걸리는지를 파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러한 글자들은 문맥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문장부호로는 표현하기 어렵다.

번역해 놓았다고 해서 표점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독자가 한문에 소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번역문에서 분명히 뜻이 파악되지 않으면 원문의 표점을 확인하려 할 것이다. 번역서에

첨부되는 표점서는 바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토와 표점은 일정한 원칙에 의해 달아야 하지만 한 가지 범례가 고정불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임규직은 ‘하니’, ‘한대’, ‘이어늘’이 위 아래 글에 연이어 있으면 이 세 가지 토를 變通하여 읽어야 한다고 했거니와 동일한 형태의 구문도 전후 문맥 속에서 토가 달라질 수 있다. 즉 같은 구문이라도 짧은 문장 속에서는 반점을 찍어야 하는데 긴 문장 속에서는 쌍반점을 찍는 편이 좋으며, 짧은 문장 속에서는 쌍반점을 찍어야 하는데 긴 문장 속에서는 온점을 찍는 편이 좋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토는 절대적으로 어떻게 달아야 한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토를 달 때에는 문장을 活看하여 節 속에서 句, 구 속에서 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표점하더라도 ‘이라’, ‘~니’, ‘한대’, ‘이어늘’과 같은 토가 떨어지는, 微斷할 곳에는 쌍반점 또는 쌍점을 사용하여 문맥을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주희가 ‘時中’의 뜻을 설명하면서 “한 廳에서는 그 청의 중앙이 中이고, 한 집에서는 堂이 중이고, 한 나라에서는 당이 중이 아니라 나라의 중앙이 중이다.” 한 말이 생각난다. 이 말이 토와 표점의 이치를 描破해 놓았다고 생각된다. 규정을 지나치게 적용하여 膠柱鼓瑟하듯이 토를 달거나 표점을 찍어 놓으면 독자로 하여금 글을 읽는 게 아니라 글에 제약되게 할 수 있다.

번역문과 표점을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는데, 한문 문장은 현대 국어에 비해 대체로 길고, 주술구조 등 문법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한문의 문리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해서는 국어의 문법에 맞추기 어렵고, 설령 억지로 맞춘다 해도 어색한 문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토와 문법의 상관관계는 앞으로 더 깊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연구를 거쳐 만들어진 토를 이용하는 것은 조금만 더 보완하면 곧바로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4. 맺음말

언어는 사람 사이의 일종의 약속이다. 토는 한문을 이렇게 읽자고 우리 선조들이 약속해 놓은 하나의 약속 체계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약속을 바탕으로 글을 읽어온 것이니, 만약 이러한 약속 체계를 숙지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서로 일정 부분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사서삼경과 같은 책들은 선진고문이어서 당면한 자리에서 잠깐 보아서 그 문법을 추측해 알기 어렵다. 따라서 한문을 읽는 문제는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단계 이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先秦古文을 분석하여 한문의 문법을 연구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일이다.

그런데 언제부터가 표점은 신식, 토는 구식이라는 생각, 토에는 예컨대 ‘나라’와 같은 토에서 주자학의 권위가 들어있다고 판단하여 토를 부정하는 것을 봉건잔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다른 외국어에는 토가 달리지 않는데 유독 한문에만 토를 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생각 등 이러저러한 생각들이 복합하여 토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되면, 예컨대 율곡의 현토대로 문법을 이해하여 쓴 글을 보고 이 글은 문법이 틀렸다고 주장하는愚를 범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토는 讀, 句, 節을 식별할 수 있게 하고, 일정한 해석이 가미되어 문장의 구조와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므로, 문장부호보다 장점이 많다. 다만 오늘날 토를 정확하게 달 수 있는 학자가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오히려 현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 토를 달아서 한문을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단순한 문장 부호만 사용하는 표점은 번역을 하지 않는 중국 사람들이 읽기 좋게 하기 위한 것으로 현대문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고문을 일차 번역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번역을 하는 글의 대본으로서는 방점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현토는 두, 구, 절을 잘 구별하여 준다. 한문과 현대 국어의 어법 차이에서 오는 문제, 직역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문장을 표현해 준다. 이럴 경우 한문에 일정한 소양이 있는 사람이라도 의역과 직역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여 오역이라 지레 짐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윤문, 교정의 단계에서 오역의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긴 문맥을 현대문으로는 그대로 전달할 수 없을 경우 토로 정리하고 다시 번역하면 직역과 의역의 차이에서 오는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번역문과 표점을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는데, 한문 문장은 현대 국어에 비해 대체로 길다. 또한 문법이 서로 다르므로 한문의 문리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해서는 국어의 문법에 맞지 않고, 설령 억지로 맞춘다 해도 어색한 문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한문고전의 정리와 번역에서 막연한 고정관념을 과감히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문에 능통한 학자가 현토를 달고 그 현토를 바탕으로 신진 학자가 번역한다면 매우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원문에 토를 달고 원문주석을 달고 토를 각국의 언어로 번역한 표를 한 장 첨부하면, 우리 한문전적을 외국에 유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우리의 토처럼 자국어로 訓讀한 한문고전을 유포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그러한 책들을 읽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라고 하여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는 어디 있는가.

지금 한문고전은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 역자도 많지 않으니, 외국어로 번역하여 외국에

유포하길 기다리려면 아직도 요원하다.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토만 번역하면 되므로 매우 효율적이라 짧은 시일 안에 중요한 한문 고전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외국의 일반 독자들에게 읽히기는 어렵겠지만 한문에 조예가 있는 학자들에게는 어설픈 번역보다 오히려 나올지도 모른다.

參 考 文 獻

심경호, 《한학연구입문》, 이회문화사, 2003. 4.

《論語今註今譯》, 臺灣商務印書局股份有限公司, 1975년) 초판, 1984, 1994 재판.

《孟子今註今譯》, 臺灣商務印書局股份有限公司, 1974 초판, 1985, 1996 재판.

《朱子全書》, 上海古籍出版社, 2002.

이상하, 〈한문 학습 및 번역에 있어서 현토의 문제〉, 《민족문화》 29집, 민족문화추진회, 2006.

최식, 〈句讀解法, 한문의 句讀와 懸吐, 口訣〉, 《민족문화》 32집, 민족문화추진회, 2008.

박은희, 〈한국 고전문헌의 표점방식에 대한 시론〉, 《역사와 담론》 35집, 호서사학회, 2009.

김언중, 〈한국고전적표점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 35집, 한국고전번역원, 2010.